



...

빈칸채우기를 통한 핵심요약정리

장정훈 경찰학

심화이론 빈칸노트

2024년 2차 경찰채용 대비

Study Note

CHAPTER 01 경찰학의 기초이론 6

제1절 경찰개념	6
제2절 경찰의 임무	10
제3절 경찰의 관할	13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	14
제5절 경찰윤리	17
제6절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	20
제7절 경찰윤리강령	21
제8절 적극행정	30
제9절 범죄학	32
제10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36

CHAPTER 02 한국경찰의 역사 38

제1절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38
제2절 일제강점기	40
제3절 임시정부와 경찰	40
제4절 미군정시기 경찰	41
제5절 정부수립 후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	41
제6절 「경찰법」 제정 이후 경찰	42
제7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43

CHAPTER 03 경찰행정법 44

제1절 행정법의 기초이론	44
제2절 경찰조직법	48
제3절 「경찰공무원법」	57
제4절 경찰작용법	77

CHAPTER 04 경찰행정학 106

제1절 정책결정모델	106
제2절 경찰조직관리	107
제3절 인사관리	110
제4절 경찰예산관리	113
제5절 장비관리	115
제6절 보안관리	116
제7절 문서관리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120
제8절 경찰홍보	121
제9절 경찰통제	123

CHAPTER 05 분야별 경찰활동 128

제1절 생활안전경찰	128
제2절 수사경찰	143
제3절 경비경찰	154
제4절 교통경찰	165
제5절 정보경찰	176
제6절 안보경찰	181
제7절 외사경찰	190

부 록

경찰학 위원회 총정리	200
-------------------	-----



장정훈 경찰학개론

심화이론 빈칸노트

chapter 01 경찰학의 기초이론

chapter 02 한국경찰의 역사

chapter 03 경찰행정법

chapter 04 경찰행정학

chapter 05 분야별 경찰활동

경찰학의 기초이론

제1절 경찰개념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1) 대륙법계 경찰개념

고대	라틴어 politia에서 유래,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 정치, 특히 가장 이상적 상태인 헌법 의미
중세	① 14C 말 ¹⁾ 경찰은 국가목적, 국가작용,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상태 의미 * 14C '경찰권' 개념은 프랑스어 '라폴리스(la police)'라는 단어로 대표되는데, 초기에는 '국가목적 또는 국가작용의 의미'로, 나중에는 '공동체의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 ② ²⁾ 경찰개념이 15C 말 ³⁾ 로 이어져, 국가행정전반 의미 ③ ⁴⁾ 세기 독일 「제국경찰법」 - 교회행정 권한 ⁵⁾ (포함 / 제외) 한 일체의 국가행정
경찰 국가	① ⁶⁾ 세기 외교·군사·재정·사법 등과 분리되어 ⁷⁾ 뿐만 아니라 ⁸⁾ 을 직접 다루는 ⁹⁾ 만 의미 ② 1648년 ¹⁰⁾ - 사법행정이 경찰로부터 분리
법치 국가	① ¹¹⁾ 세기 후반 - ¹²⁾ 을 사상적 기초, 내무행정 중 ¹³⁾ 행정 의미 ② 요한 슈테판 뢰터(Johann Stephan Pütter) -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 방지하는 것, 복리증진은 경찰의 본래 직무 아니다. ¹⁴⁾ 공공의 평온, 안전과 질서 유지하고 공중 또는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 강구하는 것이 경찰책무 ¹⁵⁾ 경찰은 공공의 질서, 자유, 재산 및 개인 안전 유지하는 것 임무 ¹⁶⁾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 확보함이 목적 - 경찰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으나, 위생사무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무가 자치경찰사무에 포함 ¹⁷⁾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 안녕과 질서 위협하는 위험방지 위하여 현행법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 조치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¹⁸⁾ 경찰임무는 소극적 위험방지분야에 한정된다는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 마련 - 경찰작용의 목적 ¹⁹⁾ (확대 / 축소) * 승전기념비 전망확보 목적으로 주변 건축물의 고도제한하기 위해 베를린 경찰청장이 제정한 법규명령은 독일의 「제국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²⁰⁾ (O / X)
2차 대전이후	²¹⁾ 협의의 행정경찰 X, 보안경찰 O

(2) 영·미법계 경찰개념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권 위임받아 시민위해 법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경찰의 ²²⁾ 및 ²³⁾ 중심으로 형성

(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비교

구 분	대륙법계	영·미법계
경찰권의 기초	²⁴⁾	²⁵⁾
경찰의 개념	²⁶⁾ 기준 ²⁷⁾ 무엇인가	²⁸⁾ 기준 ²⁹⁾ 무엇인가
시민 관계	경찰권과 시민권의 ³⁰⁾	경찰권과 시민권의 동반자 관계
경찰의 사명	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중점 ② 범죄수사가 당연히 경찰임무 ³¹⁾ (O / X)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중점 ② 범죄수사가 당연히 경찰임무 ³²⁾ (O / X)
축소, 확대	경찰권 발동범위 축소과정	주민의 안전을 위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경찰개념 발전·확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분 ³³⁾ (O / X)	구분 ³⁴⁾ (O / X)

2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

형식적 의미 경찰	경찰작용의 성질과 관계없이 ³⁵⁾ 상 ³⁶⁾ 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 달성 위하여 행해지는 모든 경찰활동
실질적 의미 경찰	① 사회공공 안녕·질서 유지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작용 ② ³⁷⁾ 의 ³⁸⁾ 에서 유래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① ³⁹⁾ 중심	① ⁴⁴⁾ 중심 - 타인의 자유와 행동 제한·규제하는 작용은 경찰임무에 포함되지 않아도 실질적 의미 경찰 ⁴⁵⁾ (O / X)
② ⁴⁰⁾ 적 개념 = 실무상 개념 = 제도상 개념	② ⁴⁶⁾ . 개념
③ 형식적 의미 경찰개념 입각 경찰활동 범위는 국가마다 차이 ⁴¹⁾ (있다 / 없다) .	③ ⁴⁷⁾ (소극목적 / 적극목적) 적 작용
④ 다른 행정기관은 형식적 의미 경찰활동 할 수 ⁴²⁾ (있다 / 없다) .	④ ⁴⁸⁾ (국가목적 / 사회목적) 적 작용
⑤ 사법경찰, 정보경찰, 안보(대공)경찰, 경찰서비스활동 - ⁴³⁾ (형식적 의미 / 실질적 의미)	⑤ ⁴⁹⁾ (권력적 / 비권력적) 작용
	⑥ 경찰 아닌 다른 행정기관 작용은 실질적 의미 경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⁵⁰⁾ (있다 / 없다)

- ① 형식적 의미 경찰 ≠ 실질적 의미 경찰
- ② 실질적 의미 경찰은 형식적 의미 경찰을 포괄하는 상위개념 ⁵¹⁾ (O / X)
- ③ 일반행정기관도 '경찰기능' 담당한다고 할 때 '경찰기능'
- ⁵²⁾ 라는 작용 측면에서 바라본 ⁵³⁾ 의미 경찰개념

3 경찰의 분류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 ⁵⁴⁾에 따른 구분

행정경찰	사법경찰
① ⁵⁵⁾ 사태에 대한 작용	① ⁵⁷⁾ 사태에 대한 작용
② 해당 주무부서장의 지휘·감독 받음	② 수사부서장의 지휘·감독 받음
③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각종 행정법규에 근거	③ 「형사소송법」에 근거
④ ⁵⁶⁾ (형식적 / 실질적) 의미 경찰에 해당	④ ⁵⁸⁾ (형식적 / 실질적) 의미 경찰에 해당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최초 구분 - ⁵⁹⁾
- 우리나라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 ⁶⁰⁾ (O / X)
 - 보통경찰기관이 양 사무 모두 담당 ⁶¹⁾ (O / X)
- 행정경찰 = 실질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 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분류

(2) 보안경찰(치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 ⁶²⁾에 따른 구분

보안경찰	① 사회공공 안녕·질서 유지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 동반하지 않고 오직 경찰작용만으로 하나의 독립행정부문 형성 ② 생활안전경찰, 풍속경찰, 교통경찰, 경비경찰, 해양경찰 등
협의의 행정경찰	①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 보호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 작용으로서 사회공공 안녕과 질서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 ② 산업경찰, 산림경찰, 건축경찰, 철도경찰, 경제경찰, 위생경찰 등

* 비경찰화

⁶³⁾ 이외의 산림경찰 등 ⁶⁴⁾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 사무로 이관

(3)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 ⁶⁵⁾에 따른 구분

예방경찰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 있는 정신착란자 및 주취자 보호조치, 총포·화약류 취급제한, 순찰활동 등
진압경찰	범죄의 제지·진압, 범죄수사, 피의자 체포, 위해를 주는 정신착란자 보호 등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 66) 에 따른 구분

- ①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 - 67) 장점
- ② 지방에 적합한 경찰행정 기능 - 68) 장점
- ③ 명령계통의 일원성과 통일적 지휘체계 확보 - 69) 장점
- ④ 조직체계나 운영상의 개혁이 용이 - 70) 장점
- ⑤ 기관간 협조·조정 원활 - 71) 장점
- ⑥ 조직·광역·국제범죄에 효과적 대응 - 72) 장점
- ⑦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 제공 - 73) 장점
- ⑧ 주민들의 지지 - 74) 장점
- ⑨ 전국적인 통계정확성 - 75) 장점
- ⑩ 지역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의식이 높다 - 76) 장점

- ① 지역적 특수성과 창의성 저해 - 77) 단점
- ② 전국적 기동성 약하고, 국가위기사 신속대처 곤란 - 78) 단점
- ③ 정부의 특정 정책수행에 이용되어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날 우려 - 79) 단점
- ④ 지방세력의 간섭으로 인한 정실주의 우려 - 80) 단점
- ⑤ 통계자료 부정확 - 81) 단점
- ⑥ 관료주의화되어 봉사가 곤란 - 82) 단점
- ⑦ 타 지방경찰과의 조정·협조 용이 X - 83) 단점
- ⑧ 조직·광역·국제범죄에 효과적 대응 곤란 - 84) 단점

(5)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 85) 에 따른 구분**(6)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 86) 에 따른 구분**(7)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 사회적 가치나 이익(경찰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따른 구분 : 87) (독일 / 프랑스)
에서 유래

3 경찰의 기본적 임무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 경찰기관 전제로 한 개념.¹¹⁾ 가 경찰의
공공적 임무

(1)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

1) 공공의 안녕

의의	법질서 불가침성, 국가의 존립과 기능의 불가침성,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	
요소	법질서 불가침성 (제1요소)	• 공법규범위반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 경찰개입 허용 • 사법적 질서는 경찰 개입영역 X. 법적 보호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 원조 없이는 법을 실현시키는 것이 무효화되거나 사실상 어려워질 경우 경찰개입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 불가침성	• 경찰은 사회공공과 관련하여 국가 존립 보호임무 있음 • 경찰은 가벌성 범위 내에 이르지 아니해도 국민의 자유나 권리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안보·외사활동 가능 • 경찰은 위험 범주 너무 확대해석 X → 위험이라 판단하여 경찰개입한 경우 오히려 시민들의 자유나 권리 침해가능성 ↑ • 폭력성과 명예훼손 없이 표출되는 모든 종류의 비판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예술·집회 및 결사자유 등에 관한 것으로 경찰의 개입문제 X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	• 공공안녕 위해 경찰은 인간의 존엄성·명예·건강·자유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 • 경찰원조는 ¹²⁾ 보호에 국한, 최종적 보호는 법원

2) 공공질서

- ①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인간의 원만한 공동체 생활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각 개인행동에 대한 ¹³⁾ 의 총체
- ② 공공질서 개념은 ¹⁴⁾ . ¹⁵⁾ 개념
- ③ 공공질서 적용여지는 점차 ¹⁶⁾ (확대 / 축소)
- ④ 통치권 집행을 위한 개입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공공질서 개념은 엄격한 합헌성 요구

3) 위험

의의	가까운 장래에 공공안녕이나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	
손해	①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 객관적 감소, 보호법익의 현저한 침해 ② 단순한 성가심이나 불편함 - 손해 ¹⁷⁾ (O / X)	
분류	구체적 위험	구체적 개개 사안에서 가까운 장래에 손해발생 충분한 가능성 존재
	추상적 위험	구체적 위험의 예상가능성
	*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 * 경찰개입을 위해서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행위의 준비는 추상적 위험 상황에서도 가능	
위험과 법익	① 위험은 경찰개입 전제조건 ② 위험이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¹⁸⁾ (O / X) .	
위험에 대한 인식	¹⁹⁾	① 경찰이 합리적 사려 깊은 판단하여 개입하였으나, 실제 위험 없는 경우 ② 손해배상문제발생 ²⁰⁾ (O / X) , 손실보상문제 발생 가능성 ²¹⁾ (있음 / 없음)
	²²⁾	① 이성적·객관적 판단시 위험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되지 아니함에도 경찰이 위험 존재 잘못 추정 ② 손해배상문제발생 ²³⁾ (O / X) , 형사책임문제 발생
	²⁴⁾	①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할 때 실제 위험가능성 예측되나 실현 불확실 ② 경찰의 위험방지는 위험 존재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는 예비적 조치에만 국한 ③ 위험조사차원 개입 정당화 - 법적 책임은 외관적 위험과 동일

(2) 범죄의 수사 - 수사법정주의

(3) 그 밖에 서비스 등 적극적 보호활동

제3절 경찰의 관할

1)	의의	①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 범위 ② 경찰권 발동범위의 설정기능 - 조직법적 임무규정
	특징	① 「국자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동일한 사무관할 규정 ② 우리나라는 작용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조직법적인 임무규정 포함
인적 관할		① 광의(협의 X)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 ② 경찰권발동의 제한 - 2) ③ 외교관과 외교신서사, 영사신서사 -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당하지 아니함 3) (O / X) ④ 영사관원 -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당하지 아니함 4) (O / X)
지역 관할	국회	① 5)에게 국회경호권한 있고 국회 안에서 경호권 행사 ② 국회의장은 국회경호 위하여 필요시 6)의 7)언어 정부에게 필요한 경찰공무원 파견요구가 ③ 파견된 경찰은 8)지휘받아 회의장건물 9)에서 경호 ④ 국회안에 현행범 있을 때는 경찰은 10)받아야 함.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11)체포불가
	법정 내부	① 재판장은 법정서 질서유지 위하여 필요할 때는 개정전후 불문 관할경찰서장에게 경찰 파견 요구가능 ② 파견된 경찰은 법정내외 질서유지에 관하여 12)의 지휘 받음
	치외 법권 영역	① 외교공관이나 외교관 사택, 승용차·보트·비행기 등도 불가침 ② 외교사절 요구나 동의 없는 한, 경찰은 직무수행 이유로 함부로 출입 X ③ 13)나 14)발생처럼 긴급한 경우 외교사절 동의 없이도 공관에 출입가능
	미군영 내	① 한국경찰은 15)한 경우와 16)를 범하고 도주하는 17)을 추적시 미군의 시설 및 구역 안에서 범인체포가 가능 ② 대한민국은 미군당국 동의 없으면 시설·구역 내에서 사람·재산에 관하여 또는 시설 및 구역 내외 불문 미국 재산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 불가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 훈령)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1. “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을 의미
2. “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 침해하는 것

제2장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제3조(설치)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 ¹⁾ 기구로서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장 1명 포함 ²⁾ 위원으로 구성.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³⁾ 초과금지

- ② 위원장은 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
- ③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 ④ 위촉 위원은 인권 분야 전문적 지식과 경험있고 다음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이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⁵⁾ 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교에서 교원 또는 교직원으로 ⁶⁾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에서 인권 분야 ⁷⁾ 년 이상 활동한 경력있거나 그러한 단체로부터 인권위원으로 위촉되기에 적합하다고 추천받은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 목소리 반영할 수 있는 사람

제6조(위촉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⁸⁾ 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선거사무관계자 및 정당의 당원
- ② 위촉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장과 위촉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⁹⁾, 위원장은 연임 ¹⁰⁾, 위촉 위원은 ¹¹⁾ 만 연임가능

- ② 위촉 위원에 결원 생긴 경우 새로 위촉가능,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¹²⁾ 부터 기산

제8조(위원의 해촉)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은 위원회 의견 들어 위원 해촉가능

1. 입건 전 조사·수사 중인 사건에 청탁 또는 경찰 인사에 관여 행위를 하거나 기타 직무 관련 비위사실 있는 경우
2. 위원회 명예 실추시키거나 품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정기회의에 ¹³⁾ 회 불참 등 직무태만
4.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 곤란하다고 의사 밝힌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 총괄

② 위원장이 일시적 사유로 직무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촉 일자가 빠른 순으로 그 직무 대행. 다만, 위촉 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

③ 위원장이 직무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하거나 직무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한 경우에는 대행자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의사표시한 날로부터 ¹⁴⁾ 일 이내에 회의 개최하여 위원장 선출. 단,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¹⁵⁾ 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¹⁶⁾ 1회, 시·도경찰청은 ¹⁷⁾ 1회 개최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 또는 재적위원 ¹⁸⁾ 이상이 소집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제3장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인권교육

제18조(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¹⁹⁾ 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²⁰⁾ 마다 수립

제18조의2(경찰 인권교육계획의 수립) ① ²¹⁾ 은 경찰관등(경찰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될 사람을 포함)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²²⁾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²³⁾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인권교육의 방법) 경찰관등은 대면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론식, 참여식 교육을 권장한다.

제20조의3(교육시기 및 이수시간) 경찰관등에 대한 인권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임용예정 경찰관등 : 각 교육기관 교육기간 중 ²⁴⁾ 시간 이상
2. 경찰관서의 장(지역경찰관서장과 기동부대의 장 포함) 및 각 경찰관서 재직 경찰관등 : 연 ²⁵⁾ 시간 이상
3. 교육기관에 입교한 경찰관등 : 보수·직무교육 등 교육과정 중 1시간 이상
4. 인권 강사 경찰관등 : 연 40시간 이상

제4장 인권영향평가

제21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경찰청장은 인권침해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치안 행정이 구현되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 실시하여야 한다.

1.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2.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3. 참가인원, 내용, 동원 경력의 규모, 배치 장비 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

제23조(평가 절차) ① 경찰청장은 다음에 따른 기한 내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해당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하기 ²⁶⁾ 일 이전
3. 참가인원, 내용, 동원 경력의 규모, 배치 장비 등 고려하여 인권침해 가능성 높다고 판단 되는 집회 및 시위: 집회 및 시위 종료일로부터 ²⁷⁾ 일 이전

제24조(점검) 인권보호담당관은 ²⁸⁾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 이행 여부 점검하고,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

제5장 인권진단

제25조(진단사항)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 예방하고 제도 개선 위해 ²⁹⁾ 이상 다음 사항을 진단

1.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2. 인권교육 추진 현황
3.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

제6장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처리

제28조(진정의 접수 및 처리) ① 인권침해 진정은 문서(우편·팩스 및 컴퓨터 통신에 의한 것 포함)나 전화 또는 구두로 접수 받으며, 담당 부서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로 한다.

②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은 진정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찰청장이 직접 조사 명하거나 중대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또는 인권침해 단서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는 직접 조사가능

제29조(진정의 각하) ①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장은 다음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

제32조(물건 등의 보관 등) ③ 조사담당자는 제출받은 물건에 사건번호와 표제, 제출자 성명, 물건 번호, 보관자 성명 등을 적은 표지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 조사담당자는 제출자가 보관 중인 물건 반환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는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

1.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출한 물건이 있는 경우
2.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35조(조사중지) ① 조사담당자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과정에서 다음 사유로 사건 조사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 절차는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

1. 진정인이나 피해자 소재알 수 없는 경우
2. 사건 해결과 진상 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 소재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건 조사 진행할 수 없는 경우
4. 감사원의 조사,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경우

제37조(진정의 ³⁰⁾)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장은 진정 내용 조사한 결과 다음 경우에는 그 진정을 ³¹⁾ 할 수 있다.

1. 진정 내용이 사실 아니거나 사실 여부 확인 불가능
2. 진정 내용이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진정 내용은 사실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절 경찰윤리

1 윤리교육의 목적

1)	경찰관이 실무에서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여러 압력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직업의식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
2)	실무에서 경찰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모두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것
3)	가장 중요한 목적. 경찰이 비판적·반성적 사고방식을 배양하여 조직 내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 것

2 경찰의 전문직업화의 윤리적 문제점

4)	전문가가 상대방 입장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
5)	전문가가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 맥락 보지 못하는 것
6)	전문직 되는데 장기간 교육과 비용들여,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 되는 기회 차단
7)	전문직들은 그들 지식과 기술로 상당한 사회적 힘 소유하지만, 이러한 힘을 공익보다는 사익 위해서만 이용

3 경찰의 일탈

(1)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 8)

부패에 해당⁹⁾ 하는 / 하지 않는 공짜커피, 작은 선물 등 작은 호의가 나중에는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

* 10) - 대부분 경찰들은 작은 호의와 뇌물 구별할 수 있고,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으로 '관념적 가설'에 불과

* 11) - 일부 경찰관이 이 이론에 따라 큰 부패로 이어지지만, 결코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안된다는 점에서 작은 호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

(2) 경찰의 부정부패

1) 부정부패의 정의

12)	사적인 이익 고려하여 권위남용
13)	고객이 위험 감수하고 원하는 이익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뇌물)을 지불하는 결과
14)	보수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행위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에 손해를 가져올 때 부패 발생

2) 부패의 용인가능성 여부에 따른 구분

15)	구성원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선의의 부패 또는 관례화된 부패(경제가 어려운데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관련 공직자가 거짓말을 한 경우)
16)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로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부패(업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수수)
17)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부패(정치권에 대한 후원금, 적은 액수의 호의표시나 선물 또는 경찰관에게 주민들이 제공하는 음료수나 과일)

3) 부정부패의 원인

전체사회 가설	① 18) ②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 - 시민사회 부패가 경찰부패 원인 ③ 19) 이론과 유사
구조원인 가설	① 20) ② 신임경찰들이 선배경찰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 ③ 부패관행이 경찰조직 내부에서 21) 으로 받아들여짐 ④ 부패 원인 - 22) 조직의 체계적 원인 / 개인적 결함
썩은사과 가설	① 일부 부패가능성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유입됨으로써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 ② 부패 원인 - 23) 조직의 체계적 원인 / 개인적 결함

① '봉급 제외하고 깨끗한 돈이라는 건 없다' - 패트릭 머피(전 뉴욕시경 국장)

② '경찰인은 어떤 작은 호의, 심지어 한 잔의 공짜 커피도 받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월슨(O. W. Wilson)

4) 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whistleblowing)

의의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에 알리거나 외부 언론매체에 공표
내부고발의 정당화요건 (클라히니히)	①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공표하기 전 자신의 이견 표시 위한 모든 내부적 채널 다 사용 ② 어느 정도(높은 정도 X) 성공가능성

주의할 용어

- ① ²⁴⁾ -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
- ② ²⁵⁾ -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눈감아 주는 것(부패를 잘못된 행위로 인식하고 있지만 동료라서 모른척)
- ③ ²⁶⁾ - 도덕적 해이(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되어 부패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 ④ 'Dirty Harry 문제' - 도덕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 윤리적, 정치적, 혹은 법적으로 더러운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적절한가와 관련된 딜레마적 상황

4 냉소주의의 문제와 극복

(1) 회의주의와 구별

	냉소주의	회의주의
공통점	불신 바탕	
차이점	• 합리적 의심 ²⁷⁾ (O / X) • 대상 특정 ²⁸⁾ (O / X) • 개선의지 ²⁹⁾ (O / X)	• 합리적 의심 ³⁰⁾ (O / X) • 대상 특정화 ³¹⁾ (O / X) • 개선의지 ³²⁾ (O / X)

(2) 극복방안 : '맥그리거'이론 중 ³³⁾ 에 입각한 조직관리

제6절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

1 공정한 접근보장

의의	경찰은 사회 전체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기구 → 경찰서비스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 허용
위반 사례	① A지역과 B지역 순찰근무 부여받은 경찰이 B지역에 친척 산다는 이유로 순찰시간 대부분 할애 ② 음주단속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준 경우 ③ 경찰관이 순찰근무 중 가난한 동네는 가지 않고 부자동네만 순찰

2 공공의 신뢰

의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행사 제한하고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에게 맡겼다는 것 인식하고 경찰은 거기에 부응하는 것
내용	① 지갑 도난당한 후 옆에 있던 친구가 의심스럽지만, 직접 지갑 찾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결국 범인 체포 ② A순경은 강도범 추격 중 골목길에서 칼을 든 강도와 조우. 추격하는 척하다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이는 공공의 신뢰 위반 ③ 경찰관이 절도범 추격 중 달아나는 범인 등 뒤에서 권총 쏘아 사망하게 한 경우

3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safety and security)

경찰의 법집행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목적 달성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

예)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중인 경찰이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폭주족 과도하게 추격한 결과 운전자가 전신주 들이받고 사망하였다면 이는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위배

4 역할한계와 팀워크(teamwork)

- ① 경찰관이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 입수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혼자 검거하려다 실패
- ② 경찰관이 사건을 취급하면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판단하여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된 사람에게 면박을 주는 행위

5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의의	경찰관은 사회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 이익 위해 노력 → 업무수행시 사사로운 개인감정에 치우치면 안 됨
예	① 절도범 검거하였는데, 과거 도둑맞은 경험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 ②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 경험한 경찰관이 가정문제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

제7절 경찰윤리강령

1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실행가능성 문제	경찰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위반했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미흡하며, 지나친 이상추구의 성격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음
1)	경찰강령은 직원들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제정하여 하달되어 2) 야기
3)	경찰관이 최선을 다하여 헌신과 봉사를 하려다가도 경찰강령에 포함된 정도의 수준으로만 근무를 하여 경찰강령이 근무수행의 최소기준이 됨
4)	경찰강령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우선순위 미결정	경찰강령이 구체적인 경우 상세하지만 그보다 더 곤란한 현실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지 우선순위결정 기준이 못됨
행위중심적 성격	경찰강령이 무슨 무슨 행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이전의 의도나 동기를 소홀히 함

2 우리나라

(1) 1945년 국립경찰탄생시 경찰의 이념적 좌표 - 영미법계의 영향 받은 5) 와 6)

(2) 윤리강령 제정과정

7) (1966) → 8) (1980) → 9) (1991) → 10) (1998)

(3) 경찰헌장

1. 우리는 모든 사람의 11) 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12) 하는 13) 경찰
1. 우리는 14) 의 이름으로 진실 추구하고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15) 하지 않는 16) 경찰
1. 우리는 국민의 17) 를 바탕으로 오직 18) 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19) 경찰
1. 우리는 건전한 20) 위에 전문지식 갖고 닦아 맡은 바 일을 21) 하게 수행하는 22) 경찰
1. 우리는 23) 과 24)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25) 하게 생활하는 26) 경찰

(4)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타인의 부당한 이익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 하였을 때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27) 과 28) .

② ①에 따라 지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 반복될 때는 즉시 ²⁹⁾ 과 ³⁰⁾ .

③ 상담요청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변경 필요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다만, 지시내용 확인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한 상급자 스스로 지시를 취소·변경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³¹⁾ .

제4조의2(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³²⁾ 에게 상담을 요청 ³³⁾ .

제5조의2(수사·단속 업무의 공정성 강화) ① 공무원은 수사·단속대상이 되는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수사 중인 사건 관계자(해당 사건의 처리와 법률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 해서는 아니 되며, 소속 경찰관서 내에서만 접촉, 다만, 현장 조사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접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사서류 등 공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 강요받거나 청탁받은 경우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³⁴⁾ 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³⁵⁾ .

제10조의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³⁶⁾ 을 주거나 제3자에게 ³⁷⁾ 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 관계없이 동일인 으로부터 1회에 ³⁸⁾ 또는 매 회계연도에 ³⁹⁾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금품등은 수수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 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의 가액 범위 내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⁴⁰⁾)로 인한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⁴¹⁾ 에게 배포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피감기관에 다음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부당한 요구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는 그 사실을 ⁴²⁾ 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초과하는 사례금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 받는 외부강의등 할 때는 신고서에 따라 ⁴³⁾ 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⁴⁴⁾ 일 이내에 신고. 다만, 외부강의등 요청한 자가 ⁴⁵⁾ 나 ⁴⁶⁾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신고할 때 신고사항 중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제2항의 기간 내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⁴⁷⁾ 일 이내에 보완

④ 공무원이 대가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⁴⁸⁾ 초과금지. 다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공무원은 횟수 상한 초과하여 대가받고 외부강의 하려는 경우는 미리 소속 기관장의 ⁴⁹⁾ 받아야 한다.

제1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초과사례금 받은 경우는 안 날로부터 ⁵⁰⁾ 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⁵¹⁾ 에게 그 초과금액 지체 없이 반환

② 신고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 확인한 후 ⁵²⁾ 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

③ 통지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 ⁵³⁾ 에게 반환하고 사실을 ⁵⁴⁾ 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3(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적여행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 같이 하는 경우는 소속관서 ⁵⁵⁾ 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

1.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의견교환 또는 업무협의 등 공적 목적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직무관련자인 친족과 골프 하는 경우

3.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와 유사한 사유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경우는 경조사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직유관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종사자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장과 그 임직원
 - 다.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 라.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 통하여 직무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부정청탁 금지
14. 사건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는 이 법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⁵⁶⁾ 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 요구하는 행위
 3. ⁵⁷⁾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수행 금지

-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 받았을 때는 부정청탁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
-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한 으로부터 1회에 ⁵⁸⁾ 또는 매 회계연도에 ⁵⁹⁾ 을 초과하는 금품등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금지
- ② 공직자등은 직무관련하여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 금품등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금지
 - ③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⁶⁰⁾ 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⁶¹⁾ 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⁶²⁾ 만원)
3. 선물	금전,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 음식물, 경조사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⁶³⁾ 만원.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과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상품권은 ⁶⁴⁾ 만원(명절기간 중에는 ⁶⁵⁾ 만원)

3. 사적 거래(증여는 ⁶⁶⁾)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⁶⁷⁾ 에게 배포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⁶⁸⁾ 에게 지체 없이 ⁶⁹⁾ 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 받거나 그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 받은 경우
 -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 받거나 그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 받은 사실을 안 경우
-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약속이나 의사표시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약속이나 의사표시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⁷⁰⁾ 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⁷¹⁾ 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소속기관장은 신고받거나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별 사례금상한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장과 그 임직원 : 72) 만원 나.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73) 만원
적용기준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공무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74) 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7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가능

⑤ 공직자등은 초과사례금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76) 에게 신고하고, 77) 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③ 신고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1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갈음한다.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 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또는 수사 마친 날부터 78) 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 하여야 한다.

⑤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79) 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재조사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 종료한 날부터 80) 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 요지 알려야 한다.

「청탁금지법」상 처벌

- ①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 81)
- ②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82)
- ③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 83)
- ④ 제3자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자 - 84)
- ⑤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85)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과 그 소속 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다. 교육행정기관
 - 라. 공직유관단체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3. “고위공직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아. 86)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87) 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88) 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⁸⁹⁾ 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5조(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 ⁹⁰⁾)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⁹¹⁾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미신고시 ⁹²⁾ 이하의 과태료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⁹³⁾ 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 미신고시 ⁹⁴⁾ 이하의 과태료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⁹⁵⁾ 이내, 매수 후 등기 완료한 날부터 ⁹⁶⁾ 이내 하여야 한다.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 개시하기 전 ⁹⁷⁾ 이내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임용되거나 임기개시한 날부터 ⁹⁸⁾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⁹⁹⁾ 행위의 내용

▶ 미제출시 ¹⁰⁰⁾ 이하의 과태료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와 다음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¹⁰¹⁾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1. 금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 거래하는 행위.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체결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

▶ 위반시 ¹⁰²⁾ 이하의 과태료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¹⁰³⁾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¹⁰⁴⁾ 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¹⁰⁵⁾ 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 위반시 ¹⁰⁶⁾ 이하의 과태료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자회사 포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¹⁰⁷⁾ 이하의 과태료

제12조(수익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자회사 포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익계약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② 제1항 제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수익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¹⁰⁸⁾ 이하의 과태료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시 ¹⁰⁹⁾ 이하의 과태료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¹¹⁰⁾ 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포함)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¹¹¹⁾ (O / X))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¹¹²⁾ (O / X))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¹¹³⁾ (O / X))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¹¹⁴⁾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시 - ¹¹⁵⁾ 이하의 과태료

제8절 적극행정

1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¹⁾ 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 충족한 것으로 추정.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징계 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²⁾ 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③ ³⁾ 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경찰청훈령)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⁴ ”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이하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⁵ ”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찰청 감사규칙」 제1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
나.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
4. “⁶ ”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의 장”이란 각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의 장,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경찰청 관·국의 장을 말한다.

제4조(면책 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자체 감사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⁷ ” 이 없을 것
- ②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 받는 사람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⁸ ” 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14조(사전컨설팅 감사의 원칙)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 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 ①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가·허가·승인 등 규제관련 업무
 2. 법령·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절 범죄학

1 범죄의 의의

1)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해악과 사회적 심각성에 대한 연구
2)	인간의 기초적 인권(생존욕구, 자존욕구)을 침해하는 해악적 행위
3)	범죄의 범주에는 불법적인 행위는 물론이고 이와 유사하지만 법적으로는 범죄화 되지 않은 사회적으로 해악한 행위도 포함

2 범죄원인론

(1) Joseph F. Sheley가 제시한 범죄요소

4)

(2) 범죄원인에 관한 학설

1) 고전주의

인간은 합리적 → 인간의 행위는 자유의지로 결정(의사 ⁵⁾)

2) 실증주의

인간 행위는 자유의지보다 생물적·심리학적·사회적 성질에 의해 결정(의사 ⁶⁾)

3)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① 사회구조원인론

아노미이론	7)	범죄는 정상적인 것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라는 입장에서 사회규범의 붕괴로 무규범 상태가 되고 이러한 무규범 상태에서 범죄발생
	8)	모든 사람은 사회적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지나 목표달성 위한 수단은 사회적 계층에 따라 다르며 목표달성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분노와 좌절이라는 긴장이 유발되고 목적달성 위한 수단으로서 결국 범죄선택
9)	빈민지역에서 비행이 일반화되는 이유는 산업화, 도시화과정에서 사회조직이 극도로 해체되기 때문(Shaw & McKay) – 범죄의 원인은 인구의 유입보다는 지역사회 내부에 있다. 사회해체된 지역사회는 구성원 바뀌더라도 범죄발생을 변화없다.	
10)	범죄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 상실인 범죄원인	
하위문화 이론	11)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되며 범죄는 이러한 하위문화에 의해 저질러진다.
	12)	범죄는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

② 사회과정원인론

㉠ 사회학습이론

13)	범죄란 분화된 사회조직 속에서 분화적(차별적)으로 범죄문화에 접촉·참가·동조함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
14)	청소년들이 영화 주인공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범죄학습
15)	청소년 비행은 처벌없거나 칭찬받게 되면 반복적으로 저질러짐
중화기술이론	㉠ 자기행위가 실정법상 위법이라는 것 알지만 그럴듯한 구실이나 이유 내세워 자신 행위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당한 행위로 합리화 ㉡ 중화기술의 유형 - 16)

㉡ 사회통제이론

사회유대이론	㉠ Hirschi ㉡ 사람은 일탈할 잠재적 가능성 가지고 있으므로, 비행을 제지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의 결속과 유대의 약화(통제시스템에 장애발생)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 ㉢ 비행을 제지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의 결속 - 17)
18)	Reckless - 좋은 자아관념은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

㉢ 19)

범죄자 또는 비행자로 만드는 것은 행위의 질적인 면이 아니라 사회인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한 인식

3 범죄통제론

(1) 서설

1) 범죄예방의 의의

미국범죄예방 연구소	범죄 20) 를 감소시키려는 사전활동이며, 범죄에 관련된 환경적 기회를 제거하는 21) 적 활동
S. P. Lab	실제의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공중의 두려움을 줄이려는 사전활동 - 22) 적 측면과 23) 적 측면을 동시 고려
C. R. Jeffery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활동으로 주로 범죄환경에 초점을 두는 활동

2) 브랜팅햄(P.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Faust)의 범죄예방의 접근법

1차 예방	일반대중	범죄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조건을 찾아 개입하는 전략
2차 예방	우범자·우범자집단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전략
3차 예방	범죄자	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상습범 대책수립 및 재범억제를 지향하는 전략

3) C. R. Jeffery의 범죄통제모형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모형, 치료와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모형,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형

4) 범죄통제의 방법

²⁴⁾ (근세이전) → ²⁵⁾ (고전주의) → ²⁶⁾ (실증주의) → ²⁷⁾ (범죄사회학)

(2) 범죄예방이론

억제이론	① 의사 ²⁸⁾ - 범죄는 ²⁹⁾ 개인책임 / 사회책임 ② 강력하고 확실·신속한 처벌 통한 범죄예방효과에 중점 ③ 비판 - 총동적 범죄에는 적용하기 곤란
치료 및 갱생이론	① 의사 ³⁰⁾ - 범죄는 ³¹⁾ 개인책임 / 사회책임 ② 범죄자 치료와 갱생 통한 ³²⁾ 예방효과에 중점 ③ 비판 - ³³⁾ 예방효과에 한계
사회발전이론	① 사회발전 통한 범죄의 근본적 원인 제거 ② 비판 - ³⁴⁾
상황이론	①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과 어려움 높여 범죄기회 제거하고 범죄행위 이익 감소시킴으로써 범죄예방 ② 비판 - 전이효과, 통제사회가능성
	합리적 선택이론 ① 클락과 코니쉬 ② ³⁵⁾ 적 인간관 -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행
	일상활동이론 ① 코헨과 펠슨 ② 범죄발생의 3요소 : ³⁶⁾ , ³⁷⁾ , ³⁸⁾ ③ 범죄자 입장에서 범행결정시 고려요소(VIVA모델) - ³⁹⁾ ④ 시간적·공간적 변동에 따른 범죄발생양상, 범죄기회, 범죄조건 등에 대한 ⁴⁰⁾ 적이고 ⁴¹⁾ 적인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범죄예방 활동
	범죄패턴이론 ① 브랜팅햄 ② 범죄에는 일정한 ⁴²⁾ 시간적 / 장소적 패턴이 있다. -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범행지역의 예측 활성화에 기여

CPTED	43)	①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계시 가시권 최대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 확대 ② 예 - 조명, 조경, 가시권확대 위한 건물 배치
	44)	① 일정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 외부인 출입 통제 ② 예 - 차단기, 방법창, 잠금장치, 통행로 설계, 출입구 최소화
	45)	①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 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 증대 ② 예 - 사적·공적 공간 구분, 울타리, 펜스 설치
	46)	① 주민들 모여서 상호의견 교환하고 유대감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 ② 예 - 놀이터·공원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 증대,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등
	47)	①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 지속적으로 유지 ② 예 - 청결유지, 파손 즉시보수, 조명·조경 관리
48)	① 주민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 게을리 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나 장소든 범죄로부터 안전(오스카 뉴먼) ② 방어공간 구성요소 -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환경(안전지대)	
49)	생활수준 낮고 유해환경에 많이 노출된 지역이더라도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유대강화와 범죄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등 공동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가능 (로버트 샘슨)	
50)	① 월슨과 켈링 ② 경미한 무질서 방치하면 더 큰 범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미한 무질서에 대한 ⁵¹⁾ 대응 주장	

제 10 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1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M. K. Sparrow)

질문	전통적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은 누구인가	법집행을 주로 책임지는 정부기관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
다른 공공서비스 기관과 경찰과의 관계는	우선 사항에 대해서는 종종 갈등이 있다.	경찰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책임 있는 공공서비스 기관들 중의 하나
경찰의 역할은	범죄 해결	폭넓은 지역문제 해결
경찰의 능력 측정	1) _____	2) _____
최우선 순위는 무엇	범죄(강도, 절도, 폭력 등)	지역사회를 방해하는 모든 문제들
특별히 경찰이 처리하는 것은	사건들	시민의 문제와 걱정거리
경찰의 효과성 결정	3) _____	4) _____
서비스요청에 대해 경찰은 어떤 견해를 취해야 하는가	해야 할 경찰업무가 없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다.	경찰업무의 중요한 기능이자 기회
경찰 전문주의는 무엇인가	심각한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상호작용
언론접촉 부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현장경찰관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것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창구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5) _____ 에 대한 정보로 특정범죄 또는 일련의 범죄와 관련되는 정보	6) _____ 에 대한 정보로 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에 관한 정보
경찰책임의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주로 규칙과 규정에 따라 활동하고 정책이나 법에 대해 책임이 있다.	조직의 가치를 바꾸거나 향상시키는 것

▶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프로그램 –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전략지향적 경찰활동,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2 주요 프로그램

7) 경찰활동	지역사회와 경찰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증진시키는 조직적인 전략 및 원리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 목표(트로야노비치, 버게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① 경찰활동이 단순한 법집행자의 역할에서 지역사회 범죄문제의 근원적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역할로 전환할 것을 추구 ② 문제해결과정(J.Eck와 W.Spelman) – (SARA모델) : 8) → 9) → 10) → 11)
12) 경찰활동	① 경찰과 주민 사이의 의사소통 라인을 개설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의미 ② 지역조직은 경찰관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으며, 서로를 위해 감시하고 공식적인 민간순찰 실시 ③ 지역조직은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 제공하며 경찰과 협동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 수행

보충

13) 경찰활동	전통적인 경찰활동 및 절차들을 이용하여 범죄요소나 무질서의 원인 제거하고 효과적으로 범죄를 진압·통제하려는 경찰활동
14) 경찰활동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경찰활동
15) 경찰활동	범죄자의 활동, 조직범죄집단, 중범죄자 등에 관한 관리, 예방 등에 초점을 두고, 증가하는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 범죄정보를 통합한 법집행 위주 경찰활동

3 순찰

(1) 순찰의 기능

Samuel Walker	16)
C. D. Hale	17)

(2) 순찰의 효과연구

18)	① 전체적으로 차량순찰 증가해도 범죄율 줄어들지 않으며, 일상적인 순찰생략해도 범죄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순찰수준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② 순찰의 증감이 범죄율과 시민의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경찰의 순찰활동 전략을 재고하게 만든 연구
19)	도보순찰 증가하여도 범죄발생은 감소하지 않으나, 주민들은 자신들의 구역내에서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 – 실제 범죄예방효과는 없으나 시민들의 심리적 안전감에는 긍정적 효과
20)	실험기간 동안 오히려 공식적은 범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보순찰결과 시민들은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결과 – 실제 범죄예방 효과는 없으나 시민들의 심리적 안전감에는 긍정적 효과

한국경찰의 역사

제1절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1) 전개과정

- ① 우리나라에서 경찰 조직법·작용법적 근거규정 처음 마련 – 근대경찰 시발점
- ② 1894년 일본각의에서 한국경찰 창설결정 – 내정개혁 방안으로서 조선에 경찰창설 요구, 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 사용
- ③ ¹⁾ 소속으로 경찰 설치결정 → 곧 ²⁾ 소속으로 변경

(2) 경무청관제직장

- ① 한국 경찰 최초 ³⁾ 법 – 일본의 1891년 「경시청관제」 모방
- ② 좌우포도청 합쳐 ⁴⁾ 신설 – 내무아문에 예속시켜 한성부 내 일체 경찰사무와 감옥사무 총괄
- ③ 경무청의 장 – ⁵⁾
- ④ 한성부 오부자 내(五部字 内)에 경찰지서 설치(서장 – ⁶⁾)
- ⑤ 직수아문 ⁷⁾ 유지 / 폐지

(3) 행정경찰장정

- ① 한국 경찰 최초 ⁸⁾ 법 – 일본의 1875년 ⁹⁾ 과 1885년 위경죄측결례를 혼합하여 한문으로 옮겨 놓은 것
- ② 영업, 시장, 회계, 소방, 전염병예방, 가족위생, 결사, 집회, 신문잡지, 도서 등 광범위한 사무 담당
- ③ 경찰업무 광범위성, 직무규정 포괄성 – 경찰업무와 일반행정과의 완전분화 ¹⁰⁾ (O / X)

(4) 경찰고문관제도와 경찰체제의 정비

중앙	¹¹⁾ 년 「내부관제」 제정 통해 내무아문이 내부로 바뀌고, 내부대신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정비
지방	¹²⁾ 년 「지방경찰규칙」 제정하여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 마련

2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

출범	① ¹³⁾ 년 경찰이 '내부'에서 독립하여 중앙관청인 '경부' 설치 ② 궁내경찰서와 한성부내 5개 경찰서, 3개 분서 두고, 이를 지휘·감독하는 경무감독소 두며, 한성부 이외의 각 관찰부에 총순을 둠	
이원적 체제	한성 및 개항시장	한성 및 각 개항시장의 경찰업무와 감옥사무 통할 수행
	그 외 관찰부	¹⁴⁾ 을 두어 관찰사 보좌하여 치안업무 수행하게 함
좌절	① 1년여 동안 대신이 12번 바뀌는 등 문제 많아 경부해체 → ¹⁵⁾ 년 다시 ¹⁶⁾ 을 신설하여 경부의 업무를 관리 ② 이때 ¹⁷⁾ 은 전국관할 -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	

3 한국 경찰권의 상실

통감부 경무부 경찰체제	① 1905년 2월 '경무청 관제 개정건'을 반포함으로써 경무청을 한성부내의 경찰로 축소, 이는 통감부가 설치된 다음해(1906년)에도 그대로 유지 ② 통감부 소속으로 별도의 경찰조직인 경무부 설치하여 일본인 경무고문을 통해 한국의 경찰권 장악 ③ 1907년 7월 통감부는 「보안법」 제정하여 한국민의 행동까지 통제 - ¹⁸⁾ 에 폐지	
경시청	1907년 7월 '경시청관제' 통해 종래의 경무청을 경시청으로 개칭	
한국 경찰권상실	¹⁹⁾	재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 받도록 위양
	²⁰⁾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 받아 일본계 한국 경찰관이 행사
	²¹⁾	사법과 감옥사무 일본에 위탁
	²²⁾	경찰사무 완전히 일본에 넘어감

제2절 일제강점기

개요	1910년 10월 통감부는 폐지되고, 조선총독부 설치하여 조선총독에게는 ¹⁾ 을 주고, 경무총장·경무부장은 ²⁾ 등을 통해 전제주의·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	
헌병경찰 시대	시행	1910년 9월 10일 ‘ ³⁾ ’를 통해 헌병이 일반치안 담당할 법적 근거 마련
	임무	헌병경찰은 첩보수집과 의병토벌이 주임무, 민사소송조정·집달관 업무·국경세관업무·일본어 보급·부업장려 등 광범위한 업무 수행
	배치	① ⁴⁾ 은 의병출몰지역이나 군사상 중요한 지역에 배치 ② ⁵⁾ 은 개항장이나 도시에 배치
	종언	⁶⁾ 을 계기로 보통경찰제로 전환
보통경찰 시대	① 총독부직속 경무총감부 폐지, 총독부에 경무국 두어 전국 경찰사무와 위생사무 관장 ② 헌병이 담당하던 임무를 보통경찰이 그대로 담당 - 경찰직무와 권한은 큰 변화 없음 ③ 3.1운동 기화로 ⁷⁾ 법 제정, 일본에서 제정된 ⁸⁾ 법 우리나라에 시행 ④ 중일전쟁 이후 경찰업무가 특고경찰, 경제경찰, 외사경찰까지 확대	

제3절 임시정부와 경찰

개요	① 임시정부경찰은 오늘날 한국경찰의 뿌리 ② 임시정부경찰의 제1의 과제는 임시정부의 수호 ③ 임시정부 경찰은 임시정부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정식 치안조직	
조직	상해	¹⁾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에 근거하여 임시정부 경찰기구인 ²⁾ 설치. 초대 ³⁾ 장으로 백범 김구 선생 임명
		⁴⁾ 일제에게 점령된 본토의 국민들에게 독립의식을 잊지 않게 하고, 기밀탐지활동과 독립운동자금 모집활동을 하며 최종 목적으로는 일제 저항운동을 일으킬 필요성으로 설치
		⁵⁾ 자치경찰조직으로 교민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
	중경	⁶⁾ 일반 경찰사무, 인구조사, 징병 및 징발, 국내 정보 및 적 정보수집 등 업무수행
		⁷⁾ 임시정부 청사를 경비하고, 요인 보호
주요 인물	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 투척
	⁹⁾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윤봉길 의사를 배후 지원
	¹⁰⁾	제2대 경무국장 역임
	¹¹⁾	상하이 프랑스조계에 잠입하였다가 일제경찰에 체포

제4절 미군정시기 경찰

개요	① 냉전체제 발미로 1945년 독립 이후에도 일제시대 경찰제도 그대로 이어짐 ② 경찰사무와 조직 정비 이루어짐 ③ 한국경찰의 표어인 ¹⁾ <u> </u> 를 훈장으로 패용 ④ 영미법적 민주적 요소 도입 ⑤ 일제경찰 출신들이 재임용되기도 하였지만, 상당히 많은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경찰에 채용
조직과 제도	① 1945년 10월 21일 미 군정청 국방사령부 하에 ²⁾ <u> </u> 창설하여 일본인 경찰 모두 추방하고 한국인들로만 구성된 경찰출범 ② 군정초기 해방 이후 혼란 대비 위해 경찰은 일시 국방사령부의 지휘·감독 받음 → 1946년 ³⁾ <u> </u> 을 국방사령부와 같은 직급인 ‘ ⁴⁾ <u> </u> ’로 승격·개편 ③ 비경찰화 – 위생사무가 위생국으로 이관, 경제경찰과 고등경찰 폐지, 정보과 신설 ④ 1945년 :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 폐지, 1948년 : 「보안법」 폐지 ⑤ 경찰검을 경찰봉으로 대체 ⑥ 여자경찰제도 신설 : ⁵⁾ <u> </u> 년 – 노약자나 부녀자보호, 14세미만 소년범죄 취급 ⑦ 중앙경찰위원회 ㉠ ⁶⁾ <u> </u> 년 ⁷⁾ <u> </u>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 설치 ㉡ 경찰 민주화 조치 마련 → 성공 ⁸⁾ (O/X) ⑧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인정

제5절 정부수립 후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

개요	① 독립국가로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자주적 입장에서 경찰 운용 ② 1960년 3·15 부정선거 등 많은 부작용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청 ③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 제정될 때까지 경찰체제 근거법 – ¹⁾ <u> </u>				
정부수립	<table> <tr> <td>중앙</td><td> ① 1948년 내무부 치안국을 중앙경찰 행정기구로 하는 국가경찰로 재조직 ② 치안국장 – 내무부장관의 ²⁾ <u> </u> ③ 내무부 ‘치안국’으로 경찰조직 축소 이유 : 「정부조직법」 제정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제시대 관리출신이어서 일본정부 과거 행정조직 모방 </td></tr> <tr> <td>지방</td><td> ① 지방경찰국장 – ³⁾ <u> </u> 관청 / 보조기관 ② ⁴⁾ <u> </u> 은 「경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관청 </td></tr> </table>	중앙	① 1948년 내무부 치안국을 중앙경찰 행정기구로 하는 국가경찰로 재조직 ② 치안국장 – 내무부장관의 ²⁾ <u> </u> ③ 내무부 ‘치안국’으로 경찰조직 축소 이유 : 「정부조직법」 제정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제시대 관리출신이어서 일본정부 과거 행정조직 모방	지방	① 지방경찰국장 – ³⁾ <u> </u> 관청 / 보조기관 ② ⁴⁾ <u> </u> 은 「경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관청
중앙	① 1948년 내무부 치안국을 중앙경찰 행정기구로 하는 국가경찰로 재조직 ② 치안국장 – 내무부장관의 ²⁾ <u> </u> ③ 내무부 ‘치안국’으로 경찰조직 축소 이유 : 「정부조직법」 제정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제시대 관리출신이어서 일본정부 과거 행정조직 모방				
지방	① 지방경찰국장 – ³⁾ <u> </u> 관청 / 보조기관 ② ⁴⁾ <u> </u> 은 「경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관청				
제2공화국 이후	① 「헌법」에 ‘경찰중립화’를 규정하였던 시기 – ⁵⁾ <u> </u> 공화국 「헌법」 ② ⁶⁾ <u> </u> 년 1월 7일 「경찰공무원법」 – 치안국장에게 ‘치안총감’ 계급 부여, ‘경정’, ‘경장’ 계급 신설, ⁷⁾ <u> </u> 이상 계급정년제 도입 ③ ⁸⁾ <u> </u> 년 12월 24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격상 ④ ⁹⁾ <u> </u> 년 8월 소방업무가 경찰업무에서 배제 ⑤ 1979년 12월에는 「경찰대학설치법」 제정. 1981년부터 신입생 선발				

제6절 「경찰법」 제정 이후 경찰

- ① 「경찰법」 제정으로 치안본부가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승격
- ②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 1) 화
- ③ 내무부소속으로 경찰위원회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 두어, 향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시스템 구축 위한 토대 마련

정부수립 이후 경찰제도

- ① 경찰병원설치 - 2)
- ②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최초로 반영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 3)
- ③ 해양경찰대 설치 - 4)
-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립 - 5)
- ⑤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 신설 - 6)
- ⑥ 경찰윤리헌장선포 - 7)
- ⑦ 경찰헌장 제정 - 8)
- ⑧ 해양경찰청의 해양수산부로 이관 - 9)
- ⑨ 경찰서에 '청문관제' 도입 - 10)
- ⑩ 면허시험장을 책임운영기관화 청장 직속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신설 - 11)
- ⑪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 12)
- ⑫ 경찰병원을 추가로 책임운영기관화 - 13)
- ⑬ 제주도 자치경찰출범 - 14)
- ⑭ 경찰청 수사국 내에 인권보호센터 신설 - 15)

제7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1)	1948년 제주 대정읍 하모리에서 검거된 좌익총책의 명단에서 발견된 100여명의 주민들이 처형위기에 처하자 이들에게 자수하도록 하고, 1949년 초에 전원 훈방
2)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 구명
3)	춘천지구 전투
4)	독립운동가 출신의 여성경찰관, 미군정하 제1기 여자경찰간부로 임용되며 국립경찰에 투신.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며 사표 제출
5)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을 사살하는 등 빨치산 토벌의 주역이며, 구례 화염사 등 문화재를 수호한 인물로 '보관문화훈장'을 수여받은 호국경찰 영웅이자 인본경찰의 표상
6)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 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함으로써 청와대를 사수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 올린 호국경찰의 표상
7)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국장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행사 및 시위대 인권보호를 강조
8)	1980년 5·18 당시 목포경찰서장
9)	수사경찰의 상징적인 존재
10)	1998년 강도강간 신고출동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칼로 피습당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격투를 벌여 범인검거 후 순직

경찰행정부

제1절 행정법의 기초이론

1 법치행정(법치주의)의 내용

법률의 법규창조력	국가가 국민의 권리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경우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에 의해서만 규율	
법률의 우위	의의	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행정기본법 제8조). ② 어떠한 경찰활동도 경찰활동 제약하는 법률규정(제약규범) 위반 X
	법률의 의미	형식적 의미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명령도 포함되고, 관습법이나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 불문법도 포함
	적용영역	모든 행정작용에는 법률우위 적용 ¹⁾ (O / X)
법률의 유보	의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8조).
	법률의 의미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을 의미. 불문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적용영역	모든 경찰작용에 법률유보 적용 ²⁾ (O / X)

2 경찰법의 법원

(1) 성문법원(원칙)

헌법, 법률	
조약 및 국제법규	①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② 조약 시행 위해서 별도의 국내법을 제정절차 필요 X
법규명령	국회 의결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규 -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자치법규	①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가능.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 필요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X) 규칙 제정가능 ④ 조례와 규칙은 특별 규정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 발생 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능

(2) 불문법원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법의 일반원칙)

의의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보편적인 원리
특징	① 최후의 보충적 법원 ② 점차 성문화되어 가는 추세
위반 효과	조리에 위반하면 위헌 또는 위법

3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평등원칙

의의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행정기본법 제9조).
판례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 ³⁾ (O / X)

(2) 자기구속의 원칙

- 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② 자기구속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선례가 ⁴⁾ 할 것 -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⁵⁾ 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음

(3)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법적 근거	① 「헌법」 제37조 제2항 ② 「경직법」 제1조 제2항 ③ 「행정기본법」 제10조			
내용 (행정 기본법)	6)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7)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최소침해 원칙)		
	8)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협약의 비례원칙)		
	주의	9)	10), 11)	세가지 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 적법한 경찰작용
효력	비례원칙 위반 행위는 위헌·위법			
판례	① 경찰관이 난동 부리던 범인 검거시 가스총 근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 눈에 맞아 실명한 경우 국가배상책임 ¹²⁾ 인정 / 부정			
	②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일사부재리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배 ¹³⁾ (O / X)			

(4) 신뢰보호원칙

「행정 기본법」 제12조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적용 요건	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 공적인 견해 표명은 적극적·소극적, 묵시적·명시적, 법률행위·사실행위, 권력적 행위·비권력적 행위, 적법행위·위법행위 등을 모두 포함 ㉡ 공적인 견해 표명은 행정조직상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연동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 ② 보호가치 있는 신뢰형성 - 상대방에게 귀책사유 없을 것 귀책사유에는 사기, 강박, 중죄, 허위기재, 사실은폐 등과 같은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없더라도 행정작용의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 ③ 신뢰보호원칙 요건 충족하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반의 효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법
판례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 ¹⁴⁾ (O / X) 2. 택시운전사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행정청이 위 위반행위가 있는 이후에 3년여가 지나서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한 경우 - 신뢰보호원칙 위반 ¹⁵⁾ (O / X) 3.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그 교통사고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 신뢰보호원칙 위반 ¹⁶⁾ (O / X) 4.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 - 신뢰보호원칙 위반 ¹⁷⁾ (O / X) 5.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 갖춘 다음 허가신청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 - 신뢰보호원칙 위반 ¹⁸⁾ (O / X) 6.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 담당자가 아닌 민원팀장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 - 공적인 견해표명 ¹⁹⁾ (O / X) 8. 저촉사항 없음 - 공적인 견해표명 ²⁰⁾ (O / X)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 기본법」 제13조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판례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위법이며 당연무효 ²¹⁾ (O / X) ② A는 제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보유 이륜자동차 음주운전 →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 ²²⁾ (가능 / 불가) ③ C는 1종대형, 1종보통,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보유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 → 1종 대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소 ²³⁾ (가능 / 불가) ④ 혈중알콜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 운전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건인·구난), 제2종 소형 취소 - 재량권 일탈·남용 ²⁴⁾ (O / X)

(6)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원칙(행정기본법 제11조)

-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계산(행정기본법 제7조)

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포함)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 ²⁵⁾ 한다 / 하지 아니한다 .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5 행정에 관한 기간 및 나이 계산(행정기본법 제6조, 7조의2)

행정에 관한 기간계산	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 ② 국민의 권익 제한하거나 의무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에 따른다. 다만,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u>기간의 첫날을 산입 ²⁶⁾ 한다 / 하지 아니한다 .</u>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u>그 날로 만료한다.</u>
나이 계산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u>출생일을 ²⁷⁾ 산입하여 / 산입하지 아니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가능</u>

제2절 경찰조직법

1 국가경찰위원회

(1) 설치 근거 - 「국자법」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주요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¹⁾에 국가경찰위원회 둔다.

(2) 구성

① 위원장 ²⁾	으로 구성, 위원장 및 ³⁾	명의 위원은 ⁴⁾	, ⁵⁾	명의 위원은 ⁶⁾	으로 한다.
② ⁷⁾	은 정무직				

(3)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임명	① 위원은 ⁸⁾의 ⁹⁾으로 ¹⁰⁾거쳐 ¹¹⁾이 임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제청시 경찰의 ¹²⁾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③ 위원 중 ¹³⁾은 법관 자격 필요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결격 사유	다음 사람은 위원 될 수 없고,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①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 이탈한 날부터 ¹⁴⁾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¹⁵⁾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¹⁶⁾, ¹⁷⁾, ¹⁸⁾ 또는 ¹⁹⁾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²⁰⁾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4) 위원의 임기 등 신분보장

임기	²¹⁾ 년, ²²⁾ 금지. 보궐위원 임기는 ²³⁾
면직	①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X ②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 장애로 직무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²⁴⁾ 또는 ²⁵⁾의 의결요구에 의해 위원회의 의결 있어야 함

(5) 심의·의결사항

- ①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 발전 사항
- ②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 사항
- ③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④ 국가경찰사무 ²⁶⁾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 사항
- ⑤ 제주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사항
- ⑦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에 따른 시책 수립 사항
- ⑧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
- ⑨ 그 밖에 ²⁷⁾ 및 ²⁸⁾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6) 위원장 및 위원의 예우

- ①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 회무 통할
- ② 위원장은 ²⁹⁾ 중에서 ³⁰⁾
-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³¹⁾, 위원중 ³²⁾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대리

(7) 회의

정기회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³³⁾ 위원장이 소집
임시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 소집 가능, ³⁴⁾ 이상과 ³⁵⁾ 또는 ³⁶⁾ 은 ³⁷⁾ 에게 임시회 소집 요구가능 - 임시회의소집 요구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소집
① 위원회 사무는 ³⁸⁾ 에서 수행	
② 위원회 회의는 ³⁹⁾ 으로 의결	
③ 위원회에 간사 1명 - 간사는 경찰청 소속 과장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	

(8) 재의요구

- ① ⁴⁰⁾ 은 위원회 의결사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재의 요구가능
- ② ⁴¹⁾ 이 재의요구하는 경우 ⁴²⁾ 부터 ⁴³⁾ 이내에 재의요구서 위원회에 제출
- ③ 위원장은 재의요구 있는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⁴⁴⁾ 이내 회의소집하여 다시 의결

* 국가경찰위원회규정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⁴⁵⁾ 이 정한다.

2 경찰청 및 경찰청장

설치근거	치안에 관한 사무 관장 위하여 ⁴⁶⁾ 소속하에 경찰청 둔다(정부조직법, 국자법).
경찰청장	① 청장은 치안총감 ② 청장은 ⁴⁷⁾ 를 얻어 ⁴⁸⁾ 으로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이 임명. 국회의 인사청문회 필요 ③ 청장은 ⁴⁹⁾ 에 관한 사무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 기관장을 지휘·감독 ④ 임기 - ⁵⁰⁾ 년, ⁵¹⁾ 금지 ⑤ 청장이 직무집행시 ⁵²⁾ 을 위배한 때는 국회는 ⁵³⁾ 가능 ⑥ 청장은 경찰의 수사사무 경우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중요 사건 수사에 있어서 경찰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가능 ⑦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개시한 때에는 ⁵⁴⁾ 에 보고
차장	①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치안정감 ② 차장 - 경찰청장 보좌, 청장이 부득이 사유로 직무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
경찰청장 부속기관	⁵⁵⁾ , ⁵⁶⁾ , ⁵⁷⁾ , ⁵⁸⁾ , ⁵⁹⁾ 주의 ⁶⁰⁾ 경찰청장 부속기관이 아님
비상사태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① 경찰청장은 다음 경우 자치경찰(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포함)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1.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우려가 있어 전국적 치안유지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사유 있는 경우 3.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경찰청장은 ①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⁶¹⁾ 에 자치경찰사무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 ④ 경찰청장이 ①에 따라 지휘·명령 하는 경우에는 ⁶²⁾ 에 즉시 보고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 의결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 의결 거쳐야 한다.

3 국가수사본부장

설치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⁶³⁾ _____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⁶⁴⁾ _____ 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임기등	① 임기 - ⁶⁵⁾ _____ 년, ⁶⁶⁾ _____ 금지 ② 임기가 끝나면 당연 퇴직 ③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 집행시 ⁶⁷⁾ _____ 을 위배하였을 때는 국회는 ⁶⁸⁾ _____ 가능
경찰청 외부 대상으로 국가수사본부장 모집시 자격요건	① ⁶⁹⁾ _____ 년 이상 수사업무 종사한 사람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⁷⁰⁾ _____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있는 사람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⁷¹⁾ _____ 년 이상 있었던 사람 ③ 변호사 자격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사무에 ⁷²⁾ _____ 년 이상 종사한 경력 있는 사람 ④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⁷³⁾ _____ 이상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⁷⁴⁾ _____ 년 이상 있었던 사람 ⑤ ①~④까지의 경력 기간 합산이 ⁷⁵⁾ _____ 년 이상인 사람
경찰청 외부 대상으로 국가수사본부장 모집시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법」 상 결격사유 해당하는 사람 ② 정당 당원이거나 당적 이탈한 날부터 ⁷⁶⁾ _____ 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⁷⁷⁾ _____ 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⁷⁸⁾ _____ 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⁷⁹⁾ _____ 이상 경찰로 재직할 경력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직에 ⁸⁰⁾ _____ 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 퇴직한 날로부터 ⁸¹⁾ _____ 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 사무에 ⁸²⁾ _____ 년 이상 종사한 경력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⁸³⁾ _____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① ⁸⁴⁾ _____ 소속 ②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구성	① 위원장 1명 포함 ⁸⁵⁾ _____ 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과 ⁸⁶⁾ _____ 명은 ⁸⁷⁾ _____, ⁸⁸⁾ _____ 명은 ⁸⁹⁾ _____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③ 위원 중 ⁹⁰⁾ _____ 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다음 사람을 ⁹¹⁾ _____ 가 임명 ㉠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⁹²⁾ _____ 명 ㉡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⁹³⁾ _____ 명 ㉢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⁹⁴⁾ _____ 명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⁹⁵⁾ _____ 명 ㉤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⁹⁶⁾ _____ 명

	② 위원의 자격요건 ㉠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 직에 ⁹⁷⁾ 년 이상 있었던 사람 ㉡ 변호사 자격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 사무에 ⁹⁸⁾ 년 이상 종사 ㉢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 ⁹⁹⁾ 이상 직에 ¹⁰⁰⁾ 년 이상 있었던 사람 ㉣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¹⁰¹⁾ 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¹⁰²⁾ 을 거쳐 위원 중에서 ¹⁰³⁾ 의 제청으로 ¹⁰⁴⁾ 가 임명. 이 경우 ¹⁰⁵⁾ 과 ¹⁰⁶⁾ 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 남용금지 ⑤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⑥ 공무원 아닌 위원은 그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될 수 없다. 위원이 다음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 ① 정당 당원이거나 당적 이탈한 날부터 ¹⁰⁷⁾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¹⁰⁸⁾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¹⁰⁹⁾ , ¹¹⁰⁾ , ¹¹¹⁾ 또는 ¹¹²⁾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¹¹³⁾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¹¹⁴⁾) 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¹¹⁵⁾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 아니한다. ⑤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¹¹⁶⁾ , 연임 금지 ②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¹¹⁷⁾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심의의결	① 회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② ¹¹⁸⁾ 는 위원회 의결이 부적당한 때에는 재의 요구가능 ③ 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들을 국가경찰위원회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재의요구 받은 날부터 ¹¹⁹⁾ 일 이내 회의소집하여 재의결. 이 경우 재적위원 ¹²⁰⁾ 의 출석과 출석위원 ¹²¹⁾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하면 확정
회의	① 회의는 정기적 개최. 다만 ¹²²⁾ 이 필요 인정하는 경우, 위원 ¹²³⁾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¹²⁴⁾ 가 필요 인정하는 경우는 임시회의 개최가능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¹²⁵⁾ 이상 소집·개최

5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1) 시·도경찰청장

설치	¹²⁶⁾ 에 시·도경찰청을 둔다.
시·도 경찰청장	① ¹²⁷⁾, ¹²⁸⁾ 또는 ¹²⁹⁾으로 보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¹³⁰⁾이 ¹³¹⁾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¹³²⁾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이 임용 ③ 시·도경찰청장은 ¹³³⁾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 ¹³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¹³⁵⁾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 받는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 다만,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 없거나 심의·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휘·감독권을 ¹³⁶⁾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2) 경찰서장

경찰서 소속	¹³⁷⁾ 소속
경찰서장	① 경찰서장은 ¹³⁸⁾, ¹³⁹⁾ 또는 ¹⁴⁰⁾으로 보한다. ② 경찰서장은 ¹⁴¹⁾의 지휘·감독 받아 관할구역 안의 소관사무 관장하고 소속공무원 지휘·감독 ③ ¹⁴²⁾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 특성 고려하여 ¹⁴³⁾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① ¹⁴⁴⁾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¹⁴⁵⁾.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¹⁴⁶⁾.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¹⁴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¹⁴⁸⁾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¹⁴⁹⁾.

③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 관리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가능

참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① ¹⁵⁰⁾은 경찰서장 소관사무 분장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¹⁵¹⁾의 승인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 둘 수 있다.

② ¹⁵²⁾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 둘 수 있다.

③ 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¹⁵³⁾이 정한다.

6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1) 훈령권

1) 훈령

의의	훈령이란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관청의 권한행사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주의 훈령은 상급공무원이 하급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 ¹⁵⁴⁾ (O / X)	
성질	① 훈령은 법규 ¹⁵⁵⁾ (O / X) → 대외적 구속력 ¹⁵⁶⁾ (O / X) → 일반국민 구속 ¹⁵⁷⁾ (O / X) ② 재판규범성 ¹⁵⁸⁾ 인정 / 부정	
법적근거	¹⁵⁹⁾ 필요 / 불요	
종류	¹⁶⁰⁾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¹⁶¹⁾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관청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¹⁶²⁾	반복적 경찰사무 기준 제시
	¹⁶³⁾	일일업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
	*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¹⁶⁴⁾ (O / X)	
형식	¹⁶⁵⁾ 요식행위 / 불요식 행위	
절차	① 공포 ¹⁶⁶⁾ 필요 / 불요	
	② 훈령의 효력발생시기 - ¹⁶⁷⁾ 주의	
요건	형식	① 훈령권 있는 상급관청이 발할 것 ② 하급관청의 권한 내에 속하는 것일 것 ③ 하급관청의 권한행사의 ¹⁶⁸⁾ ④ 법정 형식이나 절차가 있으면 지킬 것
	실질	① 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②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③ 실현 가능하고 명백할 것
위반효과	① 훈령에 위반된 행위는 위법 ¹⁶⁹⁾ (O / X) → 무효 ¹⁷⁰⁾ (O / X) , 취소사유 ¹⁷¹⁾ (O / X) ② 훈령에 위반되는 행위는 징계사유 ¹⁷²⁾ (O / X)	
경합	모순되는 두 개 이상 상급관청 훈령 경합시 주관상급관청 훈령에 따라야 함. 주관상급관청이 상하관계라면 ¹⁷³⁾ 의 훈령 따라야함. 주관이 불분명하면 주관쟁의 방법	

2) 직무명령

의 의	¹⁷⁴⁾ 이 직무에 관하여 ¹⁷⁵⁾ 에게 발하는 명령
법적근거	상위법령 근거 ¹⁷⁶⁾ 필요 / 불요
범 위	① 직무집행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 ¹⁷⁷⁾ (O / X) ② 직무집행과 간접 관련되는 사생활(복장, 두발 등) - ¹⁷⁸⁾ (O / X) ③ 직무와 관련없는 사생활 - ¹⁷⁹⁾ (O / X)

3) 훈령과 직무명령의 차이 및 관계

구 분	훈령	직무명령
효력	관청구성자 교체될 경우 훈령의 효력에는 영향 ¹⁸⁰⁾	기관구성자가 교체될 경우 직무명령의 효력에는 영향 ¹⁸¹⁾
양자 관계	훈령은 직무명령 검할 수 ¹⁸²⁾	직무명령은 훈령 검할 수 ¹⁸³⁾

(2) 경찰관청 권한의 대리·위임

1)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의 비교

비 고	임의대리	법정대리	권한의 위임
권한의 이전 여부	¹⁸⁴⁾	¹⁸⁵⁾	¹⁸⁶⁾
법적 근거 여부	¹⁸⁷⁾	¹⁸⁸⁾	¹⁸⁹⁾
범위	¹⁹⁰⁾	¹⁹¹⁾	¹⁹²⁾
감독	¹⁹³⁾	¹⁹⁴⁾	¹⁹⁵⁾
복대리·재위임	¹⁹⁶⁾	¹⁹⁷⁾	¹⁹⁸⁾
상대방	¹⁹⁹⁾	²⁰⁰⁾	²⁰¹⁾
효과의 귀속	²⁰²⁾	²⁰³⁾	²⁰⁴⁾
권한행사명의	²⁰⁵⁾	²⁰⁶⁾	²⁰⁷⁾
행정소송 피고	²⁰⁸⁾	²⁰⁹⁾	²¹⁰⁾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 “²¹¹⁾”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²¹²⁾”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② 행정기관장은 권한 위임할 때는 위임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이관 ²¹³⁾ .

③ 행정기관장은 권한 위임할 때는 위임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수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하여야 하며, 수임사무 처리지침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감독)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 받거나 협의할 것 요구할 수 ²¹⁴⁾ .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²¹⁵⁾ 에 있으며, ²¹⁶⁾ 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 진다.

②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행사할 때에는 ²¹⁷⁾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기관은 위임사무 처리 적정성 확보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3)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⑥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²¹⁸⁾ .

제7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3절 「경찰공무원법」

1 경과(警科)

의의	경찰공무원은 직무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 경과구분에 필요사항은 ① 으로 정한다(경찰공무원법 제4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① ② 이하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다음과 같다. 다만, 수사경과와 안보수사경과는 ③ 이하에게만 부여 1. 일반경과 2. 수사경과 3. 안보수사경과 4. 특수경과 다. 항공경과 라. 정보통신경과 ② 임용권자는 신규채용 할 때 경과를 부여 ④ . ③ 경찰청장은 비상사태시 필요성 인정될 때는 경과 일부 폐지 또는 병합하거나 신설가능
전과 제한	다음 사람은 전과금지 ① 현재 경과를 부여받고 ⑤ 년 미경과 ② 특정한 직무분야 근무조건으로 채용된 경찰로서 채용 후 ⑥ 년이 미경과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선발	수사경과자 선발인원은 수사부서 총 정원의 ⑦ 배의 범위 내에서 경찰청장이 정한다.
유효기간	수사경과 유효기간은 수사경과를 부여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⑧
해제	① 다음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한 청렴의무위반·인권침해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⑨ 간 연속으로 제3조제1항 외의 부서(비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② 다음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인권침해, 편파수사 이유로 다수의 진정 받는 등 공정한 수사업무 수행 기대 곤란한 경우 3. 수사업무 능력·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4. 수사경과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④ 제2항 제3호의 ‘수사업무 능력·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사유 포함 1. ⑩ 간 연속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비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2. 수사부서 근무자로 선발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부서 전입 기피

2 임용권자

(1) 「경찰공무원법」(제6조)

- ① 총경 이상 - ¹¹⁾ 의 ¹²⁾ 받아 ¹³⁾ 의 ¹⁴⁾ 으로 ¹⁵⁾ 를 거쳐 ¹⁶⁾ 이 임용. 다만, 총경의 ¹⁷⁾ , ¹⁸⁾ , ¹⁹⁾ , ²⁰⁾ , ²¹⁾ 및 ²²⁾ 은 경찰청장이 한다.
- ②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임용. 다만, 경정으로의 ²³⁾ , ²⁴⁾ 및 ²⁵⁾ 은 ²⁶⁾ 의 제청으로 ²⁷⁾ 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③ 경찰청장은 임용권 일부를 시·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기관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 ²⁸⁾ .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 일부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 ²⁹⁾ .
- ④ 경찰청장 또는 임용권 위임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 「경찰공무원 임용령」(제4조)

- ① 경찰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시·도자치경찰 위원회,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을 위임 ³⁰⁾ .
- ②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³¹⁾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 ³²⁾ .
- ③ 경찰청장은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 ³³⁾ .
- ④ ①에 따라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 ³⁴⁾ .
- ⑤ ④에 따라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 ³⁵⁾ .
- ⑥ ③ 및 ⑤에 따라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³⁶⁾ 이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 ³⁷⁾ .
- ⑦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³⁸⁾ 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³⁹⁾ 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⑧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⁴⁰⁾ 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⑨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⁴¹⁾ 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 ⑩ 소속기관등의 장은 ⁴²⁾ 또는 ⁴³⁾ 를 신규채용하거나 ⁴⁴⁾ 또는 ⁴⁵⁾ 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⑪ 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정원 조정,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파견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 행사가

(3)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경찰 공무원법」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둔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구성	① 위원장 포함 ⁴⁶⁾ _____ 위원 ② 위원장은 ⁴⁷⁾ _____ . 위원은 경찰청 소속 ⁴⁸⁾ _____ 이상 중에서 ⁴⁹⁾ _____ 이 임명 ③ 위원장이 부득이 사유로 직무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 경찰이 대행
	회의 및 보고	① 회의는 ⁵⁰⁾ _____ 으로 의결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

3 경찰공무원관계의 변동

(1) 발생

1) 임용시기(「경찰공무원 임용령」)

- ①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⁵¹⁾ _____ 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 소급금지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⁵²⁾ _____ 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2) 임용시기의 특례

- 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 재직 중 사망한 경우 : ⁵³⁾ _____
 ㉡ 퇴직 후 사망한 경우 : ⁵⁴⁾ _____
 ②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직권면직 시키는 경우 :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③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학생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3) 신규채용 결격사유

- ① 대한민국 국적 가지지 아니한 사람
 ② ⁵⁵⁾ _____
 ③ ⁵⁶⁾ _____ 또는 ⁵⁷⁾ _____
 ④ ⁵⁸⁾ _____ 선고 받고 ⁵⁹⁾ _____ 되지 아니한 사람
 ⑤ ⁶⁰⁾ _____ 이상 형 선고받은 사람
 ⑥ ⁶¹⁾ _____ 이상 형 ⁶²⁾ _____ 받고 그 ⁶³⁾ _____ 기간 중에 있는 자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관련하여 횡령, 배임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⁶⁴⁾ _____ 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⁶⁵⁾ _____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성폭력범죄 범한 사람으로서 ⁶⁶⁾ _____ 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⁶⁷⁾ _____ 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⑩ ⁶⁸⁾ 또는 ⁶⁹⁾ 처분 받은 자

경력경쟁채용

- ①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사유로 퇴직하거나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휴직기간만으로 퇴직한 경찰을 퇴직한 날부터 ⁷⁰⁾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⁷¹⁾)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던 계급 경찰로 재임용
- ②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⁷²⁾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경찰청장은 부정행위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처분할 수 있다.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⁷³⁾ 범위에서 시험응시자격 정지

5) 채용후보자

채용 후보자 명부	① 경찰청장은 신규채용시험 합격한 사람을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 ② 신규채용은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른다. 다만, 교육기관에서 신입교육받은 경우는 교육성적 순위에 따른다. ③ 명부 유효기간은 ⁷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⁷⁵⁾ 범위에서 연장가능 ④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 유효기간내에 병역복무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③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임용유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u>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가능</u> ① 병역복무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② 학업 계속하는 경우 ③ ⁷⁶⁾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④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자격상실	① 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 불응 ② 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불응 ③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 미달 ④ 퇴학처분 받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 받은 경우는 제외
시보임용 예정자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교육훈련기간 동안 예산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⁷⁷⁾ 해당하는 금액 지급가능

6) 시보임용

기간	① ⁷⁸⁾ 이하 ⁷⁹⁾ 할 때 ⁸⁰⁾ 간 시보임용, 그 기간이 ⁸¹⁾ 에 정규 경찰로 임용 ② ⁸²⁾ 기간 ⁸³⁾ 기간 및 ⁸⁴⁾ 또는 ⁸⁵⁾ 처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 X
예외	다음은 시보임용 거치지 아니한다. ① 경찰대학 졸업한 사람 또는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서 정하여진 교육마친 사람 경위로 임용 ② 경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채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 경찰로 임용하는 경우 ③ 퇴직한 경찰로서 퇴직시 재직하였던 계급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재임용 ④ 자치경찰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로 임용
지도·감독	임용권자는 시보에 대하여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감독 ⁸⁶⁾ .
신분 보장	시보 경찰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 불량할 때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제청 ⁸⁷⁾ . - 시보는 신분보장 ⁸⁸⁾ (O / X)
면직	시보경찰이 다음에 해당하여 정규경찰로 임용함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⁸⁹⁾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 제청할 수 있다. ① 징계사유에 해당 ②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⁹⁰⁾ 이거나 생활기록 극히 불량 ③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⁹¹⁾ 일 때

참고 정규임용심사위원회

- ①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⁹²⁾ 로 구성
- ② 위원장 - 계급이 가장 높은 경찰(둘 이상인 경우는 승진된 날이 가장 빠른 경찰)
- ③ 위원 -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 소속 경감이상 중에서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이 임명
- ④ 재직위원 ⁹³⁾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⁹⁴⁾ 찬성으로 의결

(2)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1) 승진

① 승진원칙

- ㉠ ⁹⁵⁾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가 원칙. 다만, ⁹⁶⁾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 병행가능
- ㉡ ⁹⁷⁾ 이하 경찰에 대해서는 계급별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⁹⁸⁾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 ⁹⁹⁾ .
- ㉢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② 근속승진

경찰청장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근속승진임용 가능. 다만, 인사교류 경력있거나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 단축가능

- ㉠ 순경 → 경장 : 해당 계급에서 ¹⁰⁰⁾ 이상 근속
- ㉡ 경장 → 경사 : 해당 계급에서 ¹⁰¹⁾ 이상 근속
- ㉢ 경사 → 경위 : 해당 계급에서 ¹⁰²⁾ 이상 근속
- ㉣ 경위 → 경감 : 해당 계급에서 ¹⁰³⁾ 이상 근속

*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 위한 심사를 연 ¹⁰⁴⁾ 회 실시가능.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¹⁰⁵⁾ 에 해당하는 인원수 초과금지

③ 특별유공자 특별승진

다음 경찰은 1계급 특진가능. 다만, ¹⁰⁶⁾ 이하로서 모든 경찰의 귀감되는 공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은 2계급 특진가능

1.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
2.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 세운 사람

④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기간	총경은 ¹⁰⁷⁾ 년, 경정·경감은 ¹⁰⁸⁾ 년, 경위·경사·경장·순경는 ¹⁰⁹⁾ 년
산입	원칙 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기간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 ×
	예외 다음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 ○
	휴직기간 중 다음 기간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 필요하여 휴직한 경우 휴직 기간 ㉡ 다음의 휴직기간 ㉢ 병역 복무 마치고 위하여 징집·소집된 때 ㉣ 그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 휴직 기간 ㉥ 국외유학 하게되어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의 ¹¹⁰⁾ %에 해당하는 기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출산하게 되어 휴직한 경우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 기간이 1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전부로 한다. ㉧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 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다목1)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다음의 직위해제 기간 ㉠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해제처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 경찰 공무원의 근무기간	㉕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¹¹¹⁾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 ㉖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¹¹²⁾ 을 넘는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기간

⑤ 승진임용의 제한

제한	다음 경찰공무원은 승진 불가 ㉑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㉒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기간[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소극행정,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 성폭력·성희롱·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¹¹³⁾ 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㉓ 강등·정직 : ¹¹⁴⁾ ㉔ 감봉 : ¹¹⁵⁾ ㉕ 견책 : ¹¹⁶⁾
제한의 단축	징계처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다음 포상받은 경우는 위 ㉒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 단축가능 1. 훈장 2. 포장 3. 모범공무원 포상 4. ¹¹⁷⁾ 표창 또는 ¹¹⁸⁾ 표창 5. 제안이 채택·시행되어 받은 포상

2) 전보

제한	㉑ ¹¹⁹⁾ 년 이내 전보제한(감사업무 담당은 ¹²⁰⁾ 년 이내) ㉒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일부터 ¹²¹⁾ 년 이상 ¹²²⁾ 년 이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금지 ㉓ 섬, 외딴곳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 따라 채용된 경찰은 채용일부터 ¹²³⁾ 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전보금지 ㉔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은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¹²⁴⁾ 년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가능
예외	1. 직제상 최저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11. 시보임용중인 경우 13. 감사담당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4.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의 경찰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5. 임신 중인 경찰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

직권 휴직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 필요 - ¹²⁵⁾ 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¹²⁶⁾ 년 범위 연장가능,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¹²⁷⁾ 년 이내로 하되, ¹²⁸⁾ 년 범위에서 연장가능) ② 병역복무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③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소재 불명 - ¹²⁹⁾ 이내 ④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의무 수행 위하여 직무 이탈 - 복무기간 끝나는 날까지 ⑤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전임기간
	휴직 원하면 휴직 명할 수 있다. 다만, ④는 특별 사정 없으면 휴직 명하여야 함 ①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 - 채용기간(민간기업에 채용되면 ¹³⁰⁾ 년 이내 ② 국외 유학 - ¹³¹⁾ 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¹³²⁾ 년 범위 연장가능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 ¹³³⁾ 년 이내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위하여 필요,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 - 자녀 1명 에 대해 ¹³⁴⁾ 년 이내 ⑤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¹³⁵⁾ 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¹³⁶⁾ 년 초과금지 ⑥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 동반 - ¹³⁷⁾ 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¹³⁸⁾ 년 내 연장가능 ⑦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5년 이상)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 위하여 학습·연구 등 하게 된 때 - ¹³⁹⁾ 년 이내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¹⁴⁰⁾ 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자기개발휴직 가능
유형	
의원 휴직	
보급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에 따라 봉급 일부를 지급.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봉급 전액 지급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¹⁴¹⁾ 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¹⁴²⁾ 퍼센트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보유 O, 직무종사 X ② 휴직기간 중 사유 없어진다면 ¹⁴³⁾ 이내 신고, 임용권자는 ¹⁴⁴⁾ 복직 명하여야 함 ③ 휴직기간 끝난 공무원이 ¹⁴⁵⁾ 이내 복귀 신고 하면 당연 복직

4)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사유	① ¹⁴⁶⁾
	② ¹⁴⁷⁾
	③ ¹⁴⁸⁾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 요구받은 자
	⑤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로 인하여 감사원·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 업무수행 기대 현저히 어려운 자

특징	①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사유 있는 자에게는 직위 부여하지 아니 ¹⁴⁹⁾ 한다 / 할 수 있다 .
	② 직위해제와 징계처분 병과 ¹⁵⁰⁾ 가능 / 불가능
	③ 직무중사 ¹⁵¹⁾ (O / X) , 출근의무 ¹⁵²⁾ (O / X)
	④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 - ¹⁵³⁾ 범위에서 대기 명령
	⑤ 직위해제사유 소멸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 ¹⁵⁴⁾ .
	⑥ 봉급
	㉠ 직무수행능력부족 근무성적 극히 나빠 직위해제 - 봉급의 ¹⁵⁵⁾ %만 지급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 요구받은 자 - 봉급의 ¹⁵⁶⁾ %만 지급(3개월 지나면 ¹⁵⁷⁾ %지급) ㉢ ㉠, ㉡ 이외 사유로 직위해제 - 봉급의 ¹⁵⁸⁾ %만 지급(3개월 지나면 ¹⁵⁹⁾ %지급)

5) 기타

전직	① 직렬 달리하는 임용 ② 경찰공무원에게는 적용 ¹⁶⁰⁾ (O / X)
강임	① 동일한 직렬 또는 다른 직렬 하위직급에 임명 ② 경찰공무원에게는 적용 ¹⁶¹⁾ (O / X)

(3)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 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신규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당연퇴직.

다만,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형법」상 뇌물관련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직무관련하여 「형법」상 횡령, 배임을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2) 정년퇴직

연령정년	¹⁶²⁾ 세
계급정년	① 치안감 - ¹⁶³⁾ ② 경무관 - ¹⁶⁴⁾ ③ 총경 - ¹⁶⁵⁾ ④ 경정 - ¹⁶⁶⁾

① 수사·정보·외사·안보·자치경찰사무 등 특수부문 근무¹⁶⁷⁾ ,¹⁶⁸⁾ 에 대해서는¹⁶⁹⁾ 범위 안에서 계급정년 연장가능

② 경찰청장은 비상사태시¹⁷⁰⁾ 범위 안에서 계급정년 연장가능(경무관 이상 : 행안부장관과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 승인, 총경·경정 :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 승인필요)

③ 강등시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¹⁷¹⁾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함, 강등되기 전 계급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 근무연수 합산

④ 정년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면¹⁷²⁾ 일에 당연퇴직, 7월에서 12월 사이면¹⁷³⁾ 일에 당연퇴직

3) 면직

① 의원면직 : 서면에 의한 사직서 제출하고 임명권자가 수리한 때 면직효과 발생

② 직권면직

징계위원회 동의 (174)	㉠ 직위해제되어 대기명령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 기대 곤란 ㉡ 경찰로는 부적합할 정도 직무수행능력이나 성실성 현저히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 직무수행하는 데에 위험 일으킬 우려 있을 정도 성격적·도덕적 결함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징계위원회 동의 (175)	㉠ 직제와 정원 개폐 또는 예산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되었을 때 ㉡ 휴직기간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된 후에도 직무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감당할 수 없을 때 ㉢ 해당 경과에서 직무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효력상실되거나 면허취소되어 담당직무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 개관

권리	신분상 권리	일반적 권리	직무수행권, 신분 및 직위보유권, 쟁송제기권
		특수한 권리	제복착용권, 무기휴대 및 사용권, 장구사용권
	재산상 권리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청구권, 보급품수령권, 보상청구권	
의무	「국가공무원법」	일반의무	성실의무, 선서의무
		직무상 의무	(176)
		신분상 의무	(177)
	「경찰공무원법」	직무상 의무	(178)
		신분상 의무	(179)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180)	
	「공직자윤리법」	(181)	

(2) 경찰공무원의 권리

① (182) , (183) 및 (184) 기간 중의 공무원 - 신분보장 X
② 쟁송제기권 - 행정소송시 피고는 (185) , 위임한 경우는 (186) 가 피고
③ 무기휴대 및 사용권
㉠ 무기휴대 법적 근거 - (187)
㉡ 무기사용 법적 근거 - (188)
④ 보수청구권 - 보수에 관한 법령은 (189) 인 (190) 에서 규정
⑤ 연금청구권
㉠ 연금은 (191) 결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
㉡ 연금받을 권리는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92)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⑥ 보상청구권 - 이 법에 따른 급여받을 권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193) 간, 그 밖의 급여는 (194) 간 행사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공무원재해보상법)

(3) 경찰공무원의 의무

1) 일반적 의무

선서 의무	경찰은 취임시 ¹⁹⁵⁾ 앞에서 선서. 다만, 불가피 사유 있을 때는 취임 후 선서
성실 의무	¹⁹⁶⁾ 법에 규정 - 모든 의무의 원천

2) 신분상 의무

비밀엄수 의무	① ¹⁹⁷⁾ 후에도 준수 ② 본인이 취급한 직무에 관한 비밀뿐 아니라 직무상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포함 ¹⁹⁸⁾ (O/X) ③ 위반시 - 징계사유, 형사처벌도 가능(퇴직 후에도 형사처벌 가능)
청렴 의무	대외적 공무원은 ¹⁹⁹⁾ 사례·증여 또는 향응 수수금지 대내적 공무원은 ²⁰⁰⁾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영예 등 제한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 받는 경우는 ²⁰¹⁾ 얻어야 함
품위 유지	²⁰²⁾ 하고 그 품위 손상하는 행위 금지
정치운동 금지 (국가 공무원법)	정당 기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 비롯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 지지나 반대 위하여 다음 행위 금지 ①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 ② 서명운동 기획·주재하거나 권유 ③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④ 기부금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⑤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 * 공무원이 정치운동금지 위반 - ²⁰³⁾ 이하 징역과 ²⁰⁴⁾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는 ²⁰⁵⁾ 년
정치관여 금지 (경찰 공무원법)	① 경찰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금지 ②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그 직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의견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 유포 ㉢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찰 - ²⁰⁶⁾ 이하 징역과 ²⁰⁷⁾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는 ²⁰⁸⁾ 년
집단행동 금지	①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 일 위한 집단행위 금지. 다만, ²⁰⁹⁾ 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 ② 사실상 노무 종사 공무원으로서 노조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²¹⁰⁾ 의 허가 받아야 한다. * 경찰이 '집단행위금지' 위반 - ²¹¹⁾ 년 이하 징역 또는 ²¹²⁾ 만원 이하 벌금

재산등록 및 공개	등록 의무자	① 「공직자윤리법」 - ²¹³⁾ 이상 경찰공무원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²¹⁴⁾ ③ 공직자는 등록의무자 된 날부터 ²¹⁵⁾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
	공개 의무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²¹⁶⁾ 이상 경찰 및 시·도경찰청장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²¹⁷⁾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

「공직자윤리법」

- ① 외국으로부터 선물받거나 직무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 장에게 신고하고 선물 인도(신고할 선물 - 미국화폐 ²¹⁸⁾ 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²¹⁹⁾ 만원 이상)
- ②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²²⁰⁾ 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금지.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²²¹⁾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 없다는 확인 받거나 승인 받은 때에는 취업가능

3) 직무상의 의무

복종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상 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 거부금지 ② ²²²⁾ 법 : 국가경찰은 구체적 사건수사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있을 때 이의제기가능 ③ 복종 의무 위반시 - 국가공무원법상 처벌규정 없음, 경찰공무원법은 평시에는 처벌규정 없으나, 비상시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친절 공정	공무원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 수행하여야 한다.	
종교 중립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 수행 ② 소속 상관이 종교중립의무 위배되는 직무명령 한 경우에는 따르지 아니 ²²³⁾ .	
직무전념 의무	직장이탈금지	① ²²⁴⁾ 의 ²²⁵⁾ 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직장 이탈금지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 구속하려면 ²²⁶⁾ 에게 미리 통보. 다만, ²²⁷⁾ 은 예외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금지	공무외에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금지, ²²⁸⁾ 의 ²²⁹⁾ 없이 겸직금지
「경찰 공무원법」	거짓보고 등 금지	① 직무에 관하여 거짓 보고나 통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무 게을리하거나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지휘권남용등의 금지	전시·사변, 그 밖에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 우려 있는 위급한 사태 발생한 경우,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복착용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²³⁰⁾ 으로 정한다.

* 경찰공무원이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 수행 중인 경우에 직무유기금지 또는 지휘권남용금지를 위반 - ²³¹⁾ 이상의 징역·금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조(기본강령) 경찰공무원은 다음 기본강령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 | | | |
|---------|-------------------|----------|
| 1. 경찰사명 | 2. 경찰정신(호국·봉사·정의) | 3. 규율 |
| 4. 단결 | 5. 책임 | 6. 성실·청렴 |

제8조(지정장소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경찰은 상사 허가받거나 명령에 의한 경우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금지

제9조(근무시간중 음주금지) 경찰은 근무시간중 음주금지. 다만,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수행금지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경찰은 직위 또는 직권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금지

제11조(상관에 대한 신고) 경찰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출장·연가·교육훈련기관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 변동 있는 때는 ²³²⁾에게 신고

제13조(여행의 제한)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²³³⁾이내 직무 복귀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 하고자 할 때는 ²³⁴⁾. 다만, 치안상 특별 사정 있어 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중에는 소속경찰기관장의 허가 받아야 한다.

제18조(포상휴가) 경찰기관장은 근무성적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의 모범이 될 공적있는 경찰에 대하여 1회 ²³⁵⁾이내 포상휴가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경찰기관장은 특별 사정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휴무를 허가 ²³⁶⁾.

1.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
2.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

5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1) 징계별과 형사별

- ① 징계별과 형사별 - 양자 병과는 일사부재리원칙에 反 ²³⁷⁾ (O / X)
- ② 수사기관·감사원은 수사·조사 개시·종료한 때 ²³⁸⁾이내 소속기관장에게 통보
- ③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 진행 ²³⁹⁾.
- ④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통보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요구 기타 징계절차 진행 ²⁴⁰⁾.

(2) 징계권자

- ① 징계는 징계위원회 의결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장이 행하되,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이 행한다.
- ② 다만,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 의결거쳐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 강등·정직과 경정 이상 파면·해임은 ²⁴¹⁾ 제청으로 ²⁴²⁾과 ²⁴³⁾ 거처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 강등 및 정직은 ²⁴⁴⁾이 한다.

(3) 징계의 사유

①	²⁴⁵⁾
②	²⁴⁶⁾
③	²⁴⁷⁾

(4) 징계의 종류와 내용

1) 중징계

파면	① 경찰신분박탈, 향후 경찰 임용불가 ²⁴⁸⁾ (O / X) , 일반공무원 향후 ²⁴⁹⁾ 간 임용제한 ② 퇴직급여제한 ㉠ 재직기간 ²⁵⁰⁾ 미만 - ²⁵¹⁾ 감액지급 ㉡ 재직기간 ²⁵²⁾ 이상 - ²⁵³⁾ 감액지급 ③ 퇴직수당제한 -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²⁵⁴⁾ 감액지급
해임	① 경찰신분박탈, 향후 경찰 임용불가 ²⁵⁵⁾ (O / X) , 일반공무원 향후 ²⁵⁶⁾ 간 임용제한 ② 퇴직급여 제한 ²⁵⁷⁾ (O / X) ③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은 퇴직급여제한 ㉠ 5년 미만 근무자 : ²⁵⁸⁾ 감액지급 ㉡ 5년 이상 근무자 : ²⁵⁹⁾ 감액지급 ④ 퇴직수당 제한 ²⁶⁰⁾ (O / X) ⑤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등은 퇴직수당 제한 받음 :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²⁶¹⁾ 감액지급
강등	① 1계급 ↓, ²⁶²⁾ 직무종사 X, 보수 ²⁶³⁾ 감액 ② 종료일로부터 ²⁶⁴⁾ 승진·승급 제한(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측정거부포함), 소극행정,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은 ²⁶⁵⁾ 더한 기간)
정직	① ²⁶⁶⁾ 기간 직무 정지 ② 보수 ²⁶⁷⁾ 감액 ③ 종료일로부터 ²⁶⁸⁾ 간 승진·승급 제한(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측정거부포함), 소극행정,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은 ²⁶⁹⁾ 더한 기간)

2) 경징계

감봉	① ²⁷⁰⁾ 의 기간 ② 보수의 ²⁷¹⁾ 감액 ③ 종료일로부터 ²⁷²⁾ 승진·승급 제한(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측정거부포함), 소극행정,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은 ²⁷³⁾ 더한 기간)
견책	①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 ② 보수는 전액 지급 ③ 집행일로부터 ²⁷⁴⁾ 승진·승급 제한(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측정거부포함), 소극행정,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은 ²⁷⁵⁾ 더한 기간)

*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5) 징계절차

1) 경찰기관장의 징계등 의결요구

- ① 경찰기관장은 소속 경찰이 징계사유 있다고 인정한 때와 하급기관으로부터 징계의결요구 신청 받은 때는 ²⁷⁶⁾ 관할 징계위원회 구성하여 징계의결 요구 ²⁷⁷⁾ .
- ② 경찰기관장은 소속 아닌 경찰에게 징계사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기관장에게 사실을 증명할만한 사유 밝혀 통지 → 통지받은 기관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²⁷⁸⁾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하거나 징계등 의결요구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징계 등 사유가 성매매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는 ²⁷⁹⁾ 년, 징계등 사유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수수 등, 예산 및 기금등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등이면 ²⁸⁰⁾ 년,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²⁸¹⁾ 년이 지나면 못한다.

징계부가금(「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징계사유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취득·제공한 경우에는 징계 외에 취득·제공한 금전 등의 ²⁸²⁾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를 징계위원회에 요구 ²⁸³⁾ .

2) 징계위원회의 의결

- ① 징계위원회 개최일 ²⁸⁴⁾ 전까지 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 도달
- ② 대상자가 출석통지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아니한 때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가능
- ③ 대상자 소재 불분명시 출석통지 관보에 게재, 게재일부터 ²⁸⁵⁾ 이 지나면 출석통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④ 징계위원회는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대상자는 의견서 또는 말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 제출가능
- ⑤ 징계대상자는 증인 심문 신청가능. 이 경우 ²⁸⁶⁾ 로써 그 채택여부결정
- ⑥ 징계등 의결 요구한 자 또는 징계등 의결요구 신청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진술가능. 다만, ²⁸⁷⁾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 ⑦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 받은 날로부터 ²⁸⁸⁾ 일 이내 징계의결.
다만, 부득이하면 해당 ²⁸⁹⁾ 승인 받아 ²⁹⁰⁾ 일 범위에서 연기가능
- ⑧ 위원장 포함 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⑨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과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가능
- ⑩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은 ²⁹¹⁾ 공개 / 비공개
- ⑪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 의결할 때는 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나 그 밖의 정성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 ²⁹²⁾ .
- ⑫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보 보내어 통지

3) 징계의 집행

경징계	징계의결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결 통지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²⁹³⁾ 이내에 집행
중징계	징계의결 요구한 자는 중징계의결 통지받으면 ²⁹⁴⁾ 임용권자에게 제청 → 임용권자는 ²⁹⁵⁾ 이내 의결서 사본에 처분사유설명서 첨부하여 대상자에게 보내야 함

(6) 징계위원회

「경찰 공무원법」	① ²⁹⁶⁾ 이상 징계의결 –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 ② ²⁹⁷⁾ 이하 징계의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둔다. ③ 경찰 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징계의결 요구 절차, 필요사항은 ²⁹⁸⁾ 으로 정한다.
종류 및 설치	중앙징계위원회 ²⁹⁹⁾ 에 둔다.
	보통징계위원회 경찰청, 시·도경찰청 등, 경찰서 등 및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³⁰⁰⁾ 의 경찰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둔다.
관할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 ³⁰¹⁾ 이상 징계등 의결
	중앙징계위원회 ³⁰²⁾ 징계등 의결
	① 원칙 – ³⁰³⁾ 이하 징계 심의·의결 ② 예외 ㉠ 경찰서, 경찰기동대 : 소속 ³⁰⁴⁾ 이하의 경찰공무원 ㉡ 의무경찰대 및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 : 소속 ³⁰⁵⁾ 이하의 경찰공무원
	* 소속이 다른 2명 이상 경찰 관련 징계사건으로서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는 모두를 관할하는 ³⁰⁶⁾ 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³⁰⁷⁾ 명 이상 ³⁰⁸⁾ 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위원	공무원위원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³⁰⁹⁾ 이상 중에서 해당 기관장이 임명
	① 위원의수 ³¹⁰⁾ 이상을 다음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 특정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수의 ³¹¹⁾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중앙징계위원회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³¹²⁾ 이상 근무 나.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 ³¹³⁾ 이상 재직 다. ³¹⁴⁾ 또는 ³¹⁵⁾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³¹⁶⁾ 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³¹⁷⁾ 년이 경과한 사람]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있는 사람 2. 보통징계위원회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³¹⁸⁾ 이상 근무 나.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 ³¹⁹⁾ 이상 재직 다. 공무원으로 ³²⁰⁾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³²¹⁾ 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³²²⁾ 년이 경과한 사람]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있는 사람 ② 임기 – ³²³⁾ , ³²⁴⁾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계급자.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대표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³²⁵⁾ 명 이상 ³²⁶⁾ 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고려하여 구성. 민간위원 수는 위원장 ³²⁷⁾ 포함 / 제외 위원 수의 ³²⁸⁾ 이상 ② 징계사유가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 ³²⁹⁾ 포함 / 제외 한 위원 수의 ³³⁰⁾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④ 위원장은 표결권 ³³¹⁾ 있다 / 없다 .
제척 등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인 경우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 못한다.

(7) 재징계의결요구

사유	처분권자는 다음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무효·취소 결정·판결 받은 경우 다시 징계의결 요구 ³³²⁾ . 다만, ③의 사유로 무효·취소 결정·판결 받은 ³³³⁾ 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요구하지 ³³⁴⁾ . ① 법령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 흠이 있는 경우 ③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
기간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또는 법원 판결 확정된 날부터 ³³⁵⁾ 이내 관할 징계위원회에 재징계의결 요구.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의결

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1)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 ① 징계처분 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할 때에는 처분사유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
 2. 성희롱
 3.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 우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

(2) 고충심사

「경찰 공무원법」	① 경찰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둔다. ②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³³⁶⁾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의2(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②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³³⁷⁾ 명 이상 ³³⁸⁾ 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³³⁹⁾ 이상이어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³⁴⁰⁾ 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고충심사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³⁴¹⁾ 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³⁴²⁾ 일 범위에서 기한을 연기가능 제8조(심사일의 통지 등)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³⁴³⁾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제10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³⁴⁴⁾ 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³⁴⁵⁾ 의 합의에 따른다.

(3) 소청

1) 의 의

행정심판법상의 일반행정심판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절차 - 346) 법에서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 위하여 347) 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소청사항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한 위원 348) 이상 349) 이하 350) 위원으로 구성,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한 351) 이상 352) 이하 353) 위원과 354) 위원 수의 355) 이상인 356)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357) 으로 보한다.

2) 인사혁신처에 두는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① 358)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359)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② 360) 은 정무직
임명 절차	위원장과 위원은 361) 제청으로 362) 거쳐 363) 이 임명
자격	위원(위원장 포함)은 다음 중 대통령이 임명 ① 364) . 365) 또는 366) 의 직에 367) 이상 근무 ② 대학에서 368) . 369) 또는 370) 담당 371) 이상 직에 372) 이상 근무 ③ 373) 이상 공무원으로 374) 이상 근무 주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상임위원 375) (O/X) 비상임위원 376) (O/X)
임기 등	① 상임위원 임기 - 377) , 378) 연임가능 ② 상임위원은 겸직 379) 금지/허용
신분 보장	380) 이상 형벌 또는 장기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외하고는 의사에 면직 안당함

3) 소청의 절차

① 심사청구

- ㉠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 - 381) 로부터 382) 일 이내
- ㉡ 기타 불리한 처분 - 383) 로부터 384) 일 이내

② 소청심사

- ㉠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 접수하면 385) 심사
- ㉡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 위하여 공무원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함

③ 소청인의 진술권

심사시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반드시 진술 기회부여, 진술기회 주지 않은 결정은 ³⁸⁶⁾

④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결정 정족수	㉠ ³⁸⁷⁾ 합의. ㉡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³⁸⁸⁾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³⁸⁹⁾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 결정내용은 ³⁹⁰⁾ 합의에 따른다.
결정기한	소청심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³⁹¹⁾ 이내 결정(소청심사위원회 의결로 ³⁹²⁾ 일 범위 내 연장가능)
결정구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³⁹³⁾ 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³⁹⁴⁾ 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심사할 경우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결정 하지 못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³⁹⁵⁾ 또는 ³⁹⁶⁾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 있을 때까지는 중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 미치지 아니한다.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 행정청 기속 ³⁹⁷⁾ (O / X)

4)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불복

- ① 재심불가
 ②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 심사·결정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³⁹⁸⁾ 있다 / 없다 .
 ③ 행정소송의 피고 - ³⁹⁹⁾ , 임용권 위임한 경우는 ⁴⁰⁰⁾

제4절 경찰작용법

1 경직법 제2조 제7호가 개괄적 수권조항(일반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① 경찰권 발동사태 완벽 예상해서 요건·한계 입법기관이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불가 ② 일반조항으로 인한 경찰권남용은 조리상 한계로 충분히 통제가능 ③ 일반조항은 개별수권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
2)	경직법 제2조 제7호는 발동근거에 대한 개괄적 수권조항 ×, 조직규범에 불과

2 경찰권발동의 조리상 한계

-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 ³⁾ 판결에 의해서 확립
- (2) 경찰공공의 원칙 - 사생활불가침, 사주소불가침, 민사관계불간섭
- (3) 경찰비례의 원칙 - 경찰권발동의 조건과 정도와 관련
- (4) 경찰책임의 원칙 - 경찰권발동의 대상과 관련

책임의 주체	자연인	경찰책임은 그 위험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되지 책임자의 고의·과실이나 정당한 권원의 유무·행위자의 행위능력·국적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법인	사법상 법인뿐만 아니라 사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경찰책임 진다.
	다른 행정기관	다른 행정기관이나 행정주체의 적법한 기능행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권발동 가능
책임의 종류	행위책임	① 자기 또는 자기의 지배하에 속하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질서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지는 책임 ② 지배자책임의 성질 - ⁴⁾ 대위 / 자기 책임 ③ 직접원인설 -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상태 직접 야기한 행위자만 경찰책임 지고 간접적인 원인제공자는 경찰책임 지지 않는다.
	상태 책임	물건·동물 소유자, 점유자 기타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자가 그 범위 안에서 그 물건·동물로 인하여 안녕·질서위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지는 책임
	복합적 책임	다수인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 상태로 인하여 하나의 질서위반 상태 발생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경찰권발동 가능
경찰 긴급권	① 긴급한 경우 직접적으로 질서위반책임 없는 자에게도 경찰권발동 인정 ② 법령에 근거 ⁵⁾ 필요 / 불요 ③ 일반법 없음 ④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 비책임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 ⁶⁾ 필요 / 불요 ⑤ 제3자의 승낙 ⁷⁾ 필요 / 불요	

3 행정행위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① 재량행위
- ㉠ 8) — 행정청에 당해 행정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재량
 - ㉡ 9) — 법적으로 허용되는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의 재량
- ② 재량행위의 한계
- ㉠ 10) —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
 - ㉡ 11) —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것
- ③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¹²⁾ .
- ④ 재량행위의 통제
- ㉠ 재량권의 일탈·남용 - 위법 - 행정심판 대상 O, 행정소송 대상 O
 - ㉡ 재량권을 그르친 경우 - 부당 - 행정심판 대상 O, 행정소송 대상 X

(2) 처분시 법적용기준(행정기본법 제14조)

- ② 신청에 따른 처분 - 원칙 : ¹³⁾ 의 법령등에 따른다.
- ③ 법령등 위반한 행위 성립과 제재처분 - 원칙 : ¹⁴⁾ 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 위반한 행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¹⁵⁾ 등 적용

(3) 제재처분

- ① 행정청은 법령등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¹⁶⁾ 년 지나면 제재처분(인허가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불가
- ② 다음 경우에는 ① 미적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¹⁷⁾ 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 지난 경우
 4. 제재처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 있는 경우
- ③ 행정청은 ①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재결이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 재결·판결 확정된 날부터 ¹⁸⁾ 년(합의제행정기관은 ¹⁹⁾ 년) 지나기 전까지는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가능

(4) 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적 처분 가능. 다만, 처분에 재량이 ²⁰⁾ 경우는 불가

(5) 행정행위의 내용

1) 하명

의의	①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의 일체를 명하는 행위 ② 경찰관의 수신호, 교통신호등의 신호 - 하명
효과	① 하명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행정주체에 대해서만 의무이행책임 인정. 제3자에 대하여 의무부담하는 것 아님 ② 원칙적으로 수명자에게만 발생, 대물적 하명은 물건에 대한 법적 지위 승계한 자에게도 효과 미친다.
위반의 효과	① 의무 불이행 → ²¹⁾ , 의무 위반 → ²²⁾ ② 하명에 위반한 행위 -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 없음(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 아님)

2) 허가

의의	①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상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 ② 자동차 운전면허, 의사면허, 한의사면허, 학원 설립인가 등
신청	①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출원(신청) 필요, 신청없는 허가도 존재 ② 출원과 다른 내용의 허가(수정허가)도 인정
대상	상대적 금지만 허가대상, 절대적 금지는 허가대상 아님
상대적 효력	허가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당해 허가가 정하고 있는 금지만 해제하여 줄 뿐 다른 모든 금지를 해제하는 것 아님
기준법령	신청시와 처분시 법이 다른 경우 허가기준이 되는 법령 - ²³⁾ 법
무허가 행위효과	허가는 행위의 ²⁴⁾ 요건 ○, ²⁵⁾ 요건 × → 무허가 행위의 사법상 법률행위는 무효 ²⁶⁾ (○/×)

3) 면제

작위·급부·수인 의무 해제

4) 특허(설권행위)

- ① 도로점용허가, 개인택시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 공무원임명(채용), 귀화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광업허가, 어업면허, 국유재산 관리청이 행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 ② 신청없는 특허나 수정특허 ²⁷⁾ 인정 / 부정
- ③ 법규특허 ²⁸⁾ 인정 / 부정

5) 인가(보충행위)

- ①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사립학교법인 이사취임승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허가
- ②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만, 사실행위는 인가대상 아님
- ③ 수정인가 ²⁹⁾ (○/×) , 법규인가 ³⁰⁾ 인정 / 부정

(6) 행정행위의 부관

의의	법정부관은 부관 아님		
종류	조건	정지 조건	행정행위 효력 ³¹⁾ 발생 / 소멸 을 장래의 ³²⁾ 한 사실에 의존
		해제 조건	① 행정행위 효력 ³³⁾ 발생 / 소멸 을 장래의 ³⁴⁾ 한 사실에 의존 ② 3개월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
	기한	시기	행정행위 효력 ³⁵⁾ 발생 / 소멸 을 장래의 ³⁶⁾ 한 사실에 의존
		종기	행정행위 효력 ³⁷⁾ 발생 / 소멸 을 장래의 ³⁸⁾ 한 사실에 의존
	부담	① 행정행위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 의무 부과 ②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 이행해야 효력 발생 ³⁹⁾ (O / X) ③ 부담 불이행시 당연히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 ⁴⁰⁾ (O / X) ④ 부담 자체는 독립된 행정행위 – 부담만의 독립쟁송 ⁴¹⁾ 가능 / 불가능 ⑤ 조건과 부담 구별이 명확하지 않을 때 ⁴²⁾ 으로 해석	
	철회권 유보	철회권유보 사유 발생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철회불가, 철회의 일반적 요건 충족되어야 함	
	법률효과 일부배제	택시영업의 격일제 운행, 야간 한정 도로점용허가,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한 국가귀속처분	
	수정부담	신청과 다른 행정행위(부관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	
	가능성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⁴³⁾ 있는 / 없는 경우 부관 부가가능. 재량이 ⁴⁴⁾ 있는 / 없는 경우 법률에 근거 있는 경우 부관 부가가능	
사후 부관 및 부관의 사후변경	① 법률에 근거 ② 당사자 동의 ③ 사정 변경되어 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건	①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②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③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범위일 것		

(7) 처분의 효력(행정기본법 제15조)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거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 다만, ⁴⁵⁾ 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지 아니한다.

(8) 행정행위의 취소

- ① 행정청은 위법·부당한 처분의 전부·일부를 소급하여 취소가능. 다만, 당사자 신뢰보호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래 향하여 취소가능
- ②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이익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⁴⁶⁾ 로 알지 못한 경우

(9) 이의신청(행정기본법 제36조), 재심사(행정기본법 제37조)

이의신청	① 처분에 이의 있는 당사자는 처분 받은 날부터 ⁴⁷⁾ 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 가능 ② 행정청은 이의신청 받으면 신청 받은 날부터 ⁴⁸⁾ 일 이내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⁴⁹⁾ 일 이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⁵⁰⁾ 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가능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⁵¹⁾ 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가능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이 쟁송을 통하여 다룰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라도 다음 경우는 해당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 신청가능 1. 처분의 근거 된 사실관계·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② ①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⁵²⁾ 없이 ①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 ③ ①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①의 사유를 안 날부터 ⁵³⁾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는 날부터 ⁵⁴⁾ 이 지나면 불가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⁵⁵⁾ 명문화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사람 정지시켜 질문 ⁵⁶⁾ .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 합리적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는 범죄에 관한 사실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대상자 정지 장소에서 질문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는 질문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 ⁵⁷⁾)로 동행요구 ⁵⁸⁾ . 동행요구받은 사람은 요구 거절할 수 ⁵⁹⁾ .

③ 대상자에게 질문할 때 ⁶⁰⁾ 가지고 있는지 조사 ⁶¹⁾ .

④ 질문하거나 동행요구시 증표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목적과 이유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장소 밝혀야 한다.(*증표 - 공무원증 O, 흉장 X)

⑤ 동행한 사람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 기회 주어야 하며, ⁶²⁾ 권리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동행한 사람을 ⁶³⁾ 초과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질문받거나 동행 요구받은 사람은 ⁶⁴⁾ 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구속 안 당하며, 의사에 반하여 법원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주위 사정 합리적 판단해 볼 때 다음 사람이 명백하고 응급구호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사람 발견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 ⁶⁵⁾ .

1. 정신착란 일으키거나 술 취하여 자신·다른 사람 생명·신체·재산에 위해 끼칠 우려 있는 사람
2. ⁶⁶⁾ 시도하는 사람
3. ⁶⁷⁾ , ⁶⁸⁾ , ⁶⁹⁾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 없으며 응급구호 필요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 거절하는 경우는 ⁷⁰⁾ .

② 긴급구호 요청받은 보건 의료기관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 거절할 수 없다.

*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시 경직법상 처벌규정 ⁷¹⁾ 있음 / 없음

- ③ 보호조치하는 경우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하여 ⁷²⁾ .
- ④ 보호조치 하였을 때는 ⁷³⁾ 구호대상자 가족 등에게 사실 알려야 하며, 연고자 미발견시 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⑤ 경찰관은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보고 받은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 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경찰관서 보호기간은 ⁷⁴⁾ 초과금지. 물건 경찰관서에 임시영치 기간은 ⁷⁵⁾ 초과금지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 생명·신체 위해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 끼칠 우려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 폭발, 위험한 동물 등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 사태 있을 때는 다음 조치 ⁷⁶⁾ .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⁷⁷⁾ 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 ⁷⁸⁾ 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⁷⁹⁾ 위하여 필요 인정되는 조치 하게 하거나 ⁸⁰⁾ 그 조치 하는 것
- ② ⁸¹⁾ 은 대간접작전 수행이나 소요사태 진압 위하여 필요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있을 때는 대간접 작전지역이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 제한하거나 금지 ⁸²⁾ .
-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조치 하거나 제3항 보고 받은 경찰관서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예방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⁸³⁾ 하고, 사람 생명·신체에 위해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 끼칠 우려 있는 긴급한 경우 행위를 ⁸⁴⁾ .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위험 사태 발생하여 사람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 임박한 때에 위해 방지하거나 피해자 구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 ⁸⁵⁾ .

- ② 흥행장,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관리자 등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 예방 위하여 해당 장소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출입 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③ 경찰관은 대간접 작전 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작전지역에서 제2항에 따른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⁸⁶⁾ 은 직무수행에 필요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있을 때는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 등에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 장 협조 받아 사실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⁸⁷⁾ 은 다음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요구서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 요구할 수 있다.

1. 88) 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2. 89) 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3. 사고로 인한 90) 확인
4. 행정처분 위한 91)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① ⁹²⁾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처리기준, 정보수집·작성·배포에 수반되는 사실확인 절차와 한계는 93)
으로 정한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 ① 정보활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 해서는 안 된다.

1. 정치에 관여 위해 정보 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
2. 법령의 직무 범위 벗어나 개인의 동향 등 파악 위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
3.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표명 강요하는 행위
4. 부당한 민원이나 청탁을 직무 관련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5.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6.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

제3조(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범죄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 X)
2. 정보 대상자인 수형자·가석방자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
3. 국가중요시설 안전 및 주요 인사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4. 방첩·대테러활동 등 국가안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정보
5. 재난·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6. 집회·시위 등으로 인한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정보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정보[해당 정책의 입안·집행·평가를 위해 객관적이고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 이와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생활·신조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
8. 도로 교통의 위해 방지·제거 및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정보
9. 경찰청장이 위탁받은 신원조사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

제4조(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① 경찰관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보수집 또는 사실 확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범죄의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 경찰관은 다음 장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1. 언론·교육·종교·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2. 민간기업
3. 정당의 사무소

제7조(수집·작성한 정보의 처리) ②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수집·작성한 정보가 목적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① 누구든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이 영과 그 밖의 법령에 반하여 지시해서는 안 된다.

② 경찰관은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의3(국제협력) ⁹⁴⁾ 은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⁹⁵⁾ .

제9조(유치장)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 자유 제한 판결·처분 받은 사람 수용 위하여 ⁹⁶⁾ 와 ⁹⁷⁾ 에 유치장을 둔다.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 사용 ⁹⁸⁾ . 다만, 사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⁹⁹⁾) 사용할 때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받은 후 사용 ¹⁰⁰⁾ .

② “ ¹⁰¹⁾ ”란 무기, 경찰장구,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구, 차량·선박·항공기 등 직무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③ 경찰관은 경찰장비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 장비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④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⑤ ¹⁰²⁾ 은 위해성 장비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¹⁰³⁾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 ¹⁰⁴⁾ .

⑥ 위해성 경찰장비 종류 및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 기준 등은 ¹⁰⁵⁾ 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위하여 필요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있을 때는 합리적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 ¹⁰⁶⁾ .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¹⁰⁷⁾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 생명·신체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②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¹⁰⁸⁾ , ¹⁰⁹⁾ , ¹¹⁰⁾ , ¹¹¹⁾ 등을 말한다.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¹¹²⁾ 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 최루 등의 작용제 ¹¹³⁾) 또는 최루탄을 사용 ¹¹⁴⁾ .

1. 범인 체포 또는 범인 도주 방지

2.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 발생 억제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 체포, 범인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 생명·신체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위하여 상당한 이유 있을 때는 합리적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 사용 ¹¹⁵⁾ .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 제외하고는 사람에게서 위해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규정된 ¹¹⁶⁾ 와 ¹¹⁷⁾ 에 해당할 때
 2.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 방지하거나 행위자 체포 위하여 무기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있을 때
 -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¹¹⁸⁾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도주하려고 할 때
 - 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도주하려고 할 때
 -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 라. 범인이나 소요 일으킨 사람이 위험한 물건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¹¹⁹⁾ 이상 물건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 ② “무기”란 사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¹²⁰⁾ . ¹²¹⁾ . ¹²²⁾ 등을 말한다.
 - ③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수행할 때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직무 수행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2. 범죄 수사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
 -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
 3.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대상자로부터 그 기록의 요청 또는 동의 받은 경우
- ② 이 법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①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 영상음성기록을 전송·저장하는 때에 그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7(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 ¹²³⁾ , ¹²⁴⁾ , ¹²⁵⁾ 또는 ¹²⁶⁾ 를 사용하는 경우 ¹²⁷⁾ 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 ¹²⁸⁾ .
-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¹²⁹⁾ 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손실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¹³⁰⁾ .
1. 손실발생 원인에 대하여 책임없는 자가 ¹³¹⁾ 손실 입은 경우
 2. 손실발생 원인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자신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 초과하는 ¹³²⁾ 손실 입은 경우(손실발생원인에 대하여 책임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 협조하거나 물건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입은 경우
- ② 보상청구권은 손실 있음 안 날부터 ¹³³⁾ , 손실 발생한 날부터 ¹³⁴⁾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 ③ 손실보상신청 사건 심의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둔다.
- ④ ¹³⁵⁾ 또는 ¹³⁶⁾ 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 ¹³⁷⁾ .
- ⑤ 보상금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¹³⁸⁾ 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 이 경우 ¹³⁹⁾ 는 손실보상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능
- ⑥ ¹⁴⁰⁾ 또는 ¹⁴¹⁾ 은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¹⁴²⁾ .
- ⑦ 손실보상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¹⁴³⁾ 으로 정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① 손실보상 할 때 물건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보상
1. 손실 입은 물건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 입은 물건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¹⁴⁴⁾ 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② 물건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
-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손실보상받으려는 사람은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 ② 청구서받은 국가경찰관서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시·도경찰청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③ 보상금 지급 청구서받은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하되, 다음 경우에는 그 청구를 ¹⁴⁵⁾ 각하 / 기각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④ 경찰청장등은 결정일부 ¹⁴⁶⁾ 이내에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
- ⑤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¹⁴⁷⁾ 으로 지급
- ⑥ 보상금은 ¹⁴⁸⁾ 로 지급, 예산부족 등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 사정 있는 경우에는 ¹⁴⁹⁾ 받아 분할하여 지급가능
- ⑦ 보상금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부상등급이 변경되거나, 부상등급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 추가 지급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 청구가능
- ⑧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제17조의3(국가경찰위원회 보고 등) ① 위원회(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위원회만 해당)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를 ¹⁵⁰⁾ 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사자료와 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의3(보상금 지급) ① ¹⁵¹⁾ , ¹⁵²⁾ 또는 ¹⁵³⁾ 은 다음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¹⁵⁴⁾ .
1. 범인 또는 범인소재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2. 범인검거하여 경찰에게 인도한 사람
 3. 테러범죄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 심사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¹⁵⁵⁾ .
- ③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¹⁵⁶⁾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④ 보상금심사위원회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 ⑤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상금심사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 환수** ¹⁵⁷⁾ .
- ⑥ 보상대상,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보상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사항, **필요한 사항은** ¹⁵⁸⁾ 으로 정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8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대상자) 법 제11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2.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3. 그 밖에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20조 ③ **보상금 최고액은** ¹⁵⁹⁾ , 구체적 보상금 지급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

제21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①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와 보상금심사위원회

손실 보상 심의 위원회	① 설치 - ¹⁶⁰⁾
	② 위원장 1명 포함 ¹⁶¹⁾ 의 위원
	③ 위원은 소속 경찰과 다음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위촉, 임명. 이 경우 위원의 ¹⁶²⁾ 이상은 경찰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¹⁶³⁾ 이상 근무한 사람
	2. 법학 또는 행정학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¹⁶⁴⁾ 이상 재직인 사람
	3.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보상금 심사 위원회	④ 위촉위원 임기는 ¹⁶⁵⁾
	⑤ 위원장은 ¹⁶⁶⁾ . 위원장이 부득이 사유로 직무수행할 수 없는 때는 ¹⁶⁷⁾ 이 직무 대행
	⑥ 위원회의 회의는 ¹⁶⁸⁾ 으로 의결
	① ¹⁶⁹⁾ , ¹⁷⁰⁾ 및 ¹⁷¹⁾ 은 보상금 지급 심사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 설치·운영 ¹⁷²⁾ .
	② 위원장 1명 포함 ¹⁷³⁾ 이내 위원으로 구성
	③ 위원은 ¹⁷⁴⁾ 중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서장이 임명
	④ 위원장은 소속 ¹⁷⁵⁾ 이상 경찰 중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서장이 임명
	⑤ 회의는 ¹⁷⁶⁾ 으로 의결

법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고시)

①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

1.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해당 범죄 : ¹⁷⁷⁾ 만원
2. 장기 10년 미만 징역·금고 해당 범죄 : ¹⁷⁸⁾ 만원
3.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 ¹⁷⁹⁾ 만원

②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 기준 연간 ¹⁸⁰⁾ 초과 보상금 지급불가

제11조의4(소송 지원) ¹⁸¹⁾ 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¹⁸²⁾ .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¹⁸³⁾ 또는 ¹⁸⁴⁾ 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¹⁸⁵⁾ .

1. 살인, 상해와 폭행, 강간, 강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제12조(벌칙) 경찰관 의의 위반하거나 직권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¹⁸⁶⁾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¹⁸⁷⁾ 만원 이하의 벌금

5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경찰장비의 종류)

1. 경찰장구 :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 ¹⁸⁸⁾ ·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 포함)·산탄총· ¹⁸⁹⁾ 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¹⁹⁰⁾
3. 분사기·최루탄등 :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 ¹⁹¹⁾ 총(고무탄 발사검용을 ¹⁹²⁾)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¹⁹³⁾)
4. 기타장비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 ¹⁹⁴⁾ . ¹⁹⁵⁾ . ¹⁹⁶⁾ 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제4조(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은 체포·구속영장 집행하거나 신체자유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경찰관은 범인·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 생명·신체 위함과 재산·공공시설 위험 방지 위하여 필요한 때는 최소한 범위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① 경찰관은 ¹⁹⁷⁾ 미만 자 또는 ¹⁹⁸⁾ 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 사용금지

②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 있는 전자총격기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 얼굴 향하여 전극침 발사금지

제9조(총기사용의 경고) 경찰관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특히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인질·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제10조(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②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¹⁹⁹⁾ 미만 자 또는 ⁽²⁰⁰⁾ 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 발사금지

제12조(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① 경찰관은 범인 체포·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 생명·신체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 위하여 필요할 때는 최소한 범위에서 가스발사총 사용가능. 경찰관은 ⁽²⁰¹⁾ 이내 거리에서 얼굴 향하여 발사금지

②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 발사하는 경우 ⁽²⁰²⁾ 이상 발사각 유지,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 발사하는 경우 ⁽²⁰³⁾ 이상 발사각 유지

제13조(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²⁰⁴⁾ 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선박운항정지(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²⁰⁵⁾ 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의2(살수차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다음에 해당하여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²⁰⁶⁾ 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다.

1.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2.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로 인해 해당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② 경찰관은 살수차 사용하는 경우 별표 3의 살수거리별 수압기준에 따라 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살수하는 것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²⁰⁷⁾ 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루액의 혼합 살수 절차 및 방법은 ⁽²⁰⁸⁾ 이 정한다.

제14조(석공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총기·폭발물 기타 위험물로 무장한 범인 또는 인질범의 체포,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은밀히 수행하거나 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등 부득이한 때에 한하여 ⁽²⁰⁹⁾ 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석공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하는 경찰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소속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이 사용할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③ 안전성 검사 참여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²¹⁰⁾ 이내 신규 도입 장비 안전성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출

④ 경찰청장은 안전성 검사 실시 후 ⁽²¹¹⁾ 이내 결과보고서를 ⁽²¹²⁾ 에 제출

제19조(위해성 경찰장비의 개조 등)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폐기대상인 위해성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사용기록의 보관 등) ① 살수차, 분사기 및 최루탄, 무기 사용하는 경우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보고서 작성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 직근상급 감독자는 이를 ²¹³⁾ 보관

② 무기 사용보고 받은 직근상급 감독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1) 대상자의 행위

214)	①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에 따르는 상태 ② 대상자가 경찰관의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고 약간의 시간만 지체하는 경우
215)	①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 ② 경찰관이 정당한 이동 명령을 발하였음에도 가만히 서있거나 앉아 있는 등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일부러 몸의 힘을 모두 빼거나, 고정된 물체를 꼭 잡고 버팀으로써 움직이지 않으려는 상태 등
216)	①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 ② 대상자가 자신을 체포·연행하려는 경찰관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이탈하거나 도주하려는 행위, 체포·연행을 위해 팔을 잡으려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거나, 경찰관을 밀고 잡아끄는 행위, 경찰관에게 침을 뱉거나 경찰관 밀치는 행위 등
217)	①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 ②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 주먹·발 등을 사용해서 경찰관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거나 임박한 상태, 강한 힘으로 경찰관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완력을 사용해 체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상태 등
218)	①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 ② 총기류(공기총·엽총·사제권총 등), 흉기(칼·도끼·낫 등), 둔기(망치·쇠파이프 등)를 이용하여 경찰관, 제3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위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경찰관이나 제3자의 목을 세계 조르거나 무차별 폭행하는 등 생명·신체에 대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정도의 위험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2) 경찰관의 대응수준

219)	‘순응’ 이상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 대상자의 협조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
220)	‘소극적 저항’ 이상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 대상자 신체 접촉 통해 경찰목적 달성 강제하지만 신체적 부상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 가. 신체 일부 잡기·밀기·잡아끌기, 쥐기·누르기·비틀기 나. 경찰봉 양 끝 또는 방패를 잡고 대상자의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대상자를 특정 방향으로 밀거나 잡아당기기

221)	‘적극적 저항’ 이상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 대상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 가.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방법, 팔·다리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다리 걸거나 들쳐 매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 제압하는 방법 나. 분사기 사용(다른 저위험 물리력 이하 수단으로 제압이 어렵고, 경찰관이나 대상자의 부상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222)	‘폭력적 공격’ 이상 상태의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 대상자에게 신체적 부상입힐 수 있으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 낮은 물리력 가. 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 나. 경찰봉으로 중요부위가 아닌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가격 다. 방패로 강하게 압박하거나 세게 미는 행위 라. 전자충격기 사용
223)	‘치명적 공격’ 상태 대상자로 인해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 가. 권총 등 총기류 사용 나. 경찰봉, 방패, 신체적 물리력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 가격, 대상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거나 신체를 강한 힘으로 압박하는 행위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정보는 국민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공개 ²²⁴⁾ .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²²⁵⁾ 은 정보공개청구 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²²⁶⁾ 으로 정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공개청구자는 해당 정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²²⁷⁾ 를 제출하거나 ²²⁸⁾ 로써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 받으면 청구 받은 날부터 ²²⁹⁾ 이내 공개 여부 결정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공개 여부 결정할 수 없을 때 그 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날부터 ²³⁰⁾ 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가능.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²³¹⁾ 문서통지

③ 공공기관 공개청구공개 대상 정보 전부·일부가 제3자와 관련 있다 인정할 때 제3자에게 ²³²⁾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의 의견을 ²³³⁾ .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 여부 심의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포함 ²³⁴⁾ 의 위원으로 구성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²³⁵⁾ 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결정한 경우는 공개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

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원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²³⁶⁾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²³⁷⁾ .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 공개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범위에서 ²³⁸⁾ 이 부담

② 정보사용 목적이 ²³⁹⁾ 을 위하여 필요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가능

제18조(이의신청) ① 정보공개와 관련 공공기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 없는 때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 결정 ²⁴⁰⁾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경과한 날부터 ²⁴¹⁾ 이내에 ²⁴²⁾ 에 ²⁴³⁾ 로 이의신청가능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²⁴⁴⁾ 이내 결정, 그 결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통지.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결정할 수 없을 때에 그 기간이 ²⁴⁵⁾ 부터 기산하여 ²⁴⁶⁾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제19조(행정심판) ① 공공기관 결정에 불복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 없는 때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가능

②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할 수 ²⁴⁷⁾ 있다 / 없다 .

제20조(행정소송) ① 공공기관 결정에 불복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 없는 때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가능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공개 청구된 사실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²⁴⁸⁾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비공개 요청가능

② 비공개 요청에 불구 공공기관 공개 결정 할 때에 지체 없이 문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능.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 받은 날부터 ²⁴⁹⁾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 최소한 ²⁵⁰⁾ 간격 두어야 한다.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사항 심의·조정 위하여 ²⁵¹⁾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²⁵²⁾ 포함 ²⁵³⁾ 의 위원으로 구성
 ② 위원장 포함한 ²⁵⁴⁾ 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²⁵⁵⁾ , 연임할 수 ²⁵⁶⁾ 있다 / 없다 .

제24조(제도 총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 업무 관장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 효율적 운영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관위는 ²⁵⁷⁾ 포함 / 제외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할 수 있다.

8 「개인정보보호법」

(1) 용어정의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 가명정보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²⁵⁸⁾ 를 삭제하거나 ²⁵⁹⁾ 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2) 개인정보보호원칙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²⁶⁰⁾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²⁶¹⁾ 에 의하여, ²⁶²⁾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²⁶³⁾ 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① ²⁶⁴⁾ 소속
- ②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 3년, 1차 연임 가능
-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 ⑤ 재과 출과

9 의무이행확보수단

(1) 행정강제

1) 강제집행

행정대집행	①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② 이동명령에 불응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견인조치, 철거명령에 불응하는 건물 강제철거 ③ 절차 : 계 → 통 → 실 → 비
이행강제금 부과	① 의무자가 의무 불이행시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의무 이행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 부과하는 것 ②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가능 . 다만, 의무자가 의무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
직접강제	① 의무 이행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행사하여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② 해산명령 후의 집회자 해산, 사증없이 입국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불법영업소의 폐쇄조치 ③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²⁶⁵⁾ 부과 방법으로는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
강제징수	의무자가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시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행사하여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2) 즉시강제

의의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 장애 제거 위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 달성하는 것 가. 행정청이 미리 의무 이행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의무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사례	감염병환자의 즉각적인 강제격리, 보호조치, 위험발생 방지조치, 범죄의 제지 조치, 무기사용, 경찰장구의 사용, 분사기 등의 사용 등
한계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

참고 「행정조사기본법」

적용범위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조사의 일반법
기본원칙	① 조사목적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명시 ②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실시함으로써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④ 행정조사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금지

근거	법령등에서 행정조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 실시가능. 다만, 임의조사는 예외
조사주기	²⁶⁶⁾ 정기 / 수시 조사 원칙
공동조사	행정기관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²⁶⁷⁾ .
조사의 사전통지	행정조사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장은 출석요구서등을 조사개시 ²⁶⁸⁾ 전까지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다만, 다음 경우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조사목적 등을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가능 3.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조사결과 통지	행정기관장은 법령 등에 특별 규정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결과 확정된 날부터 ²⁶⁹⁾ 이내 조사대상자에게 통지

(2) 행정벌

1) 즉결심판

의의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 경미한 범죄사건을 통상적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할 ²⁷⁰⁾ 의 청구에 의해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서 심판하는 특별형사소송절차
대상	피고인에게 ²⁷¹⁾ 에 처할 수 있다.
증거물 제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 — ²⁷²⁾ 예외
청구 기각	판사는 사건이 즉심에 의하여 심판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결정으로 즉결심판 ²⁷³⁾ 하여야 한다. →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장에 송치
개정	즉결심판 심리와 재판 선고는 ²⁷⁴⁾ 에서 행하되, 법정은 ²⁷⁵⁾ 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정식재판 청구	피고인 ① 피고인은 즉결심판 선고·고지 받은 날부터 ²⁷⁶⁾ 일 이내 정식재판청구서를 ²⁷⁷⁾ 에게 제출 →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송부 ② 피고인은 정식재판 포기가능 경찰서장 ²⁷⁸⁾ 선고 · ²⁷⁹⁾ 또는 ²⁸⁰⁾ 선고하였을 때는 경찰서장은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 ²⁸¹⁾ 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가능. 이 경우 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
유치 명령	판사는 구류선고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 없거나 도망 염려가 있을 때는 ²⁸²⁾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 초과금지

2) 통고처분

- ① 정식재판 대신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를 명하는 준사법적 행위
- ②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 ③ 통고처분 받은 자가 법정기한 내에 통고된 내용 이행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일사부재리원칙 적용
- ④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 한 이상,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 제기불가
- ⑤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²⁸³⁾ (O / X)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²⁸⁴⁾ 의 법률에 따른다.

-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²⁸⁵⁾ 법률을 적용한다.
-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 한 자에게 적용한다.

- ②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²⁸⁶⁾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책임연령) ²⁸⁷⁾ 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 ²⁸⁸⁾ .
- ③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③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²⁸⁹⁾ 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²⁹⁰⁾ 이상의 기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① 당사자는 과태료,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²⁹¹⁾ .

②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²⁹²⁾ 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²⁹³⁾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²⁹⁴⁾ .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²⁹⁵⁾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²⁹⁶⁾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²⁹⁷⁾ 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²⁹⁸⁾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²⁹⁹⁾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제30조(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법원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통보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결정의 고지) ①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38조(항고) 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①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4조(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10 행정상 손해배상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요건

공무원의 행위	① 일시적이고 한정적 위탁도 포함 ³⁰⁰⁾ (O / X) ② 가해공무원이 특정되지 않아도 공무원의 행위에 의한 것인 이상 국가배상책임 인정
직무집행	① 직무범위 - 권력작용 O, 비권력 공적작용 ³⁰¹⁾ (O / X), 사경제 작용 ³⁰²⁾ (O / X) ② 외형설 - 외관이 객관적으로 공무원 직무행위로 보여 질 때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거나, 주관적으로 공무원집행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 인정
고의·과실	① 공무원이 관계법규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처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 없다고는 할 수 없다. ② 법령 해석이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는 경우에 공무원이 나름대로 신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과실 인정할 수는 없다.
법령위반	① 형식적 의미 법률뿐만 아니라 불문법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도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정당성 결여한 것 의미 ②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 이동하겠다는 차량열쇠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일으킨 경우 - 국가배상책임 ³⁰³⁾ 인정 / 부정
타인에게 손해발생	외국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상호주의 -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 인정된 사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
상당인과 관계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내용이 공공일반 이익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 질서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 위반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 인정

2) 배상책임 내용

배상책임자	① 국가 또는 ³⁰⁴⁾ (헌법 - 국가와 ³⁰⁵⁾) ② 지자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교통사고 발생 -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 인정
선택적 청구	①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 있는 경우 -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 ³⁰⁶⁾ 인정 / 부정 ② 가해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 -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 ³⁰⁷⁾ 인정 / 부정
구상권	공무원에게 ³⁰⁸⁾ . ³⁰⁹⁾ 있었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공무원에게 구상가능
양도·압류금지	³¹⁰⁾ . ³¹¹⁾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압류금지

3) 군인등에 대한 특례(이중배상금지)

- ① 군인·군무원·경찰 또는 예비군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관련하여 전사·순직 하거나 공상입은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배상 청구 불가
- ② 공익근무요원과 경비교도대원 - 군인 X, 전투경찰 - 경찰공무원 O
- ③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 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배상 제한

(2)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요건

공공의 영조물	영조물에는 사실상의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설치·관리상 하자	무과실책임

타인에게 손해발생

2) 면책사유

- ① 불가항력은 면책
- ② 예산부족은 참작사유 될 수 있을지라도 절대적 면책사유 아님

11 행정심판

(1)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2) 행정심판위원회

- ①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³¹²⁾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
-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위원장 1명 포함 70명 이내 위원, 상임위원은 4명 이내
 - ㉡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
 - ㉢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제청으로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이 임명
 - ㉣ 비상임위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 ㉤ 상임위원 - 3년, 1차 연임가능, 비상임위원 - 2년, 2차 연임가능

(3) 행정심판의 대상

- ① 행정청의 처분·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행정심판 제기가능
- ② ³¹³⁾ 의 처분·부작위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 청구불가

(4) 청구기간

- ① 처분이 있을 알게 된 날부터 ³¹⁴⁾ 일 이내 청구. 청구인이 불가항력으로 기간에 심판청구 할 수 없었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³¹⁵⁾ 일 이내에 청구가능. 다만, 국외에서 심판 청구하는 경우는 그 기간을 ³¹⁶⁾ 일로 한다.
- ②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³¹⁷⁾ 일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기간제한 받는 행정심판 - ³¹⁸⁾

(5) 청구방식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³¹⁹⁾ 이나 ³²⁰⁾ 에 제출

(6) 행정심판 청구의 효과

- 1) 원칙 - 집행부정지, 예외 - 집행정지(중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속행의 전부·일부를 정지가능)

2) 임시처분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7) 행정심판의 심리

- ①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심리가능
- ②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 신청한 경우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 하여야 한다.

(8) 행정심판의 재결

1) 취소심판의 인용재결

취소재결 O, 변경재결 O, 변경명령재결 ³²¹⁾ (O / X) . 취소명령재결 ³²²⁾ (O / X)

2) 사정재결

-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가능
- ② 사정재결을 할 때 재결 ³²³⁾ 에 처분·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③ 사정재결 인정되는 행정심판 - ³²⁴⁾

3) 재결기간

행정심판의 재결은 심판청구서 받은 날부터 ³²⁵⁾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³²⁶⁾ 일 연장가능

4) 재결의 범위

-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5) 재결의 기속력

- ①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따라서,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② 재결의 기속력은 ³²⁷⁾ 재결의 경우에만 인정

(9) 재심판 청구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 금지

12 행정소송

(1)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³²⁸⁾ 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소송
	³²⁹⁾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 확인하는 소송
	³³⁰⁾ 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
³³¹⁾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³³²⁾ 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³³³⁾ 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기관 상호간에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권한행사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취소소송

1) 관할

제1심관할법원은 ³³⁴⁾ 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2) 처분성 인정여부

- 시도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 처분성 ³³⁵⁾ 인정 / 부정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 - 처분성 ³³⁶⁾ 인정 / 부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 처분성 ³³⁷⁾ 인정 / 부정
-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 처분성 ³³⁸⁾ 인정 / 부정
- 병역법상의 신체등위판정 - 처분성 ³³⁹⁾ 인정 / 부정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 처분성 ³⁴⁰⁾ 인정 / 부정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 처분성 ³⁴¹⁾ 인정 / 부정
-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벌점부과 - 처분성 ³⁴²⁾ 인정 / 부정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 처분성 ³⁴³⁾ 인정 / 부정
-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행위 - 처분성 ³⁴⁴⁾ 인정 / 부정
- 정직 이상 징계처분 받은 사람을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한 행위 - 처분성 ³⁴⁵⁾ 인정 / 부정
- 서울교대학장의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 처분성 ³⁴⁶⁾ 인정 / 부정

3) 제소기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³⁴⁷⁾ 일 이내 제기.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³⁴⁸⁾ 년 경과하면 제기불가

4) 피고적격

- ① 원칙 -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 ② 정리

처분청	피고적격
대통령	³⁴⁹⁾
권한의 위임	³⁵⁰⁾
권한의 대리	³⁵¹⁾
권한의 내부위임	³⁵²⁾
처분적 조례	³⁵³⁾

5) 소송제기의 효과

- ① 원칙 - 집행부정지
- ② 예외 - 집행정지

요건	㉠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는 집행정지불가능 ㉡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 긴급한 필요 ㉤ 집행정지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본안의 승소가가능성(판례)
절차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6) 사정판결

-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어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 기각가능
- ② 사정판결이 인정되는 소송 - ³⁵⁴⁾
- ③ 처분등이 위법하다는 것을 판결의 주문에 명시

(3) 무효등확인소송

- ① 제소기간 - 무효등확인소송에 적용 ³⁵⁵⁾ (O / X)
- ② 행정심판전치주의 - 무효등확인소송에 적용 ³⁵⁶⁾ (O / X)
- ③ 집행정지 - 무효등확인소송에 적용 ³⁵⁷⁾ (O / X)
- ④ 사정판결 - 무효등확인소송에 적용 ³⁵⁸⁾ (O / X)

(4)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① 제소기간 -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적용 ³⁵⁹⁾ (O / X)
- ② 집행정지 -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적용 ³⁶⁰⁾ (O / X)
- ③ 사정판결 -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적용 ³⁶¹⁾ (O / X)

(5) 당사자소송

- ①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 ②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1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 정책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³⁶²⁾ . ³⁶³⁾ 에 피해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 범죄피해자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 X
 4. “구조대상 범죄피해” -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할 능력 없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 없는 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 긴급피난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포함,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 입은 것
- ②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부(사실혼 포함) 2. 직계혈족 3. 4촌 이내 친족 4. 동거친족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구조피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2.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3.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4.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5.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④ 구조피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구조금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

② 신청은 해당 범죄피해 발생 안 날부터 ³⁶⁴⁾ 년 지나거나 범죄피해 발생한 날부터 ³⁶⁵⁾ 년이 지나면 불가

제31조(소멸시효) 구조금받을 권리는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³⁶⁶⁾ 년간 행사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제32조(구조금 수급권의 보호) 구조금받을 권리는 양도·담보 제공, 압류금지

경찰행정학

제1절 정책결정모델

1)	정책결정자가 고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최선의 대안을 결정
2)	현실적으로 정책결정자는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을 기반으로 시간적·공간적·재정적 측면에서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대안을 결정
3)	정책결정시 정치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약간의 향상을 가져오는 결정
4)	합리모델과 점증모델을 절충한 혼합형. 기본적 결정은 합리모델을 따르고, 기본적 결정에 따른 세부적인 결정은 점증모델을 따른다
5)	정책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뒤죽박죽으로 움직이다가 어떤 계기로 서로 만나게 될 때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
6)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분석과 환류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고 가정하는 모델

제2절 경찰조직관리

1 관료제

(1) 이념형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M.Weber)

- ① 관료제의 직무조직은 ¹⁾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 - 가장 중요한 특징
- ② 관료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²⁾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
- ③ 직무의 수행은 ³⁾ **책임**로 이루어지며 기록은 ⁴⁾ **문서**로 보존
- ④ 직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개인적 감정이나 주관에 의하지 않고 **객관적인** ⁵⁾ **절차**에 의해 임무수행
- ⑤ 관료들의 직무수행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며, 원칙적으로 겸직금지
- ⑥ 모든 직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관료에 의해 이루어지며, 시험과 자격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채용

(2) 관료제의 문제점

6)	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준수 강요 → 관료는 목표 달성 위한 수단의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영합하고 동조하는 경향.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소홀히 되고 수단이 중시되는 목표-수단의 전환 현상이 발생
7)	소속기관이나 부서에만 충성. 다른 조직이나 다른 부서와의 조정이나 협조 곤란
8)	문서주의와 규칙 중시 → 행정목적 아닌 번잡하고 형식적인 서류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형식주의 초래하여 비능률현상 발생
9)	상관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이원화됨에 따라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조직구성원들의 불만 증대
권위주의적 행태 조장	권한과 능력 괴리, 상위직으로 갈수록 모호해지는 업적평가기준, 조직의 공식적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으로 조직구성원들이 불안해하므로 더욱 더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가지게 된다.
변화에 대한 저항	신분유지 위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수화 될 우려
10)	특정분야의 전문성만 갖춘 관료의 편협한 시각으로 조정이나 통합 저해. 조직구성원은 한 가지의 지식 또는 기술에 관하여 훈련받고 기존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지기 때문에 변동된 조건 하에서는 대응곤란
무사안일주의와 상급자의 권위에 의존	상급자 권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소극적인 일처리와 책임회피현상
인격의 상실	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제와 법규우선주의, 그리고 물인격적(impersonal) 역할관계로 인해 조직 구성원의 사회적 욕구충족을 저해하며 그들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고, 대규모 조직에 부속품화되어 인격적 관계 상실
11)	내부인력에 너무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의존하게 되면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의 '무능력의 한계까지 승진'함으로써 결국 조직체는 무능한 사람들로 구성

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12)	의의	권한·책임 정도에 따라 직무를 상·하로 등급화시키고,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 등급간의 명령복종과 지휘·감독체계 확립하는 것	
	장점	① 지휘·감독 통하여 경찰조직 일체감과 통일성 확보 ② 권한과 책임을 계층에 따라 분배하여 의사결정 검토 이루어져 신중한 업무처리	
	단점	① 조직 경직화 초래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도입 어려움 ② 계층 많아지면 오히려 갈등 ↑, 관리비용 ↑, 계층간 갈등 증가 우려 ③ 계층제 원리의 무리한 적용은 의사소통 차단되어 ¹³⁾ 횡적 / 종적 조정 저해	
14)	의의	①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 수를 정하는 원리 ② ¹⁵⁾ 와 깊은 관련성	
	결정 요인	조직의 역사	신설조직보다는 기성조직이 통솔범위가 ¹⁶⁾ 넓다 / 좁다 .
		조직의 규모	조직 규모가 클수록 통솔범위가 ¹⁷⁾ 넓다 / 좁다 . 조직 규모가 작을수록 통솔범위가 ¹⁸⁾ 넓다 / 좁다 .
		공간적 요인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경우 통솔범위가 ¹⁹⁾ 넓다 / 좁다 .
		업무의 성질	업무 종류가 단순할수록 통솔범위가 ²⁰⁾ 넓다 / 좁다 .
21)	① 한 조직원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 받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한다. ② 필요성 : 업무수행의 혼선과 비능률 방지 ③ 수사경찰이 내부관리자와 검사로부터 이중 지시를 받았던 개정 전 형소법체계는 ²²⁾ 에 반하는 문제점 지적 ④ 명령통일 원리 철저히 지키면 오히려 지시·명령자의 사고로 인한 지시와 보고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오히려 혼란 야기 → 이러한 경우 대비하여 대리, 위임 등 필요 ⑤ 계층제에 의해 상위직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하위자에게 분담시킴으로써 통솔범위 한계를 재조정하거나 명령통일 한계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 권한의 위임		
23)	① 다수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 임무 나누어서 분명하게 부과하고 협력하는 것 ② 분업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져서 할거주의가 초래		
24)	① 목표 효율적 달성위하여 조직 각 단위와 구성원 노력과 행동을 질서정연하게 배열하고 통일시키는 작용 ② 필요성 : 구성원의 행동통일 위해 ③ Mooney - 제1의 원리 ④ 갈등조정 ㉠ 세분화된 업무처리가 갈등 원인 → 업무처리과정 통합, 연결장치나 대화채널 확보 필요 ㉡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 가지고 갈등 발생 → 가능하면 예산과 인력 확보하고 업무추진 우선순위를 관리자가 지정 ㉢ 부서간 갈등 일어나고 있을 때는 더 높은 상위목표를 제시, 서로 이해하고 양보 유도 ㉣ 문제해결 곤란 - 관리자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보류 또는 회피하는 방식사용 ⑤ ²⁵⁾ 장기적 / 단기적 대응방안 - 조직구조, 보상체계, 인사 등 제도개선과 조직원 행태를 합리적으로 개선		

3 동기부여이론

(1) 개관

내용이론	의의	인간의 특정욕구가 동기부여를 한다.
	내용	① 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설 ②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 ③ 허즈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요인이론 ④ 맥클랜드(McClelland)의 성취욕구(동기)이론 ⑤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Y이론 ⑥ 아지리스의 성숙 - 미성숙이론 ⑦ E. Schein의 인간관이론 등
과정이론	의의	인간의 특정욕구가 직접적으로 동기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와 별도의 다양한 요인들이 동기부여과정에 작용
	내용	① 포터&롤러(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② 브룸(Vroom)의 기대이론 ③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 ④ 로크의 목표설정이론 등

(2) 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설 - 충족방법

구분	내용	충족방안
생리적 욕구	의·식·주 및 건강에 대한 욕구	26)
안전 욕구	현재 및 장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	27)
사회적 욕구 (애정욕구)	동료, 상사, 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 귀속감 충족	28)
존경 욕구	다른 사람의 인정·존중·신망 받으려는 욕구	29)
자기실현욕구	장래자기발전·자기완성욕구 및 성취감 충족	30)

(3) 앨더퍼의 ERG이론 - 31) 욕구, 32) 욕구, 33) 욕구

(4) 맥클랜드의 성취동기이론 - 34) 욕구, 35) 욕구, 36) 욕구

제3절 인사관리

1 실적주의와 엽관주의

- 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부패방지에 기여 - ¹⁾ 장점
- ② 정당정치의 발전과 책임행정 실현 - 국민 지지에 따라 정부가 구성되므로 정책추진 용이하고, 의회와 행정부의 조정원활 - ²⁾ 장점
- ③ 신분보장으로 인한 행정의 전문성·독자성·계속성 확보 - ³⁾ 장점
- ④ 공무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음 - ⁴⁾ 장점
- ⑤ 공직에의 균등한 기회보장 - 공직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음 - ⁵⁾ 장점
- ⑥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⁶⁾ 장점
- ⑦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높아짐 - ⁷⁾ 장점
- ⑧ 관직의 특권화 배제와 관료제의 침체방지 - ⁸⁾ 장점
- ⑨ 불필요한 관직 증설로 예산낭비와 국민 부담 가중 우려 - ⁹⁾ 단점
- ⑩ 인사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아 인사의 공정성 저해되고 인사부패가 연관되기 쉬움 - ¹⁰⁾ 단점
- ⑪ 인사관리의 경직성 - ¹¹⁾ 단점

2 직업공무원제도

특징	① 젊은 인재를 최하위 직급으로 임용하여 평생동안 근무하게 함 ② 응시자의 학력과 연령을 엄격히 제한 ③ 선발기준은 장기적인 발전가능성 중시 ④ 상위계급은 원칙적으로 승진에 의해 충원되며 외부로부터 유입은 허용하지 않음 ⑤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로 발전되어 가는 기반이 되지만, 실적주의가 바로 직업공무원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장단점	① 공직을 하나의 전문직업분야로 확립에 유리 ¹²⁾ (O / X) ②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독립성, 중립성 확보 ¹³⁾ 용이 / 곤란 ③ 폐쇄적 임용으로 공직분위기 침체시키고 관료주의화 야기 ¹⁴⁾ (O / X) ④ 신분보장으로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 못하고 무사안일주의나 변화에 저항 ¹⁵⁾ (O / X) ⑤ 공직 임용의 기회균등 ¹⁶⁾ (O / X) ⑥ 행정통제 및 행정책임 확보 용이 ¹⁷⁾ (O / X)

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구분	계급제	직위분류제
운용	영국·독일·프랑스·한국·일본 등	1909년 미국 시카고시에서 처음 실시되어 캐나다 등에서 실시
인간·직무	¹⁸⁾ 중심 분류	¹⁹⁾ 중심 분류
인사배치	인사배치 신축성, 융통성 확보 ²⁰⁾ (O / X)	인사배치 신축성, 융통성 확보 ²¹⁾ (O / X)
행정가	²²⁾ 행정가 양성	²³⁾ 행정가 양성
조정·협조	기관간의 횡적협조 ²⁴⁾ 용이 / 곤란	기관간의 횡적협조 ²⁵⁾ 용이 / 곤란
신분보장	강력한 신분보장 -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유리	신분보장 미약
보수	보수의 합리적 기준제시 ²⁶⁾ (O / X)	보수의 합리적 기준제시 ²⁷⁾ (O / X)
권한 및 책임	권한과 책임한계 명확 ²⁸⁾ (O / X)	권한과 책임한계 명확 ²⁹⁾ (O / X)
임용	³⁰⁾ 형 충원방식	³¹⁾ 형 충원방식

* 우리나라 공직의 분류 -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 가미한 혼합형태

4 근무성적 평정

(1)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

근무 성적 평정	① ³²⁾ 이하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 ³³⁾ .
	② 근무성적은 다음 요소에 따라 평정. 다만, ³⁴⁾ 의 근무성적은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
	1. 제1 평정 요소 가.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나. 포상 실적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 요소
	2. 제2 평정 요소 가. 근무실적 나. 직무수행능력 다. 직무수행태도
	③ 제2 평정 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대상자 계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수: 20퍼센트 2. 우: 40퍼센트 3. 양: 30퍼센트 4. 가: 10퍼센트
	④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³⁵⁾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평정할 때에는 ③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경찰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근무 성적 평정 예외	① 휴직·직위해제 등으로 해당 연도 평정기관에서 ³⁶⁾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2개월 이상 파견근무하게 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경력 평정	① 경력 평정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총경 이하 경찰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연수에 대하여 실시하며, 경력 평정 결과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반영한다. ③ 경력 평정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여 실시, 계급별로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경력 가. 총경·경정·경감: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³⁷⁾ 년간 나. 경위·경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³⁸⁾ 년간 다. 경장·순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³⁹⁾ 간

(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근무성적 평정 시기	①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은 연 1회 실시 ②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 경력 평정은 12월 31일 기준. 다만, <u>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 기준</u>
근무성적 평정방법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 만점

제4절 경찰예산관리

1 예산성립 과정을 기준으로 한 예산분류

1)	정부가 국회에 예산제출 후 예산성립(확정) 전에 사유 발생하여 내용 변경하는 예산
2)	국회에서 예산 의결·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부족이나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 가할 필요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
3)	의의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국회통과 못하였을 경우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 지출 용도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및 시설 유지·운영 위한 경비 ② 법률상 지출의무 있는 경비(공무원 보수, 사무처리의 기본경비)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 계속 위한 경비 등

일몰법과 자본예산

일몰법	특정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 지나면 의무적·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법률 — 4) 가 제정
자본 예산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시켜 5) 균형 / 불균형 이루도록 하지만,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수입이 충당케 함으로써 6) 균형 / 불균형 예산 편성하는 제도

2 예산의 과정 : 예산의 편성 → 예산의 심의·의결 → 예산집행 → 예산결산

(1) 예산의 편성

사업계획서의 제출	중앙관서장(경찰청장)은 매년 7) 까지 8) 회계연도부터 9) 회계연도 이상 기간 동안 신규사업 및 10) 이 정한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예산안 편성지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11) 의 심의거처 대통령승인 얻어 다음 연도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12) 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요구서 제출	① 중앙관서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 작성하여 매년 13)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②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가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부안 확정 및 국회제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하여 14) 의 심의 거친 후 대통령 승인얻어야 함 ② 정부는 대통령 승인받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 전까지 국회에 제출

(2) 국회의 심의·의결 - 새로운 회계연도개시 ¹⁶⁾ 전까지

(3) 예산의 집행

예산배정 요구서 제출	중앙관서장은 예산확정 후 예산배정요구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예산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¹⁷⁾ 별 예산배정계획 작성하여 ¹⁸⁾ 의 심의 거친 후 대통령 승인 얻어야 함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배정시 ¹⁹⁾ 에 통지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배정가능
예산집행지침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효율성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목적 외 사용	중앙관서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 사용할 수 ²⁰⁾ 있다 / 없다 .
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장은 예산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²¹⁾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 전용가능 ② 각 중앙관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가능
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결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가능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가능

(4) 예산결산

① 각 중앙관서장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²²⁾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 승인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²³⁾ 까지 감사원에 제출
③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 검사하고 보고서를 다음 연도 ²⁴⁾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
④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²⁵⁾ 까지 국회에 제출

제5절 장비관리

1 무기 및 탄약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1)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
2)	경찰기관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집중무기고로부터 무기·탄약의 일부를 대여 받아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시설
무기·탄약의 회수	경찰기관장은 무기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사람에게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 회수 3) _____ . ① 직무상 비위 등으로 인하여 중징계 의결 요구된 자 ② 사의 표명한 자
	경찰기관장은 무기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사람이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 심의거쳐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4) _____ . ① 직무상 비위 등으로 감찰조사 대상이 되거나 경징계의결 요구 또는 경징계 처분 중인 자 ②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 ③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 ④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 필요한 자 ⑤ 정서적 불안 상태로 무기 소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자 ⑥ 그밖에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 소지 적격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자
무기고 보관	경찰기관장은 무기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술자리 또는 연회 장소에 출입 ② 상사 사무실 출입 ③ 기타 정황 판단하여 필요 인정되는 경우

2 「경찰장비관리규칙」상 차량

- ① 차량은 용도별로 전용·지휘용·업무용·순찰용·특수용 차량으로 구분
- ② 부속기관 및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년도 소속기관 차량정수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매년 5) _____ 까지 다음 년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
- ③ 부속기관 및 시·도경찰청은 소속기관 차량 중 다음 년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6) _____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
- ④ 차량교체위한 불용 대상차량은 부속기관 및 시·도경찰청에 배정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 경과 여부 등 7) _____ 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⑤ 불용처분된 차량은 부속기관 및 시·도경찰청별로 실정에 맞게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매각이 불가능한 때에는 폐차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매각을 할 때에는 경찰표시도색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각 경찰기관의 업무용차량은 운전요원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 ⑦ 차량운행시 책임자는 1차 8) _____ , 2차 9) _____ , 3차 10) _____

제6절 보안관리

1 보안(업무)의 원칙 - ¹⁾

2 비밀의 구분 - ²⁾ 제4조

I 급 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 단절되고 전쟁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 개발 위태롭게 하는 등 우려 있는 비밀
II 급 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³⁾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III 급 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⁴⁾ 가 있는 비밀

3 비밀분류 원칙 - ⁵⁾ 제12조

⁶⁾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⁷⁾ 등급으로 분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⁸⁾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⁹⁾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¹⁰⁾ 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

4 비밀의 보관(「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 보관 금지
- ② I 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 타비밀과 혼합 보관 금지
- ③ II 급 및 III 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 있는 안전용기에 보관, 보관책임자가 II 급비밀 취급 인가 받은 때는 II 급비밀과 III 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 보관 가능
- ④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¹¹⁾ 내에 보관하거나 내용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책 강구
- ⑤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된다.

5 비밀의 관리방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감독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¹²⁾ 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¹³⁾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 가능
- ②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①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경우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 마련
- ③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며,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
- ④ 비밀접수증, 비밀열람기록전, 배부처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활용하고, 비밀 보호기간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¹⁴⁾ 간 보관

6 「보안업무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¹⁵⁾ ” -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I 급, II 급 및 III 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

제3조의3(보안심사위원회) ① 중앙행정기관등에 비밀공개 등 해당 기관의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제5조(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암호자재 제작·공급 및 반납) ① ¹⁶⁾ 은 암호자재 제작하여 필요 기관에 공급. 다만, ¹⁷⁾ 이 필요 인정하는 암호자재의 경우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은 ¹⁸⁾ 이 인가하는 암호체계 범위에서 암호자재 제작가능

- ② 암호자재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를 지체 없이 ¹⁹⁾ 에게 반납

제8조(비밀·암호자재의 취급)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등급을 변경한다.

- ② 비밀취급 인가는 인가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③ 비밀취급 인가받은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제18조(보관) 비밀은 도난·유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장 중의 비밀 보관)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관리기록부)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²⁰⁾ 비밀관리 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는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 사항이 정확히 기록·보존되어야 한다.

제23조(비밀의 복제·복사 제한)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타자·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Ⅰ급 비밀 : ²¹⁾ 를 받은 경우
 2. Ⅱ급 비밀 및 Ⅲ급 비밀 :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
- ②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의 열람)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비밀이 군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열람자의 인적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²²⁾ 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생산한 비밀을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²³⁾ 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²⁴⁾ 과 미리 협의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비밀의 반출)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²⁵⁾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비밀 소유 현황 통보) ① 각급기관의 장은 ²⁶⁾ 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34조(보호지역) ① 각급기관의 장과 관리기관 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자재·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²⁷⁾ , ²⁸⁾ 및 ²⁹⁾ 으로 나눈다.

③ 보호지역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려는 사람은 각급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 등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은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보호지역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7 보호지역의 구분(「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1. ³⁰⁾ : 비밀 또는 국·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경비인력에 의하여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
2. ³¹⁾ :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
3. ³²⁾ :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

보호지역 설정기준 -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60조)

1. 종합조회처리실 - ³³⁾ 제한구역 / 통제구역
2.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정보통신실 - ³⁴⁾ 제한구역 / 통제구역
3. 암호취급소 - ³⁵⁾ 제한구역 / 통제구역
4. 정보보안기록실 - ³⁶⁾ 제한구역 / 통제구역
5. 발간실 - ³⁷⁾ 제한구역 / 통제구역
6. 무기창·무기고 및 탄약고 - ³⁸⁾ 제한구역 / 통제구역
7. 송신 및 중계소, 정보통신관제센터 - ³⁹⁾ 제한구역 / 통제구역
8. 정보상황실 - ⁴⁰⁾ 제한구역 / 통제구역
9. 종합상황실·치안상황실 - ⁴¹⁾ 제한구역 / 통제구역
10.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항공대 - ⁴²⁾ 제한구역 / 통제구역
11. 작전·경호·정보·안보업무 담당부서 전역 - ⁴³⁾ 제한구역 / 통제구역
12. 비밀발간실 - ⁴⁴⁾ 제한구역 / 통제구역
13. 과학수사센터 - ⁴⁵⁾ 제한구역 / 통제구역
14. 무기창·무기고 및 탄약고 - ⁴⁶⁾ 제한구역 / 통제구역
15. 암호장비관리실 - ⁴⁷⁾ 제한구역 / 통제구역

제7절 문서관리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1 공문서의 종류

1)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에 관한 문서
2)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5)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위에 속하지 않는 모든 문서

2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⁷⁾ **함으로써 성립**
-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⁸⁾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됨으로써 효력 발생**
- ③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는 날부터** ⁹⁾ **일 이 경과한 때에 효력 발생**

제8절 경찰홍보

1 경찰홍보의 유형

1)	인쇄매체, 유인물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긍정적인 점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활동
2)	경찰의 활동 중 긍정적인 측면을 지역사회에 폭넓게 알려주는 종합적인 지역사회 홍보체계를 의미
3)	대중매체의 보도를 돕기 위한 것으로 대개 사건·사고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질문에 응답하는 대응적이고 소극적인 홍보활동
4)	단순히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방송 등 각종 대중매체의 제작자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유지하여 대중매체에서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경찰의 긍정적인 측면을 널리 알리는 활동
5)	경찰이 더 이상 독점적 치안기구가 아니라는 인식에 근거 - 경찰도 포돌이·포순이 등 친근한 캐릭터를 이용하여 조직 이미지를 고양 시키는 홍보활동. 즉, 국민의 지지도를 향상시켜 필요한 예산을 획득하고 타 기관과의 협력을 확보하여 경찰목적을 달성하려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홍보활동

2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

6)	“단란하고 행복스럽지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
7)	경찰과 대중매체는 상호 필요성 때문에 공생관계로 발전
8)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얽혀서 범죄와 정의, 사회 질서를 해석·규정하는 역할 수행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언론중재위원회

①	9) 이상 10) 이내 중재위원으로 구성
②	위원장 1명과 11) 명 이내 부위원장 및 12) 명 이내 감사,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
③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 임기는 각각 13) 년으로 하며, 14) 연임가능
④	15) 으로 의결

(2) 정정보도청구권

요건	① 보도 있음 안 날부터 16) 이내, 보도 있음 후 17) 이내 행사 ②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 18) 필요 / 불요
행사	① 정정보도는 언론사 대표자에게 19) 으로 청구 ② 청구받은 언론사 대표자는 20) 이내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발송 ③ 언론사등이 정정보도청구 수용할 때는 지체 없이 피해자와 정정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청구 받은 날부터 21) 내 정정보도문 발송·게재

거부사유	다음은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 거부가능 ①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②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④ 정정보도의 청구가 ²²⁾ 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⑤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²³⁾ 회의와 법원의 ²⁴⁾ 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	--

(3) 반론보도청구권

- ① 보도 있음 안날부터 ²⁵⁾ 이내, 보도 있음 후 ²⁶⁾ 이내 반론보도청구권 행사
- ②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 ²⁷⁾ 필요 / 불요
- ③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가능

(4) 조정

신청	피해자가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 등 청구한 때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불성립된 날부터 ²⁸⁾ 이내 조정신청
조정절차	①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²⁹⁾ 이내에 하여야 함 ② 출석요구받은 신청인이 ³⁰⁾ 에 걸쳐 미출석시 조정신청 취하, 언론사등이 ³¹⁾ 에 걸쳐 미출석시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③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 제시하는 등 합의 권유할 수 ³²⁾ 있다 / 없다 . ④ 조정은 ³³⁾ 공개 / 비공개 원칙
직권조정 결정	① 당사자 사이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재부는 모든 사정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조정결정가능(직권조정결정은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³⁴⁾ 이내에 하여야 함) ②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³⁵⁾ 이내 불복 사유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가능 →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상실
효력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5) 중재

- ① 당사자 양쪽은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 신청가능
- ②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 ③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9절 경찰통제

1 통제의 유형 및 장치

(1)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사전통제	① ¹⁾ <u> </u> 법(의견제출, 청문,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② 국회의 ²⁾ <u> </u> 권·예산 ³⁾ <u> </u> 권 등 ③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후통제	①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행정소송) – 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법원에 의한 경찰의 통제범위 ⁴⁾ 확대 / 축소 ② 국회에 의한 예산 ⁵⁾ <u> </u> 권, 국정감사·조사권 ③ 행정부 내의 행정심판·징계책임 ④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

(2) 내부통제와 외부통제

1) 내부통제

- ① 감사관제(청문감사인권담당관)
- ② 훈령권 및 직무명령권

2) 외부통제

입법통제(국회에 의한 통제)	국회의 입법권, 예산의 심의·의결권, 예산결산권,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국정조사·감사권 등
사법통제(법원에 의한 통제)	법원의 사법심사를 통한 통제(행정소송 등)
행정통제 (행정부에 의한 통제)	① 대통령에 의한 통제 ② 감사원에 의한 통제 – 세입·세출의 결산확인, 직무감찰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에 의한 통제 ④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⑤ 국가인권위원회 – 독립기관이므로 ‘광의의 행정부’에 의한 통제 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⑦ 국가경찰위원회에 의한 통제 ⑧ 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한 통제 ⑨ 국가정보원(정보·보안 업무), 국방부(대간첩작전), 검찰(수사) 등에 의한 통제

2 「경찰 감찰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감찰”이란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⁶⁾ 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기관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을 말한다.

제5조(감찰관의 결격사유) 다음 사람은 감찰관이 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질병 등으로 감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람
4. 기타 감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감찰관 선발) ① 경찰기관장은 감찰관 보직공모에 응모한 지원자 및 3인 이상의 동료로부터 추천 받은 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거쳐 감찰관 선발

제7조(감찰관의 신분보장) ① 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관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⁷⁾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진 등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2. 형사사건에 계류된 경우
3. 질병 등으로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압·권위적인 감찰활동을 반복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② 경찰기관장은 ⁸⁾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제8조(감찰관 적격심사) ① 경찰기관장은 소속 감찰관에 대하여 감찰관 보직 후 ⁹⁾ 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감찰활동의 관할)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¹⁰⁾ 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제13조(¹¹⁾ 감찰) 경찰기관의 장은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¹²⁾ 감찰) 경찰기관의 장은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찰활동의 착수) ①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탄원 등을 포함한다)를 수집·접수한 경우 소속 ¹³⁾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감찰계획의 수립) ① 감찰관은 감찰활동에 착수할 때에는 감찰기간과 대상, 중점감찰사항 등을 포함한 감찰계획을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찰관은 사전에 계획하고 보고한 범위에 한하여 감찰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찰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감찰부서장이 정한다.

④ 감찰관은 계속 감찰활동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감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자료 제출 요구 등) ① 감찰관은 직무상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1. 조사를 위한 출석
2.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
3. 증거품 등 자료 제출
4. 현지조사의 협조

② 소속공무원은 감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감찰활동 결과의 보고 및 처리) ① 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관행, 선행·수범 직원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소속 ¹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출석요구)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¹⁵⁾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28조(조사 참여) 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거나 동석하도록 ¹⁶⁾.

1. 다음 각 목의 사람의 참여

가. 다른 감찰관 나. 변호인

2. 다음 각 목의 사람의 동석

가. 조사대상자의 동료공무원

나. 조사대상자의 직계친족, 배우자, 가족 등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제29조(감찰조사 전 고지)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제31조(조사시 유의사항) ② 감찰관은 조사시 조사대상자의 이익이 되는 주장 및 제출자료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감찰관은 감찰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한 자 또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명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감찰부서장은 성폭력·성희롱 피해 여성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성 경찰공무원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 시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심야조사의 금지) ① 감찰관은 심야 ¹⁷⁾부터 오전 ¹⁸⁾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찰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심야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제35조(민원사건의 처리) ① 감찰관은 소속 공무원 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¹⁹⁾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기관통보사건의 처리) ①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²⁰⁾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찰관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와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²¹⁾.

제40조(감찰관의 징계 등) ②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

3 「경찰청 감사규칙」

제4조(감사의 종류와 주기) ① 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1년에서 3년까지 하되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 실시한다.

제10조(감사결과와 처리기준 등)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²²⁾ 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2. ²³⁾ 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²⁴⁾ 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4. ²⁵⁾ 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²⁶⁾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²⁷⁾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²⁸⁾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8. ²⁹⁾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³⁰⁾ :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한다.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⑥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³¹⁾ .

3. ³²⁾ 이상의 경찰공무원

⑧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³³⁾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³⁴⁾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조사결과에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³⁵⁾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³⁶⁾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신고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³⁷⁾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 이유 들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³⁸⁾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감사청구권) ① ³⁹⁾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분야별 경찰활동

제1절 생활안전경찰

1 지역경찰활동

(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지역 경찰관서	설치	1) _____ 은 경찰서 관할구역 나누어 지역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설치
	하부조직	① 순찰팀의 수는 2) _____ 이 결정 ②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3) _____ 이 결정
	관리팀	문서 접수 및 처리, 시설 및 장비 관리, 예산집행 등 지역경찰관서 행정업무 담당
	순찰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 담당
직무	지역경찰 관서장	① 관내 치안상황 분석 및 대책 수립 ② 지역경찰관서 시설·예산·장비관리 ③ 소속 지역경찰 근무 관련 제반사항 지휘 및 감독 ④ 경찰 중요 시책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
	순찰팀장	① 근무교대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 인수인계 확인 ②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 ③ 관내 중요 사건 발생시 현장 지휘 ④ 지역경찰관서장 부재시 업무 대행 ⑤ 순찰팀원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휘 및 감독	지역경찰관서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다음에 따른다. 1. 4) _____ : 지역경찰관서의 운영에 관하여 총괄 지휘·감독 2. 경찰서 각 과장 등 부서장 : 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지역경찰의 업무에 관하여 경찰서장을 보좌 3. 5) _____ : 지역경찰관서의 시설·장비·예산 및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휘·감독 4. 순찰팀장 : 근무시간 중 소속 지역경찰을 지휘·감독	
치안센터	① 6) _____ 은 지역치안 효율적 수행 위하여 7) _____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가능 ② 치안센터 관할구역의 크기는 설치목적, 배치 인원 및 장비, 교통·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8) _____ 이 정한다. ③ 치안센터는 24시간 상시 운영 원칙, 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여건 및 인원여건을 고려,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가능	

	④ 치안센터의 종류 – 검문소형, 출장소형 ⑤ ⁹⁾ 형 치안센터는 지리적 여건·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직주일체형으로 운영가능 ⑥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는 근무자 부재시 방문 민원 접수·처리 등 보조 역할 수행 ⑦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에도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역경찰관서와 연락체계 유지. 다만, 휴무일은 제외 ⑧ 경찰서장은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서 거주하는 근무자의 배우자에게 조력사례금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기준 및 금액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⑨ 직주일체형 치안센터 근무자 근무기간은 ¹⁰⁾ 이상, 임기 마친 경찰관은 희망부서로 배치하고, 차기 경비부서의 차출순서에서 1회 면제
근무형태 및 시간	① 지역경찰관서장은 일근근무 원칙 ② 관리팀은 일근근무 원칙 ③ 순찰팀장 및 순찰팀원은 상시·교대근무 원칙
근무종류	① 경찰방문 및 방법진단 – ¹¹⁾ 근무 ②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 ¹²⁾ 근무 ③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 ¹³⁾ 근무 ④ 시설·장비 관리 및 예산집행 – ¹⁴⁾ 근무 ⑤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 – ¹⁵⁾ 근무 ⑥ 주민여론 및 범죄정보 수집 – ¹⁶⁾ 근무 ⑦ 시설 및 장비 작동여부 확인 – ¹⁷⁾ 근무 ⑧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 – ¹⁸⁾ 근무 ⑨ 범죄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 – ¹⁹⁾ 근무 ⑩ 문서 접수 및 처리 – ²⁰⁾ 근무 ⑪ 기타 필요한 문서 작성 – ²¹⁾ 근무 ⑫ 범법자의 단속 및 검거 – ²²⁾ 근무 ⑬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 ²³⁾ 근무 ⑭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 ²⁴⁾ 근무 ⑮ 범법자 등을 단속·검거하기 위한 통행인 및 차량, 선박 등에 대한 검문검색 및 후속조치 – ²⁵⁾ 근무 ⑯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등 – ²⁶⁾ 근무 주의 ²⁷⁾ 순찰 및 ²⁸⁾ 순찰근무는 반드시 2명 이상 합동 주의 ²⁹⁾ 근무는 반드시 2명 이상 합동
	대기 근무 ① 대기근무 장소는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 단, 식사시간을 대기근무로 지정한 경우에는 식사 장소를 대기근무 장소로 지정가능 ② 무전기 청취하며 ³⁰⁾ 이내 출동가능 상태 유지
	기타 근무 치안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경찰 관리자가 지정하는 근무로써 위의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의 근무
동원	지역경찰 동원은 근무자 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비번자, 휴무자 순으로 동원가능

정원관리	① 경찰서장은 지역경찰의 정원을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충원 ②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시·도청의 지역경찰 정원 충원 현황을 ³¹⁾ 이상 점검하고 현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지역경찰 정원충원 대책을 수립, 시행
교육	①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역경찰의 올바른 직무수행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간, 방법, 내용 등 지역경찰 교육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문서관리	근무일지는 ³²⁾ 년간 보관

(2)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제6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경찰청장, 시·도청장 및 경찰서장(경찰청장등)은 112신고 신속한 접수·처리 등 업무수행 위하여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112신고의 접수 등)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받으면 경찰사무 구분이나 현장 출동 필요한 지역의 관할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계·위력·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112신고 접수·처리 업무 방해 금지
- 제8조(112신고에 대한 조치)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 접수된 때는 경찰관을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 한 경찰관은 해당 112신고와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처리과정에서 위급한 상황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는 일정한 구역 정하여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경찰관은 출입 등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치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나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9조(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 처리에 있어 다른 기관과 공동대응 또는 협력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 방지, 범죄예방·진압, 구호대상자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관계 기관은 해당 112신고와 관련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112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 ① 국가는 112신고 처리할 때 112신고 한 사람(112신고자)이 범죄(이미 행하여졌거나 진행 중인 범죄와 눈앞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범죄 포함) 피해자, 범죄를 목격한 사람, 그 밖에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자 보호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12신고자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12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2. 112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112신고자 정보를 112신고 접수·처리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112신고자 정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11조(출동 현장의 촬영·관리)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출동 현장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찰차 등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제12조(112신고의 기록·보존 등)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접수·처리 상황을 제13조에 따른 112시스템에 입력·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112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3조(112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경찰청장은 112신고의 접수·처리, 112신고 정보의 공유·이관 및 공동대응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112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112신고자 포상)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경비업법」

종류	33)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 경비 필요 시설 및 장소에서 도난·화재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
	34)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및 화재 등 위험발생 방지
	35)	사람 생명이나 신체(재산 X)에 대한 위해 발생 방지하고 신변보호
	36)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37) 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 방지
	38)	공항(항공기 39))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 방지
집단민원 현장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③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④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⑤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⑥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⑦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허가	① 경비업은 ⁴⁰⁾ 이 아니면 영위 불가 ② 경비업 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⁴¹⁾ 받아야 함.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 ③ 허가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요건 구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⁴²⁾ 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원 ⁴³⁾ 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⁴⁴⁾ 명 이상 나. 시설경비업무 외의 경비업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④ 유효기간 - 허가받은 날부터 ⁴⁵⁾
신고	다음의 경우 ⁴⁶⁾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②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임원 변경한 때 ③ 법인 주사무소나 출장소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④ ⁴⁷⁾ 경비업무 수행 위한 관제시설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⑤ ⁴⁸⁾ 경비업무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경비업자 의무	①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⁴⁹⁾ 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 현장 발생 ⁵⁰⁾ 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격사유	① 경비지도사 및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 - ⁵¹⁾ 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의 ⁵²⁾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 ⁵³⁾ 세 미만이거나 ⁵⁴⁾ 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일반경비원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의 ⁵⁵⁾ 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생활질서업무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① 정의

성매매	⁵⁶⁾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행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⁵⁷⁾ 행위 ㉡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 이용한 ⁵⁸⁾ 행위
성매매 알선 등 행위	㉠ 성매매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 행위 ㉡ 성매매 장소 제공 행위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 알면서 ⁵⁹⁾ , ⁶⁰⁾ 또는 ⁶¹⁾ 제공 행위
성매매 피해자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 한 사람 ㉢ 미성년자, 사물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당한 사람

②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⁶²⁾ .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근거 없음

④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 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⁶³⁾ .
- ㉡ 수사기관은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⁶⁴⁾ .

⑤ 심리의 비공개

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성매매알선 등 행위 한 사람들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⁶⁵⁾

*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⁶⁶⁾

*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지급 ⁶⁷⁾

(2) 「경범죄 처벌법」

특색	① 사정과 형편 해아려서 형을 ⁶⁸⁾ 하거나 또는 구류와 과료 병과가능 ② 죄를 범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③ 미수범 처벌 ⁶⁹⁾ (O / X) ④ ⁷⁰⁾ 일반법 / 특별법 ⑤ 형법의 ⁷¹⁾ 특별법 / 보충법 ⑥ 형사실체법이지만, 절차법적 규정도 존재
범칙행위	제3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 ⁷²⁾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 ⁷³⁾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
범칙자	범칙행위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① 범칙행위를 ⁷⁴⁾ 자 ② ⁷⁵⁾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⁷⁶⁾ 가 있는 행위 한 자 ④ ⁷⁷⁾ 미만인 자
통고처분 X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고처분가능. 다만, 다음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할 수 없다. ① 통고처분서 받기 거부한 사람 ②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③ 그 밖에 통고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납부	① 통고처분서 받은 날로부터 ⁷⁸⁾ 이내 범칙금 납부(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일로 기간 내 납부할 수 없을 때는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⁷⁹⁾ 이내 납부) ② 위의 납부기간 내 납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⁸⁰⁾ 부터 ⁸¹⁾ 이내 ⁸²⁾ 을 더한 금액 납부 ③ 범칙금 납부한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④ 범칙금 미납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 청구 ⁸³⁾ . 다만, 즉결심판 청구 전까지 ⁸⁴⁾ 더한 금액납부하면 즉결심판청구 못함 ⑤ 즉결심판 선고전까지 ⁸⁵⁾ 을 더한 금액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 취소 ⁸⁶⁾ .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의의

총포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 이용하는 것 포함)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도검	칼날 길이가 ⁸⁷⁾ 이상인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화약류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
분사기	사람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전자 충격기	사람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 가하는 전류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석궁	활과 총의 원리 이용하여 화살등 물체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제조업 결격사유

- ① ⁸⁸⁾ 이상 실행 선고받고 집행 끝나거나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⁸⁹⁾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⁹⁰⁾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⁹¹⁾ 지나지 아니한 자
- ③ 20세 미만인 자

3) 소지와 사용

소지 허가	총포	⁹²⁾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 또는 구난구명총	⁹³⁾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⁹⁴⁾
소지 결격 사유	① ⁹⁵⁾ 이상 실행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⁹⁶⁾ 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이 법 위반하여 ⁹⁷⁾ 형을 선고받고 ⁹⁸⁾ 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이 법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 끝난 날부터 ⁹⁹⁾ 이 지나지 아니한 자	
화약류 사용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화약류의 사용장소를</u> 관할하는 ¹⁰⁰⁾ 의 화약류 사용허가	
화약류 운반	발송지 관할하는 ¹⁰¹⁾	
발견 신고	누구든지 유실·매물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¹⁰²⁾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	

(4) 유실물관리 - 「유실물법」

조치	유실물 습득자는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 청구권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포함)에 제출
보관방법	경찰서장은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물건의 보관 중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때 X)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매각가능
보상금	① 물건반환 받는 자는 ¹⁰³⁾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 ¹⁰⁴⁾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 청구불가 ② 보상금은 물건 반환 후 ¹⁰⁵⁾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③ 습득일부터 ¹⁰⁶⁾ 이내에 반환않거나 제출 안하면 보상금 받을 권리 상실 ④ 선박, 차량, 건축물등내에서 타인 물건 습득한 자는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 → 보상금은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¹⁰⁷⁾ 하여야 한다.
준유실물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일정한 가축에는 유실물법 준용. 단,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비용과 보상금을 청구불가
소유권 취득	① 공고 후 ¹⁰⁸⁾ 내 소유자가 권리 주장 아니하면 습득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② 물건 소유권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¹⁰⁹⁾ 이내 물건을 경찰서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유권 상실
유기동물 - ¹¹⁰⁾	적용

3 여성·청소년 보호

(1) 「청소년 보호법」

1) 청소년유해업소(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 기준)

고용 X, 출입 X	① ¹¹¹⁾ 게임제공업, ¹¹²⁾ 게임제공업
	② ¹¹³⁾ 영업
	③ ¹¹⁴⁾ 영업 및 ¹¹⁵⁾ 영업
	④ 비디오물 ¹¹⁶⁾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⑤ ¹¹⁷⁾ 업(다만,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 출입 허용)
	⑥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⑦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 전화방, 화상전화방
	⑧ 성적서비스제공업
	⑨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장외발매소
	⑩ 「경륜·경정법」에 따른 장외매장

고용 X, 출입 O	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숙박업.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 ㉡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③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티켓다방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④ <u>비디오물</u> ¹¹⁸⁾ ⑤ <u>유해화학물질영업</u> ⑥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u>만화대여업</u>
---------------	--

2) 청소년유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 ②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 돋우는接客행위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 ③ 영리나 흥행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 하게 하는 행위
- ④ 영리나 흥행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⑤ 청소년에게 구걸 시키거나 청소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⑥ 청소년 학대하는 행위
- ⑦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 유인하는 행위 하게 하는 행위
- ⑧ 청소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 제공하는 행위
- ⑨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

4) 청소년대상 무효인 채권

청소년유해행위 한 자가 유해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 형식이나 명목 관계없이

¹¹⁹⁾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규제대상

- ①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 - 처벌규정 ¹²⁰⁾ (O / X)
-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 - 처벌규정 ¹²¹⁾ (O / X)
- ③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接客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단속대상 ¹²²⁾ (O / X)
- ④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중한 ¹²³⁾ 으로 처벌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
- 가. ¹²⁴⁾ 행위
 -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¹²⁵⁾ 행위
 -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¹²⁶⁾ 행위
 - 라. ¹²⁷⁾ 행위
- * ¹²⁸⁾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3)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의무가 있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수범 처벌하는 경우

- 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예비·음모도 처벌)
- ② 아동·청소년성착취물 ¹²⁹⁾ , ¹³⁰⁾ , ¹³¹⁾
- ③ 아동·청소년 ¹³²⁾ 행위
- ④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 위계나 선불금, 그 밖의 채무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5)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범한 때에는 「형법」상 심신장애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 감면규정 적용하지 아니 ¹³³⁾ .

6)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¹³⁴⁾ 부터 진행
- ② 디엔에이증거 등 과학적 증거 있는 때는 공소시효가 ¹³⁵⁾ 연장
- ③ ¹³⁶⁾ 미만 사람 및 신체·정신적 장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의 죄는 공소시효 없음
- ④ 강간등 살인은 공소시효 없음
-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은 공소시효 없음

7) 형벌과 수감명령등의 병과

-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한 「소년법」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¹³⁷⁾ .
- ②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 선고하는 경우는 ¹³⁸⁾ 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감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¹³⁹⁾ .

8) 친권상실청구

검사는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 ¹⁴⁰⁾ .

9)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10) 영상물 촬영·보존

-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 ¹⁴¹⁾ .
- ② 영상물 녹화는 ¹⁴²⁾ 또는 ¹⁴³⁾ 이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한 때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¹⁴⁴⁾ .

12)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① 신분비공개수사

- ㉠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진행할 때는 사전에 ¹⁴⁵⁾ 의 승인 필요. 수사기간은 ¹⁴⁶⁾ 초과금지
- ㉡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¹⁴⁷⁾ 에 수사 관련 자료 보고
- ㉢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¹⁴⁸⁾ 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¹⁴⁹⁾ 별로 보고

② 신분위장수사

- ㉠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체포 또는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목적 달성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 ㉡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 하려는 경우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허가청구
- ㉢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¹⁵⁰⁾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
- ㉣ 수사기간 연장 필요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 첨부하여 ¹⁵¹⁾ 의 범위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청구,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¹⁵²⁾ 초과금지

③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법경찰관리는 요건 구비하고, 절차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리는 긴급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¹⁵³⁾ 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 중지

④ 면책

- ㉠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 한 경우 ¹⁵⁴⁾ 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 ㉠에 따른 위법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¹⁵⁵⁾ 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¹⁵⁶⁾ 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용어정의

¹⁵⁷⁾	㉠ ¹⁵⁸⁾ 당시 ¹⁵⁹⁾ 아동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 치매환자
¹⁶⁰⁾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 보호하거나 부양의무있는 사람. 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
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

2) 신고의무

다음 사람은 직무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 알게 되었을 때는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경찰신고 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

- ①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②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③ 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④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⑤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⑥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 업무관계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자 - 신고의무 ¹⁶¹⁾ (O / X)

3) 미신고 보호행위금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장에게 신고 아니하고 보호한 자는 ¹⁶²⁾ 이하 징역 또는 ¹⁶³⁾ 이하 벌금

4)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 ① 경찰관서장은 실종아동 발생신고 접수하면 ¹⁶⁴⁾ 수색 또는 수사 실시 여부 결정
- ② 경찰관서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¹⁶⁵⁾)의 조속한 발견 위하여 실종아동등 위치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가능
- ③ 요청받은 자는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장 요청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 찾기 위한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면 ¹⁶⁶⁾ 이하 징역 또는 ¹⁶⁷⁾ 이하 벌금

(4)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1) 정의

아동등	¹⁶⁸⁾ 당시 ¹⁶⁹⁾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보호실종 아동등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¹⁷⁰⁾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등
장기실종 아동등	보호자로부터 ¹⁷¹⁾ 시간 경과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은 실종아동 등 ¹⁷²⁾
가출인	¹⁷³⁾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¹⁷⁴⁾ 세 이상의 사람
¹⁷⁵⁾	① 실종·가출 전 최종적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 ②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 진술 X,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실종·가출 발생 후 ¹⁷⁶⁾ 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 전 최종 주거지
¹⁷⁷⁾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¹⁷⁸⁾

2) 정보시스템

① 정보시스템운영

- ㉠ ¹⁷⁹⁾ 은 정보시스템으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및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 (인터넷 안전드림) 운영
- ㉡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은 경찰관서 내에서만 사용, 인터넷 안전드림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 분리운영. 다만, 자료전송 등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연계가능
- ㉢ 경찰관서장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업무담당자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제·관리
- ㉣ 인터넷 안전드림은 실종아동등의 신고 또는 예방·홍보 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

②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대상과 제외대상

입력대상	입력제외대상
㉠ 180) ㉡ 181) ㉢ 182)	다음 사람은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 183) ㉡ 184) ㉢ 185) ㉣ 186) ㉣ 그밖에 신고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명백히 입력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람

③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자료의 보존기간(다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즉시삭제)

- ①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 - 수배 해제 후로부터 187) 년간 보관
- ② 발견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및 치매환자 - 수배 해제 후로부터 188) 년간 보관
- ③ 미발견자 - 189) 까지 보관
- ④ 보호시설 무연고자 - 본인 요청 시 즉시 삭제

3)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실종아동등 신고는 관할 관계 없이 실종아동찾기센터, 각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화,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접수, 신고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의 관련 여부 등 확인
신고에 대한 조치	프로파일링시스템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90) 일에 1회, 1개월 경과한 후부터는 191)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 통보

4) 가출인

신고접수	가출인 신고는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하여야 하며, 신고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 관련 여부 확인
신고에 대한 조치	가출인 사건 관할 경찰서장은 가출인 발견 위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92) 1회 보호자에게 귀가 여부 확인

제2절 수사경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벌과 수강명령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 유예하는 경우 1년 동안 보호관찰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 범한 「소년법」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¹⁾ .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²⁾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³⁾ .
고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가능
「형법」상 감경규정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감면)제1항·제2항 및 제11조(청각 및 언어장애인 감경)를 적용하지 ⁴⁾ .
공소시효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는 피해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② DNA 등 과학적인 증거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 ⁵⁾ 연장 ③ ⁶⁾ 미만 및 신체·정신적 장애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 × ④ 강간등 살인은 공소시효 ×
전담조사제	① 경찰청장은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 없으면 ⁷⁾ 를 조사하게 ⁸⁾ . ④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 사법경찰관은 ⁹⁾ 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변호사 선임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¹⁰⁾ 세미만 피해자들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수사절차 배려	①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¹¹⁾ 세미만 피해자들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¹²⁾ 세 미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등을 노력하여야 한다.
영상물 촬영·보존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¹³⁾ 세 미만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 ¹⁴⁾ . ② ¹⁵⁾ 세 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거보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¹⁶⁾ 세 미만 피해자등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	①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지장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2. ¹⁷⁾ 세 미만 피해자등 ② ①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가 의견 조회	① 수사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¹⁸⁾ 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 미약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 ¹⁹⁾ .	
진술조력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²⁰⁾ 세 미만 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증개하거나 보조하게 ²¹⁾ .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의자공개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충분한 증거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오로지 공공 이익 위하여 필요할 때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능.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 정보 제출	①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된 날부터 ²²⁾ 이내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 ②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²³⁾ 이내에 제출
	출입국 신고	① 등록대상자가 ²⁴⁾ 이상 국외 체류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미리 관할 ²⁵⁾ ② 신고한 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는 특별 사정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 신고
	등록	① ²⁶⁾ 은 등록대상자 정보 등록 ②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 선고유예 받은 사람이 선고유예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 면제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는 ²⁷⁾ 이 집행 ② ²⁸⁾ 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²⁹⁾ 에게 송부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의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³⁰⁾ 적, ³¹⁾ 적 또는 ³²⁾ 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구성원	① 배우자(사실혼 ³³⁾)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동거하는 친족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 - 가정구성원 ³⁴⁾ (O / X)
	가정폭력범죄	폭행, 체포·감금, 모욕, 유기(영아유기), 명예훼손, 학대, 아동학사, 공갈, 재물손괴, 주거·신체 수색, 강요, 협박, 상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의 제강간, 유사강간, 특수손괴, 주거침입·퇴거불응,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불안감유발(정보통신망법)
	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범죄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
	피해자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³⁵⁾ 으로 피해 입은 사람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
	다른 법률과 관계	가정폭력범죄는 이 법 우선 적용. 다만,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우선 적용
형벌과 수감명령		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 고지하는 경우에는 ³⁶⁾ 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감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³⁷⁾ .
신고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② 아동, ³⁸⁾ 이상 노인, 그 밖에 정상적 판단 능력 결여된 사람의 치료 담당하는 의료인, 아동,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국제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 등이 직무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소		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 고소가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 범한 경우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가능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가능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³⁹⁾ 이내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 ⁴⁰⁾ .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 신속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②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 제시가능
가정보호 사건 처리		⁴¹⁾ 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능. 이 경우 ⁴²⁾ 는 피해자의 의사 존중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 신고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조치하여야 한다. ①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②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③ <u>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u> - ⁴³⁾ 필요 ④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⑤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⑥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임시조치 청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 퇴거 등 격리, ㉡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임시조치 청구가능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①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 우려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라는 임시조치 청구가능		
긴급임시 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 재발될 우려 있고, 긴급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받을 수 없을 때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신청에 의하여 ㉠ 퇴거 등 격리,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가능 ②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 한 때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 임시조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 한 때부터 ⁴⁴⁾ 시간 이내에 청구 *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가능 <table border="1" data-bbox="353 1003 1298 1340"> <tr> <td data-bbox="353 1003 444 1340">내용</td><td data-bbox="444 1003 1298 1340"> ①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 위탁 ⑤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⑥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①~③ : 2개월(2차례 연장가능), ④~⑥ : 1개월 초과 금지(1차례 연장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①~③의 임시조치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td></tr> </table>	내용	①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 위탁 ⑤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⑥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①~③ : 2개월(2차례 연장가능), ④~⑥ : 1개월 초과 금지(1차례 연장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①~③의 임시조치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내용	①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 위탁 ⑤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⑥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①~③ : 2개월(2차례 연장가능), ④~⑥ : 1개월 초과 금지(1차례 연장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①~③의 임시조치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정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 - ⁴⁵⁾ 미만
아동학대범죄	가. 상해, 폭행 나.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학사 다. 체포, 감금 라. 협박 마. 미성년자 약취, 유인, 인신매매 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사. 명예훼손, 모욕 아. 주거·신체 수색 자. 강요 차. 공갈 카. 재물손괴등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범죄 범한 사람 및 그 공범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⁴⁶⁾ 으로 피해 입은 아동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는 이 법 우선 적용. 다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 ①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②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4) 형별과 수감명령 등의 병과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면서 ⁴⁷⁾ 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감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⁴⁸⁾ .

(5) 친권상실청구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6)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알게 된 경우나 의심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아동복지시설장과 종사자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②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7) 고소에 대한 특례

-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②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⁴⁹⁾ 일 이내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 ⁵⁰⁾ .

(8) 현장출동

- ① 신고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장이나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받은 수사기관장이나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신고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 ①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 장소에서 학대피해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 보호위하여 즉시 응급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②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⁵¹⁾ 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⁵²⁾ 범위에서 그 기간 연장가능
- ④ 검사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
- ⑧ 사법경찰관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10)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⁵³⁾ , ⁵⁴⁾ , ⁵⁵⁾ 를 할 수 있다.

(11)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 하였거나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받은 때에는 ⁵⁶⁾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 → 신청받은 검사는 임시조치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⁵⁷⁾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⁵⁸⁾ 이내에 하여야 한다.

(12)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① 피해아동 및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방지하고 법률적 조력 보장 위하여 변호사 선임가능
- ②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 진술가능.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 진술가능
- ⑥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 없는 경우 피해아동의 권익보호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하여야 한다.**

(13)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검사는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4)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판사 → 아동학대행위자)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가능

(16) 아동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정의

스토킹 행위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피해자	스토킹범죄로 ⁵⁹⁾ 인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자등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2)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신고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조치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3) 긴급응급조치

-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조치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 → 신청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⁶⁰⁾ 이내 판사에게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청구
- ③ 긴급응급조치기간은 ⁶¹⁾ 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잠정조치

-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 위하여 필요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③ 기간
 -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⁶²⁾ 초과금지(피해자보호 위하여 연장 필요성 인정하면 ⁶³⁾ 에 한정하여 각 ⁶⁴⁾ 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1개월 초과금지, 연장 ⁶⁵⁾ 가능 / 불가능
- ④ 2호와 3호의 잠정조치 불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⁶⁶⁾ 를 조사하게 ⁶⁷⁾ .

(6)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7) 벌칙

- ① 스톱킹범죄(반의사불범죄 ⁶⁸⁾ (O/X)) - ⁶⁹⁾ 년 이하 징역 또는 ⁷⁰⁾ 이하 벌금
 ②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스톱킹범죄(반의사불범죄 ⁷¹⁾ (O/X)) - ⁷²⁾ 년 이하 징역 또는 ⁷³⁾ 이하 벌금

(8) 형벌과 수강명령 병과

법원은 스톱킹범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 선고하거나 약식명령고지시 ⁷⁴⁾ 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톱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 ⁷⁵⁾ .

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④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⁷⁶⁾ 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⑦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⁷⁷⁾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상정보를 ⁷⁸⁾ 일간 공개한다.

5 주요 향정신성의약품

79)	① 1914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 ② 기분이 좋아지는 약, 클럽마약, 포옹마약, 도리도리
80)	①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 ②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나 의존성과 독성은 없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 ③ 청소년들이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를 ‘⁸¹⁾’라고도 한다.
82)	①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무취·무미 ② 내성이나 심리적 의존현상은 있지만 금단증상은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부남용자들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환각현상을 경험하는 ‘플래쉬백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83)	① 태국어로 ‘미치게 하는 약’이라는 뜻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어 유흥업소 종사자, 육체노동자, 운전기사 등을 중심으로 확산 ②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20~30% 정도로 낮다.
84)	선인장인 페이요트에서 추출, 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
85)	① 무색·무취로써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물뽕’이라고도 불린다. ② ⁸⁶⁾
87)	① 카리소프로돌 ② 금단증상으로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허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게 된다.
88)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내시경검사 마취 등에 사용,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

제3절 경비경찰

1 경비경찰일반

(1) 경비경찰 조직운영의 원칙

1)	업무 성격상 개인활동이 아닌 부대단위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지휘관이 반드시 필요)
2)	① 긴급성과 신속성 요하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위해 지휘관은 한 사람만 두어야 한다. ② 의사결정과정의 단일 ×, 집행에 있어서의 단일 ○
3)	조직 정점에서 말단에 이르는 계선 통하여 상하 계급간에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어 책임과 임무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체계 통일
4)	업무수행과정에서 국민의 협력 구해야 하고 국민이 스스로 협조 해줄 때 효과적인 업무수행 가능(임의적 협력 ○, 강제적 협력 ×)

(2) 경비경찰의 수단

1) 수단의 종류

5) 실력행사	경고	① 경비부대 전면에 배치 또는 진출시켜 위력 과시하거나 경고하여 범죄실행 의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간접적 실력행사 ② 관계자에게 주의 주고, 어떠한 행위를 촉구하는 사실상 통지행위로 임의처분 → 경찰비례원칙 적용 ③ 6) 에 근거
7) 실력행사	제지	① 경비사태를 예방·진압하기 위한 강제처분으로 세력분산·주동자 및 주모자 격리 등을 실시하는 직접적 실력행사 ② 제지의 성질 - 8) ③ 9) 에 근거
	체포	10) 에 근거

* 실력행사시 반드시 경고 → 제지 → 체포 순으로 해야 한다. 11) (O / X)

2) 경비수단의 원칙

12)	주력부대와 예비부대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효과 올려야 한다.
13)	실력행사시 상대하는 군중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 확보
14)	실력행사시 상대의 기세와 힘이 빠져서 저항력이 허약한 시점 포착하여 실력행사
15)	작전시 변수발생은 사회적 파장 클 수 있으므로 사고 없는 안전한 진압 실시

2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경비업법 시행령	¹⁶⁾ 은 많은 사람 모이는 장소에서 위험발생 방지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필요 인정되는 때는 ¹⁷⁾ 전에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할 수 없는 경우는 행사개최 ¹⁸⁾ 전까지 시·도경찰청장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연법	공연장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하여 매년 관할 ¹⁹⁾ 에게 신고, 이 경우 ²⁰⁾ 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²¹⁾ 에게 통보
공연법 시행령	공연장 외 시설이나 장소에서 ²²⁾ 이상 관람 예상되는 공연하려는 자는 공연 개시 ²³⁾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²⁴⁾ 에게 신고, 신고사항 변경하려는 경우는 공연 ²⁵⁾ 전까지 변경신고

3 선거경비

비상 근무	①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일 전 : 26) 기간 ②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시 : 27) 이 원칙	
선거 기간	① 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 28) 일 ②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장 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 29) 일	
선거 운동 기간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신변 보호	① 대통령 후보자 신변보호기간 – 30) 부터 31) 까지 ② 대통령 후보자 – 32) 호 경호대상, 대통령 당선자 – 33) 호 경호대상	
개표소 경비	제1선 (개표소내부)	① 개표소 내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하에 질서를 유지 ② 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 질서유지 위하여 정복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 관서장에게 원조 요구가능 – 원조요구받은 경찰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원조요구에 의하여 개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 또는 경찰관서장은 선관위위원장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 ④ ③의 경우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 소지금지
	제2선 (울타리내곽)	① 경찰이 선관위와 합동으로 출입자 통제 ② 제2선 출입문은 되도록 정문만 사용
	제3선 (울타리외곽)	경찰이 검문조, 순찰조 운용하여 위해 기도자 접근 차단

4 재난경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정의	① 재난 - ³⁴⁾ 재난, ³⁵⁾ 재난 ② ³⁶⁾ - 재난 ³⁷⁾ . ³⁸⁾ . ³⁹⁾ 및 ⁴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③ ⁴¹⁾ - 재난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안전 확보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④ ⁴²⁾ - 재난발생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 ⑤ ⁴³⁾ -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은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⑥ ⁴⁴⁾ -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 ⑦ ⁴⁵⁾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 ⑧ “재난관리정보” -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 ⑨ “국가핵심기반” -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
총괄·조정	⁴⁶⁾ 은 국가 및 지자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조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 총괄·조정 위하여 ⁴⁷⁾ 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 본부장 - ⁴⁸⁾ . 다만, 해외재난은 ⁴⁹⁾ 장관, 방사능재난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 ③ ②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 수습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 통합 대응 필요 인정하는 경우는 ⁵⁰⁾ 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행사가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둔다. ② 지역대책본부 본부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재난사태	⁵¹⁾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발생하거나 발생우려 있는 경우 긴급 조치 필요 인정하면 중앙위원회 심의 거쳐 재난사태 선포가능
위기경보 발령	재난관리주관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 식별하거나 재난발생 예상되는 경우 위기경보 발령가능 - 위기경보는 ⁵²⁾ . ⁵³⁾ . ⁵⁴⁾ . ⁵⁵⁾ 으로 구분가능
대피명령	⁵⁶⁾ 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방지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주민이나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위험구역 설정	⁵⁷⁾ 과 지역통제단장

강제대피조치	① ⁵⁸⁾ 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 받은 사람 또는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받은 사람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② ⁵⁹⁾ 및 지역통제단장은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가능 →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⁶⁰⁾ 지역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재난 발생하여 특별조치 필요 인정하는 경우는 중앙위원회 심의 거쳐 해당 지역을 ⁶¹⁾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가능 →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⁶²⁾ 지역으로 선포가능

5 중요시설경비 - 「통합방위법」

① 국가중요시설 관리자(소유자 ⁶³⁾)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 수립.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⁶⁴⁾ 또는 ⁶⁵⁾ 에게 협조 요청가능
② ⁶⁶⁾ 또는 ⁶⁷⁾ 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 수립·시행
③ 국가중요시설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⁶⁸⁾ 과 ⁶⁹⁾ 수행
④ 국가중요시설은 ⁷⁰⁾ 이 ⁷¹⁾ 및 ⁷²⁾ 과 협의하여 지정

6 다중범죄진압경비 -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⁷³⁾	특정한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 찾아내어 해소시켜주는 방법
⁷⁴⁾	다중범죄 발생 징후나 이슈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 개최하여 원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⁷⁵⁾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 끌어 이성적으로 생각할 기회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 둔화시켜 흥분 가라앉게 하는 방법
⁷⁶⁾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 되도록 하는 방법

7 대테러경비

(1)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정의	1. “테러취약시설”이란 테러 예방 및 대응 위해 경찰이 관리하는 다음의 시설·건축물 등 중 ⁷⁷⁾ 이 지정하는 것 가. 국가중요시설 나. 다중이용건축물등 다. 공관지역 라. 미군 관련 시설 마.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대테러취약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3. “다중이용건축물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제1호·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다중이용 건축물등	기능·역할의 중요성과 가치 정도에 따라	
	A급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 대테러진압작전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
	B급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일부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
다중이용 건축물등 지도점검	C급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대테러진압작전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경찰서장은 관할 내 있는 다중이용건축물등 전체에 대해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 실시 1. A급 : ⁷⁸⁾ 1회 이상 2. B급, C급 : ⁷⁹⁾ 1회 이상 ②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다중이용건축물등 중 선별하여 ⁸⁰⁾ 1회 이상 지도·점검	
대테러 훈련방법	경찰서장은 테러취약시설 중 선정하여 ⁸¹⁾ 1회 이상 대테러 훈련(FTX)을 실시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1) 정의

테러단체	⁸²⁾ 이 지정한 테러단체
⁸³⁾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는 사람
⁸⁴⁾	테러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
⁸⁵⁾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
⁸⁶⁾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

2)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대테러센터

국가테러대책 위원회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 심의·의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둔다. ② 대책위원회 위원장 - 87)
대테러 센터	① 대테러활동 수행 위하여 88) 소속으로 관계 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 둔다. ③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가능

3) 대테러인권보호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4)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① 89)	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수집 90)
② 91)	은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 92)
③ 93)	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 94)
④ 95)	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96)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①	관계기관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97)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8) 일, 다만, 출국금지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효력정지 및 재발급 제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6)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①	국가는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 위하여 제보하거나 검거활동 한 사람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장은 테러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99)

7) 테러피해의 지원

①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 피해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자체는 ①의 피해입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교부장관의 허가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특별위로금

테러로 인하여 생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세계주의

테러단체 구성죄 등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 적용

8 「통합방위법」

통합방위 사태	갑종사태	일정한 조직체계 갖춘 적의 ¹⁰⁰⁾ 병력 침투, ¹⁰¹⁾ 또는 ¹⁰²⁾ 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 수행
	을종사태	¹⁰³⁾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 치안 회복되기 어려워 ¹⁰⁴⁾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 수행
	병종사태	소규모 적이 침투, ¹⁰⁵⁾ , ¹⁰⁶⁾ 또는 ¹⁰⁷⁾ 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 수행
중앙통합 방위협의회	① ¹⁰⁸⁾ 소속 ② 의장 - ¹⁰⁹⁾	
지역통합 방위협의회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통합방위협의회 두고, 의장은 ¹¹⁰⁾ ② 시장·군수·구청장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 두고, 의장은 ¹¹¹⁾	
통합방위 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통합방위본부를 둔다. ② 통합방위본부장은 ¹¹²⁾ , 부분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	
통합방위 사태 선포	① 통합방위사태 상황 발생하면 다음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 건의하여야 한다. 1. 갑종사태 상황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 상황 발생하였을 때 : ¹¹³⁾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 상황 발생하였을 때 : ¹¹⁴⁾ 또는 ¹¹⁵⁾ ② 대통령은 ①에 따른 건의 받았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③ ¹¹⁶⁾ , ¹¹⁷⁾ 또는 ¹¹⁸⁾ 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 상황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건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③에 따른 건의 받은 때에는 ¹¹⁹⁾ 의 심의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 선포할 수 있다.	

통합방위 작전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즉시 다음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신속하게 수행. 다만, 을중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¹²⁰⁾ 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갑중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¹²¹⁾ 또는 ¹²²⁾ 이 통합방위작전 수행 1. 경찰관할지역 : ¹²³⁾ 2.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 지역군사령관 3.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 함대사령관 4. 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 공군작전사령관
통제구역	¹²⁴⁾ 은 다음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 설정하고, 출입 금지·제한하거나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2. 적의 침투·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 * 통제구역 내의 출입 금지·제한 또는 퇴거명령 위반시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피명령	¹²⁵⁾ 은 통합방위사태 선포된 때는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 명할 수 있다. * 대피명령 위반시 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검문소운용	¹²⁶⁾ , 지방해양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 설치·운용가능

9 「경찰 비상업무 규칙」

(1) 용어정의

비상상황	대간첩·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 발생하거나 발생우려 있는 경우 또는 다수 경력 동원해야 할 치안수요가 발생하여 치안활동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
¹²⁷⁾	비상연락체계 유지하며 유사시 ¹²⁸⁾ 이내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 가능한 장소에 위치
¹²⁹⁾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 위치
¹³⁰⁾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
필수요원	비상소집시 ¹³¹⁾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
일반요원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¹³²⁾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
가용경력	총원에서 병가·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¹³³⁾ 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
작전준비태세	‘경계강화’단계 발령 이전에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 유지하며, 작전상황반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 미리 조치하는 것

(2) 비상근무

대상	비상근무 대상은 ¹³⁴⁾ , ¹³⁵⁾ , ¹³⁶⁾ , ¹³⁷⁾ , ¹³⁸⁾ 또는 ¹³⁹⁾ 업무와 관련한 비상상황에 국한. 다만, 두 종류 이상 비상상황이 동시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 또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상상황의 비상근무로 통합·실시	
종류	① 경비 소관 : 경비, 작전비상 ② 안보 소관 : 안보비상 ③ 수사 소관 : 수사비상 ④ 교통 소관 : 교통비상 ⑤ ¹⁴⁰⁾ 소관 : 재난비상	
발령	전국 또는 2개 이상 시·도청 관할지역	¹⁴¹⁾
	시·도청 또는 2개 이상 경찰서 관할지역	¹⁴²⁾
	단일 경찰서 관할지역	¹⁴³⁾
	비상근무 발령시 정황의 특수성 감안하여 비상근무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¹⁴⁴⁾ 인원, 계급, 부서 동원	
해제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상황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 해제하고, 비상근무해제 시 제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발령권자(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는 ¹⁴⁵⁾ 이내에 바로 위의 상급기관장에게 보고	
근무요령	갑호 비상	① 연가 중지하고 가용경력 ¹⁴⁶⁾ %까지 동원 ② 지휘관과 참모 - ¹⁴⁷⁾ 근무 원칙
	을호 비상	① 연가 중지하고 가용경력 ¹⁴⁸⁾ %까지 동원 ② 지휘관과 참모 - ¹⁴⁹⁾ 근무 원칙
	병호 비상	①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는 연가 억제하고 가용경력 ¹⁵⁰⁾ %까지 동원 ② 지휘관과 참모 - ¹⁵¹⁾ 근무 또는 ¹⁵²⁾ 근무 원칙
	경계 강화	① 별도 경력동원 없이 특정분야 근무 강화 ② 지휘관과 참모 - ¹⁵³⁾ 근무 원칙
	작전준비태세 (작전비상시적용)	별도 경력동원 없이 경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 유지

(3) 지휘본부의 운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은 ¹⁵⁴⁾ 에 설치함이 원칙. 필요한 경우 현장인근에 현장지휘본부 설치가능

10 청원경찰

직무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구역 관할하는 ¹⁵⁵⁾ 감독받아 경비구역만의 경비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¹⁵⁶⁾ 에 따른 경찰관 직무수행 ② 범죄수사는 청원경찰의 임무 ¹⁵⁷⁾ (O / X)	
청원경찰 배치	① 청원경찰 배치받으려는 자는 관할 ¹⁵⁸⁾ 에게 청원경찰 배치 신청 ② ¹⁵⁹⁾ 은 배치신청 받으면 지체 없이 배치여부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③ ¹⁶⁰⁾ 은 배치 필요 인정하는 기관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 배치할 것 요청할 수 있다. ④ 청원주는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¹⁶¹⁾ 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	
청원경찰 임용	① 청원경찰은 ¹⁶²⁾ 가 임용, 임용할 때는 미리 ¹⁶³⁾ 받아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임용자격 : ¹⁶⁴⁾ 의 사람 ④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하였을 때는 임용한 날부터 ¹⁶⁵⁾ 일 이내 관할 경찰서장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	
징계	징계 권자	① ¹⁶⁶⁾ 는 청원경찰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징계절차 거쳐 징계처분을 ¹⁶⁷⁾ . ② 관할 ¹⁶⁸⁾ 은 청원경찰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징계처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징계 사유	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②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 종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 ① 정직은 ¹⁶⁹⁾ 이상 ¹⁷⁰⁾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¹⁷¹⁾ 를 줄인다. ② 감봉은 ¹⁷²⁾ 이상 ¹⁷³⁾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¹⁷⁴⁾ 을 줄인다. ③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복착용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 착용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청원주는 ¹⁷⁵⁾ 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분사기 소지허가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분사기 휴대하여 직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무기휴대	¹⁷⁶⁾ 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¹⁷⁷⁾ 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¹⁷⁸⁾	

감독	① ¹⁷⁹⁾ 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¹⁸⁰⁾ 은 청원경찰의 효율적 운영 위하여 청원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할 수 있다. ③ 관할 경찰서장은 ¹⁸¹⁾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상황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쟁의행위 금지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권남용	①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시 직권남용하여 국민에게 해 끼친 경우 ¹⁸²⁾ 이하 징역이나 금고 ②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배상책임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¹⁸³⁾ 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¹⁸⁴⁾ 의 규정을 따른다.
면직	①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② 청원주가 청원경찰 면직시켰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¹⁸⁵⁾ 하여야 한다.

제4절 교통경찰

1 도로교통법상 용어정리

자동차	철길이나 가설된 선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서 다음의 차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 자동차. 다만, ¹⁾ 는 제외 ㉠ ²⁾ 자동차 ㉡ ³⁾ 자동차 ㉢ ⁴⁾ 자동차 ㉤ ⁵⁾ 자동차 ㉥ ⁶⁾ 자동차 ②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①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⁷⁾ 의 이륜자동차 ② 배기량 ⁸⁾ 의 원동기 단 채전기자전거 및 실외이동로봇은 제외)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⁹⁾ 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¹⁰⁾ 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자동차등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등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자동차 전용도로	¹¹⁾ 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고속도로	¹²⁾ 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¹³⁾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 이용하여 경계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
중앙선	차마의 통행 방향 명확하게 구분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 다만,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
¹⁴⁾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
¹⁵⁾	¹⁶⁾ 와 ¹⁷⁾ 를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¹⁸⁾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서 표시된 도로의 부분
¹⁹⁾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실외이동로봇을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길가장자리 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 ²⁰⁾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확보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²¹⁾	도로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 안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부분
²²⁾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

23)	운전자가 승객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24)	²⁵⁾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운전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 단, ²⁶⁾ 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 포함
27)	처음 운전면허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 받은 날부터 ²⁸⁾ 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 받은 날)부터 ²⁹⁾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0)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31)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32)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모범운전자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 받거나 ³³⁾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 일으킨 전력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2 안전표지

34)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부근에 위험물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5)	도로교통 안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 규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6)	도로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안전 위하여 필요한 지시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37)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8)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주취운전단속

(1) 주취운전의 구성요소(도로교통법 제44조)

주취상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자동차 등	① 원동기장치자전거 - 배기량 무관 ② 모든 건설기계 - 음주단속의 대상 ³⁹⁾ (O / X) ③ 취중 경운기나 트랙터 운전 - 주취운전 ⁴⁰⁾ (O / X)
도로에서 운전	도로에서 운전은 주취운전의 요건 ⁴¹⁾ (O / X)

(2) 처벌

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음주운전(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① 음주운전(측정거부)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내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

- ㉠ 측정거부 - ⁴²⁾ 년 이상 ⁴³⁾ 년 이하 징역이나 ⁴⁴⁾ 만원 이상 ⁴⁵⁾ 만원 이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 ⁴⁶⁾ 년 이상 ⁴⁷⁾ 년 이하 징역이나 ⁴⁸⁾ 만원 이상 ⁴⁹⁾ 만원 이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⁵⁰⁾ 년 이상 ⁵¹⁾ 년 이하 징역이나 ⁵²⁾ 만원 이상 ⁵³⁾ 만원 이하 벌금

② 처음 음주운전(측정거부)

측정불응	⁵⁴⁾ 년 이상 ⁵⁵⁾ 년 이하의 징역이나 ⁵⁶⁾ 만원 이상 ⁵⁷⁾ 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⁵⁸⁾ 년 이상 ⁵⁹⁾ 년 이하의 징역이나 ⁶⁰⁾ 만원 이상 ⁶¹⁾ 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⁶²⁾ 년 이상 ⁶³⁾ 년 이하의 징역이나 ⁶⁴⁾ 만원 이상 ⁶⁵⁾ 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⁶⁶⁾ 년 이하의 징역이나 ⁶⁷⁾ 만원 이하의 벌금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기준의 감경사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⁶⁸⁾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⁶⁹⁾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⁷⁰⁾ 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②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④ 과거 ⁷¹⁾ 년 이내에 ⁷²⁾ 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⑤ 과거 ⁷³⁾ 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4 교차로 통행방법 등

- ①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 - 교차로통행방법위반 ⁷⁴⁾ (O / X)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⁷⁵⁾ 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5 주·정차금지장소

주차 및 정차금지	①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76) 미터 이내인 곳 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77) 미터 이내인 곳 ④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 부터 78) 미터 이내인 곳 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79) 미터 이내인 곳 ⑥ 다음의 곳으로부터 80) 미터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⑦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⑧ 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금지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② 다음의 곳으로부터 81) 미터 이내의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③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6 긴급자동차

(1) 긴급자동차의 특례 - 긴급자동차에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 규정

긴급자동차는 다음 사항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④부터 ⑫까지의 사항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82) ② 앞지르기 83) 및 84) ③ 85) 금지
 ④ 신호위반 ⑤ 보도침범 ⑥ 중앙선 침범 ⑦ 횡단 등의 금지 ⑧ 안전거리 확보 등
 ⑨ 앞지르기 방법 등 ⑩ 정차 및 주차의 금지 ⑪ 주차금지 ⑫ 고장 등의 조치

(2) 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 운전자가 본래의 긴급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86) .

7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1) 운전면허

1) 의의

운전면허권자	87) . 원동기 단 차 중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88) 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 운전하는 경우는 면허불요
효력발생시기	89) 부터 발생

2)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 ① 운전면허증 갱신 - 90) 년(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91) 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92) 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
- ② 정기 적성검사 - 93) 년(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94) 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95) 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① 제1종 운전면허 받은 사람 ② 제2종 운전면허 받은 사람 중 갱신기간에 96) 이상인 사람
-------------	---

3) 면허종류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1종 면허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삭제 ⑤ 건설기계 ㉠ 덤프트럭·아스팔트살포기·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97))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98) 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④ 적재중량 99)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100) 의 지게차에 한한다) ⑥ 101) 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102))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 화물자동차 ② 3륜 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 면허	대형견인차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① 총중량 103) 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면허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¹⁰⁴⁾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¹⁰⁵⁾ 화물자동차 ④ ¹⁰⁶⁾ 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¹⁰⁷⁾)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 면허	제1종 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¹⁰⁸⁾ 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¹⁰⁹⁾ 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¹¹⁰⁾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¹¹¹⁾ 의 화물자동차

4) 운전면허 결격사유

- ① ¹¹²⁾ (원동기장치자전거는 ¹¹³⁾)인 사람
- ② 교통상 위험과 장애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 ④ 양팔 팔꿈치관절 이상 잃은 사람 또는 양팔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이용하여 정상적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
- ⑤ 교통상 위험과 장애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 ⑥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¹¹⁴⁾ 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운전경험 ¹¹⁵⁾ 인 사람
- ⑦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운전면허 발급기간의 제한

- ① 운전면허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 받거나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 교부받은 사실 드러난 때 - 취소된 날부터 ¹¹⁶⁾ 년
- ② 무면허운전으로 사람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 아니한 경우 - 위반한 날부터 ¹¹⁷⁾ 년
- ③ 음주운전·과로등운전(과로·질병·약물)·공동위험행위로 사람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 아니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¹¹⁸⁾ 년
- ④ 음주운전, 측정거부 위반하여 운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한 자 - 취소된 날부터 ¹¹⁹⁾ 년
- ⑤ 무면허운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또는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위반한 날부터 ¹²⁰⁾ 년
- ⑥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결격기간 - 취소된 날부터 ¹²¹⁾ 년
- ⑦ 음주운전·측정거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¹²²⁾ 년
- ⑧ 2회 이상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¹²³⁾ 년

- ⑨ 적성검사 받지 아니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 취소된 사람 - 124)
- ⑩ 다른사람 자동차 등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취소된 날부터 125) 년
- ⑪ 다른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 받도록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126) 년
- ⑫ 무면허운전·음주운전·과로등운전·공동위험행위 이외 사유로 사람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 아니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127) 년
- ⑬ 자동차 이용하여 범죄행위하거나 자동차 강·절도한 자가 무면허운전한 경우 - 위반한 날부터 128) 년
- ⑭ 2~5년의 제한사유 이외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받으려는 경우 - 취소된 날부터 129)
- ⑮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정지기간 중

6) 연습운전면허

연습운전 면허효력	① 면허 받은 날부터 130) 의 효력 ② 연습면허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받은 경우는 131) 이내라도 연습운전면허 효력 상실
준수사항	① 운전면허 받은 날부터 132)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 지도 받아야 한다. - 이에 위반하여 혼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 133) (O / X) ②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표지를 붙여야 한다.
위반시 조치	시·도경찰청장은 연습면허 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 등 명령에 위반한 때는 면허 취소 134) ,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경우로서 다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도로교통공단의 도로주행시험 담당하는 사람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② 135) ③ 136)

주의 연습운전면허는 벌점관리 137) (O / X) , 연습면허정지 138) (O / X)

7) 국제운전면허증

① 국내에서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증(국내발급 → 외국운전)

발급권자	139)
발급대상자	① 국내운전면허 받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을 수 있다. ② 국내운전면허증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 효력도 없어지고, 국내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되면 국제운전면허도 효력정지
발급제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납부하지 않으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가능
유효기간	140) 날부터 1년

②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외국발급 → 국내운전)

유효기간	¹⁴¹⁾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차종 운전가능
면허취소·정지	면허취소·정지사유 → 국제운전면허 취소·정지 ¹⁴²⁾ 가능 / 불가능
운전금지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¹⁴³⁾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동차등 운전금지가능
사업용 자동차 운전금지	사업용 자동차 운전불가.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하여 운전은 가능

주요 국제운전면허증은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한 국가에서 발행한 것은 운전가능

(2) 운전면허 정지처분 개별기준 -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으로 인명피해가 난 경우

사망 1명마다	¹⁴⁴⁾ 사고발생시로부터 ¹⁴⁵⁾ 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¹⁴⁷⁾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¹⁴⁹⁾ 미만 ¹⁵⁰⁾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	¹⁵²⁾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①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는 행정처분 하지 아니함
- ②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¹⁵³⁾ 로 감경
- ③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 경우에는 사고원인 중 ¹⁵⁴⁾ 를 한 운전자만 적용
- ④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 피해는 벌점 산정 하지 아니함

(3) 통고처분

1) 판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 받아 범칙금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 ¹⁵⁵⁾ (O / X)

2) 범칙자 - 범칙행위 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① ¹⁵⁶⁾	
② ¹⁵⁷⁾	

3) 통고처분

경찰서장은 범칙자에 대하여는 이유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은 통고처분할 수 없고 즉결심판 청구 ¹⁵⁸⁾ .

- ① 성명 또는 주소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 ② 달아날 염려 있는 사람
- ③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 거부한 사람

4) 범칙금의 납부

- ① 통고서 받은 사람은 ¹⁵⁹⁾ 이내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등에 범칙금 납부
- 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범칙금 낼수 없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¹⁶⁰⁾ 이내 납부
- ③ 10일 이내 범칙금 내지 아니한 사람은 ¹⁶¹⁾ 부터 ¹⁶²⁾ 일 이내 범칙금액에 ¹⁶³⁾ 을 더한 금액 내야 한다.
- ④ 범칙금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5) 불이행자의 처리

- ① 경찰서장은 통고처분 제외대상자와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 청구 ¹⁶⁴⁾ . 다만, 범칙금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즉결심판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¹⁶⁵⁾ 을 더한 금액 납부하면 즉심청구 못함
- ② 즉결심판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¹⁶⁶⁾ 더한 금액 내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 취소 ¹⁶⁷⁾ .
- ③ 범칙금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8 교통사고

(1) 교통사고 해당 여부

- ① 직접적인 차 운행뿐만 아니라 차의 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 행위 포함 ¹⁶⁸⁾ (O / X)
- ② 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정차 중의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 ¹⁶⁹⁾ (O / X)
- ③ 화물차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 ¹⁷⁰⁾ (O / X)
-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는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정 ¹⁷¹⁾ (O / X)

(2)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 및 신고

- ① 조치의무는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운전자에게도 인정 ¹⁷²⁾ (O / X)
- ② 귀책사유 없는 사고차량 운전자도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음 ¹⁷³⁾ (O / X)
- ③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 물적 피해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 ¹⁷⁴⁾ (O / X)
- ④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3) 특례조항 12개의 예외 사유

- ①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②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¹⁷⁵⁾ 등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③ 제한속도를 시속 ¹⁷⁶⁾ 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④ 앞지르기의 방법 · 금지시기 ·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¹⁷⁷⁾ 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⑦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⑧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⑨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⑩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⑪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⑫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 조치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4)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1) 신호·지시위반사고

- ① 보행자 신호기 신호위반 - 신호위반 ¹⁷⁸⁾ (O / X)
- ② 교차로에서 적색등화가 켜진 상태에서 우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와 교통사고 야기 - 신호위반 ¹⁷⁹⁾ (O / X)
- ③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신호위반'에 해당 ¹⁸⁰⁾ (O / X)

2) 중앙선침범사고

- ①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를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행위 - 중앙선 침범 ¹⁸¹⁾ (O / X)
- ②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후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 특례 12개항에 포함 ¹⁸²⁾ (O / X)

3)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 | | |
|-----|---|
| 보행자 | 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에서 보행자 - 횡단보도보행자등이 녹색등일 때 신호에 따라 건너는 사람 |
| | ② 횡단보도 내에서 택시잡기 위하여 앉아 있는 사람, 횡단보도에서 자고 있는 사람, 횡단보도에서 화물 적재중인 사람, 싸우고 있는 사람 - 보행자 ¹⁸³⁾ (O / X) |
| | ③ 손수레 끌고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 보행자 ¹⁸⁴⁾ (O / X) |

판례	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의 대상 ¹⁸⁵⁾ (O / X) ② 차의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닌 제3자를 다치게 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 ¹⁸⁶⁾ (O / X) ③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 -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¹⁸⁷⁾ (O / X)
----	---

4) 뺑소니사고

1. 교통사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치상 후 도주죄'의 성립인정
2.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 ¹⁸⁸⁾ (O / X)
3.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하고,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며 경찰관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이를 후 지진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¹⁸⁹⁾ (O / X)
4.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 직후 취중상태에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수십 미터까지 혼자 걸어가다 수색자에 의해 현장으로 붙잡혀 온 경우 - 도주 ¹⁹⁰⁾ (O / X)
5.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한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 ¹⁹¹⁾ (O / X)
6.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 - 특가법상 도주 ¹⁹²⁾ (O / X)
7.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필요성 인식하고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 이탈한 경우, 운전자가 사고현장 이탈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신원 알 수 있는 자료제공 - 특가법상 도주 ¹⁹³⁾ (O / X)
8.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 ¹⁹⁴⁾ (O / X)

제5절 정보경찰

1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¹⁾ 한다.

③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²⁾에게 신원조사를 요청 ³⁾한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4.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⁴⁾한다)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7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⁵⁾한다.

②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 ⁶⁾한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 용어의 정의

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
시위	여러 사람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주의 1인 시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시위 ⁷⁾ (O / X)
주최자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시위 여는 ⁸⁾ 이나 ⁹⁾ . 주최자는 ¹⁰⁾ 를 따로 두어 집회·시위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가능. 이 경우 ¹¹⁾ 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TIP 주최자는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 없다. ¹²⁾ (O / X) TIP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격 유무 불문 ¹³⁾ (O / X)
¹⁴⁾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
질서유지선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시위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시(標識)
경찰관서	국가경찰관서

(2)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절차 및 처리기한

1) 신고

- ① 옥외집회·시위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시위 시작하기 ¹⁵⁾ 시간 전부터 ¹⁶⁾ 시간 전에 관할 ¹⁷⁾ 에게 제출. 다만, 두 곳 이상 경찰서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¹⁸⁾ 에게 제출. 두 곳 이상의 시·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¹⁹⁾ 에게 제출
-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 접수하면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²⁰⁾ 내주어야 한다.
- ③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²¹⁾ 전에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
- ④ 철회신고서 받은 관서장은 먼저 신고한 집회·시위 때문에 금지통고한 집회·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통고받은 주최자에게 선 집회·시위가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²²⁾ 알려야 한다.
- ⑤ ④에 따라 통지받은 주최자는 금지통고된 집회·시위를 최초로 신고한 대로 개최가능.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 놓친 경우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시위 시작하기 ²³⁾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 제출하고 집회·시위를 개최가능

주의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통고되고 먼저 신고 접수하여 옥외집회·시위 개최할 수 있는 주최자가 신고한 옥외집회·시위를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²⁴⁾ 부과

2) 보완통고 및 보완

-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 기재사항에 미비점 있을 때는 접수증 교부한 때부터 ²⁵⁾ 이내에 주최자에게 ²⁶⁾ 을 기한으로 보완할 것을 통고 ²⁷⁾ .
- ② 보완통고는 서면으로 ²⁸⁾ 또는 ²⁹⁾ 에게 송달

3) 금지통고

- ① 신고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신고서 접수한 때부터 ³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가능
- ② 집회·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³¹⁾ 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가능
- ③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서면으로 ³²⁾ 또는 ³³⁾ 에게 송달

4) 이의신청과 재결

이의 신청	① 금지통고 받은 주최자는 불복하는 경우 금지통고 받은 때로부터 ³⁴⁾ 이내에 금지통고 한 경찰관서의 ³⁵⁾ 에게 이의신청 가능 ② 이의신청 받은 경찰관서장은 ³⁶⁾ 금지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알리고, 답변서 제출 명함
재결	① 이의신청 받은 관서장은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³⁷⁾ 내주고 이의신청 접수시로부터 ³⁸⁾ 내에 재결. 접수한 때부터 ³⁹⁾ 이내 재결서 발송하지 아니하면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효력상실 ② 이의신청인은 금지통고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시위 개최가능(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음).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 놓친 경우는 일시 새로 정하여 집회·시위 시작하기 ⁴⁰⁾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시위 개최가능

(3)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사유

1)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건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나중에 접수된 옥외집회·시위

-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 ⁴¹⁾ .
- ③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 접수하여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⁴²⁾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할 수 있다.

- ① ⁴³⁾ 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⁴⁴⁾ 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⁴⁵⁾ 주변지역으로서 집회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⁴⁶⁾ 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⁴⁷⁾ 할 수 있다.
- ② 주최자가 질서유지인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⁴⁸⁾ 를 할 수 없다.

(5) 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

- ① ⁴⁹⁾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⁵⁰⁾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 설정할 때에는 ⁵¹⁾ 또는 ⁵²⁾ 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주의 집시법시행령 -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 ③ 신고받은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효용을 해친 경우 - ⁵³⁾

(6)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 ①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팽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주최자가 기준 초과하는 소음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가능
- ③ 기준이하 소음유지 명령위반,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명령위반과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 거부하거나 방해 - ⁵⁴⁾ 이하의 징역 또는 ⁵⁵⁾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소음도 구분		대상 지역	시간대		
			주간 (07 : 00 ~ 해 지기 전)	야간 (해 진 후 ~ 24 : 00)	심야 (00 : 00~07 : 00)
대상 소음도	등가 소음도 (Leq)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⁵⁶⁾ 이하	⁵⁷⁾ 이하	⁵⁸⁾ 이하
		공공도서관	⁵⁹⁾ 이하	⁶⁰⁾ 이하	
		그 밖의 지역	⁶¹⁾ 이하	⁶²⁾ 이하	
	최고 소음도 (Lmax)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⁶³⁾ 이하	⁶⁴⁾ 이하	⁶⁵⁾ 이하
		공공도서관	⁶⁶⁾ 이하	⁶⁷⁾ 이하	
		그 밖의 지역		⁶⁸⁾ 이하	

1.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
 2.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⁶⁹⁾ ~ ⁷⁰⁾ 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 다만, 주된 건물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⁷¹⁾
 3. 제2호의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⁷²⁾ 간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소음도로 한다.
 4.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⁷³⁾ dB 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보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한다.
 5. 등가소음도는 ⁷⁴⁾ 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⁷⁵⁾ 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 측정. 다만,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⁷⁶⁾ 분간 측정
 6. 최고소음도는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에 대해 매 측정 시 발생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며, 동일한 집회·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⁷⁷⁾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⁷⁸⁾ 이상 최고소음도 기준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 위반으로 본다.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사(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만 해당한다)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는 그 행사의 개최시간에 한정하여 위 표의 ⁷⁹⁾의 소음기준을 적용한다.
 - 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의 행사
 - 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각종 기념일 중 주관 부처가 국가보훈부인 기념일의 행사
- 주의 신고대상 아닐지라도 소음제한 규정 적용
- 주의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소음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7) 경찰관의 출입

- ① 경찰관은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시위의 장소에 ⁸⁰⁾ 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서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 ⁸¹⁾ (O/X)

(8) 평화적 집회 및 시위의 보호

-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⁸²⁾ 나 ⁸³⁾ 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보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 ④ 평화적인 집회·시위 방해하면 ⁸⁴⁾ 이하의 징역 또는 ⁸⁵⁾ 이하의 벌금. 다만, ⁸⁶⁾ . ⁸⁷⁾ 또는 ⁸⁸⁾ 이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9) 특정한 참가의 배제

조문	⁸⁹⁾ 및 ⁹⁰⁾ 은 특정한 ⁹¹⁾ 이나 ⁹²⁾ 가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⁹³⁾ 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⁹⁴⁾ 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회견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내용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배제했는데도 참가한 자 - ⁹⁵⁾ 이하 징역 또는 ⁹⁶⁾ 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10) 집회 및 시위관계자의 준수사항

주최자	①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 ⁹⁷⁾ . ② 질서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시위 종결을 선언 ⁹⁸⁾ . ③ 옥내집회 주최자는 확성기설치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 유발하는 행위 금지
질서유지인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 ⁹⁹⁾ .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 주최자와 협의하여 질서유지인 수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 주최자는 질서유지인 수를 조정할 경우 집회·시위 개최하기 전에 조정된 질서유지인 명단을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절 안보경찰

1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의 특성

고의, 과실	과실범 처벌 ¹⁾ (O / X)
예비·음모의 확장	예비·음모 처벌 O ²⁾
	예비·음모 처벌 X 금품수수, 찬양고무, 회합통신, 단순편의제공,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 등의죄
범죄 선전·선동·권유, 편의제공	교사나 방조가 아니라 별도의 정범
자격정지 병과	국가보안법위반범죄에 대하여 ³⁾ 형 선고시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⁴⁾ .
불고지죄 규정	① 반국가단체구성등의 죄, 목적수행, 자진지원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미신고시 처벌 ② 모든 국민에게 범죄에 대한 고지의무 부과 ⁵⁾ (O / X)
형의 감면	죄를 범한 후 자수하거나 다른 국가보안법상 죄 범한 타인 고발하거나 타인이 국가보안법상 죄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⁶⁾ .
참고인 구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참고인으로 소환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⁷⁾ 이상 소환에 불응시 영장 받아 구인 가능 → 참고인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할 때에는 가장 근접한 경찰서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가능
피의자구속기간	① 지방법원판사는 ⁸⁾ 의 죄로서 수사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10일)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가능 - 사법경찰의 피의자 구속기간 최대 ⁹⁾ 일 ② 지방법원판사는 ¹⁰⁾ 의 죄로서 수사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구속기간(10일)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가능 -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 최대 ¹¹⁾ 일 ③ ¹²⁾ 와 ¹³⁾ 는 법조문상으로 연장불가 ④ ¹⁴⁾ 와 ¹⁵⁾ 의 경우는 위헌으로 연장불가
공소보류	① 검사는 본법의 죄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 보류가능 ② 공소보류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¹⁶⁾ 경과한 때에는 소추 불가 ③ 공소보류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 취소가능 ④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할 수 ¹⁷⁾ 있다 / 없다 .
몰수·추징	① 국가보안법의 죄 범하고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 ¹⁸⁾ .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 ¹⁹⁾ . ②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2) 「국가보안법」 각론

반국가단체 구성등	① 반국가단체 - 정부를 ²⁰⁾ 하거나 국가를 ²¹⁾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²²⁾ 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²³⁾ 를 갖춘 단체 ② 형법 제91조(내란죄)의 국헌문란 ²⁴⁾ > / < 국가변란 ③ 행위자의 지위와 관련한 정도에 따라 법정형에 차등이 ²⁵⁾ 있다 / 없다 .
목적수행죄	주체 - ²⁶⁾
자진지원죄	주체 - ²⁷⁾
금품수수죄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았다면, 수수가액이나 가치는 물론 그 목적도 불문 ② 금품수수가 대한민국 해탈 의도가 있어야 한다 ²⁸⁾ (O / X) .
이적단체 구성·가입죄	① 이적단체는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② 행위자의 지위와 역할의 차이에 따른 법정형 구별 ²⁹⁾ (O / X)
회합·통신죄	단순한 신년인사나 안부편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죄를 구성 ³⁰⁾ (O / X)
편의제공죄	① 무기류편의제공 - 예비·음모처벌 ³¹⁾ (O / X) , 본범과 친족관계시 감면규정 ³²⁾ (O / X) ② 기타편의제공 - 예비·음모 처벌 ³³⁾ (O / X) , 본범과 친족관계시 감면규정 ³⁴⁾ (O / X)
불고지죄	반국가단체구성등, 목적수행, 자진지원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³⁵⁾ 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³⁶⁾ .
특수 직무유기죄	주체 - ³⁷⁾
직권남용 무고날조죄	주체 - ³⁸⁾

(3) 보상과 원호

상금	① 이 법의 죄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 ³⁹⁾ . ②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 하는 자에 대하여도 ①과 같다. ③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①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로금	①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 ⁴⁰⁾ . ②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⁴¹⁾ 으로 정한다.
국가보안 유공자 심사위원회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4) 정리

1) 주체제한이 있는 범죄

- ① ⁴²⁾ -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만 주체가 될 수 있음
- ② ⁴³⁾ -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는 주체가 될 수 없음
- ③ 이적단체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유포 - 이적단체의 구성원만 주체가 될 수 있음
- ④ ⁴⁴⁾ -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⑤ ⁴⁵⁾ -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

2) 미수범 처벌하지 않는 범죄 - ⁴⁶⁾

3) 본범과 친족관계시 감면규정

임의적 감면	⁴⁷⁾
필요적 감면	⁴⁸⁾

2 「보안관찰법」

(1) 의의

1) 대상자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⁴⁹⁾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⁵⁰⁾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⁵¹⁾ 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보안관찰 해당범죄

형법	① 내란목적살인죄 ② 외환유치죄 ③ 여적죄 ④ 모병이적죄 ⑤ 시설제공이적죄 ⑥ 시설파괴이적죄 ⑦ 물건제공이적죄 ⑧ 간첩죄 주의 ⁵²⁾ , ⁵³⁾ , ⁵⁴⁾ 는 제외
군형법	① 반란죄 ② 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죄 ③ 반란불보고죄 ④ 군대 및 군용시설제공죄 ⑤ 군용시설등 파괴죄 ⑥ 간첩죄 ⑦ 일반이적죄 주의 ⁵⁵⁾ 는 제외
국가 보안법	① 목적수행죄 ② 자진지원죄, 금품수수죄 ③ 잠입·탈출죄 ④ 총포·탄약·무기 등 편의제공죄 주의 반국가단체 구성·가입·권유(제3조), 찬양·고무죄(제7조), 회합통신죄(제8조), 기타 편의제공죄(제9조 제2항), 불고지죄(제10조), 특수직무유기죄(제11조), 무고날조죄(법 제12조)는 제외

3) 보안관찰처분

보안관찰처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 사항을 주거지 **관할**⁵⁶⁾ **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 받아야 한다.

(2)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청구	① 보안관찰처분의 청구는 57) 가 처분청구서를 58) 에게 제출함 으로서 행한다.	
	② 검사가 처분청구서 제출할 때는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 첨부	
	③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구서 59) 을 피청구자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 준용	
	④ 피청구자는 처분청구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 진술 하고 자료 제출가능	
면제	사유	법무부장관은 대상자 중 다음 요건 갖춘 자에 대하여는 면제결정 을 61) . ① 62) 확립되어 있는 자 ②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는 자 ③ 63) 이 정한 신원보증(2인 이상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이 있는 자
	면제결정	법무부장관은 면제요건 갖춘 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4) 내에 보안관찰처분면제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효과	면제결정 받은 자는 그때부터 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로서의 의무면제
	취소	면제결정 받은 자가 그 면제결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은 면제결정 취소가능
결정	① 보안관찰처분결정은 65) 의 의결을 거쳐 66) 이 행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보다 67)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68)** **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69)** **으로 구성**
- ③ 위원장은 **70)** **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④ 위원은 **71)** **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72)** **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⑥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73)** **으로 의결**

(4) 보안관찰처분기간

기간	① 보안관찰처분기간 - 74) ② 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청구가능 →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사위원회 의결 거쳐 기간 갱신가능 ③ 갱신된 기간 - 75), 갱신횟수는 제한 없음.
기간 계산	① 보안관찰처분 기간은 보안관찰처분결정을 집행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 ② 보안관찰처분 받은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금고·구류·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때,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5) 보안관찰처분 집행

집행실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며, 검사의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집행중지	사유	① 피보안관찰자가 76) 한 경우 ② 피보안관찰자가 77) 이상 소재가 불명한 경우
	절차	① 78) 이 79) 에게 집행중지를 신청 ② 80) 는 사유가 발생하면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③ 81) 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효과	집행중지결정일로부터 집행중지결정 취소될 때까지 보안관찰처분 기간 진행 정지
	취소	검사는 집행중지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82)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신고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대상자신고	① 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 83) 에게 신고 ②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생길 때에는 84) 보안관찰처분심사위원회와 거주예정지 관할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
출소사실 신고	출소 후 85)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86) 에게 출소사실 신고

2) 피보안관찰자의 신고

피보안관찰자 신고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 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87)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주거지 관할하는 지구대·파출소장 거쳐 관할 88) 에게 신고
정기신고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89) 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등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 90) 에게 신고

변동사항신고	① 피보안관찰자는 신고사항에 변동있을 때는 ⁹¹⁾ 이내에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 ⁹²⁾ 에게 신고 ② 피보안관찰자가 신고를 한 후 거소제공을 받거나 거소가 변경된 때에는 제공 또는 변경된 거소로 이전한 후 ⁹³⁾ 이내에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 ⁹⁴⁾ 에게 신고
주거지이전·여행신고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⁹⁵⁾ 이상 주거 이탈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등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 ⁹⁶⁾ 에게 신고

(7) 불복절차

법무부장관의 결정 받은 자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⁹⁷⁾ 이내에 ⁹⁸⁾ 에 소 제기가능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 용어 정의

출입장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남한)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
교역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 이라 한다)의 반출·반입
반출·반입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 ⁹⁹⁾)
협력사업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

(2) 남북한의 교류·협력

1) 남·북한 왕래

남한 주민이 북한 방문하려면 ¹⁰⁰⁾ 의 방문승인 받아야 하며, ¹⁰¹⁾ 이 발급한 증명서 소지하여야 한다(방문 ¹⁰²⁾ 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
* 승인받지 않고 북한방문 - ¹⁰³⁾ 이하의 징역 또는 ¹⁰⁴⁾ 이하의 벌금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¹⁰⁵⁾ 이나 ¹⁰⁶⁾ 에게 ¹⁰⁷⁾ 하여야 한다.

2) 남·북한 주민접촉

원칙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¹⁰⁸⁾ 에게 미리 ¹⁰⁹⁾ (신고 / 승인)
예외	국제행사에 참가한 남한주민이 행사에서 사전승인없이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일단 접촉한 후 ¹¹⁰⁾ 이내에 사후신고

3) 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¹¹¹⁾ 간의 거래가 아닌 ¹¹²⁾ 의 거래

4) 반출·반입

물품등을 반출·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¹¹³⁾ 을 받아야 한다.

5) 협력사업의 승인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요건을 모두 갖추어 ¹¹⁴⁾ 을 받아야 한다.

6) 형의 감경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죄를 범한 자가 자수 - ¹¹⁵⁾ .

4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 정의

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¹¹⁶⁾ 사람
¹¹⁷⁾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¹¹⁸⁾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¹¹⁹⁾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

(2) 기본원칙

-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¹²⁰⁾ 인도주의 / 상호주의 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
-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¹²¹⁾ 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① ¹²²⁾ 은 협의회 심의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¹²³⁾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¹²⁴⁾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4) 보호기준 등

-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은 나이,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¹²⁵⁾ 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¹²⁶⁾ 를 단위로 할 수 있다.
- 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¹²⁷⁾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¹²⁸⁾ 으로 한다.

(5) 보호신청 및 보호결정

1) 보호신청

-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 ¹²⁹⁾)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 다만,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을 거쳐 ¹³⁰⁾ 과 ¹³¹⁾ 에게 통보
- ③ 통보를 받은 ¹³²⁾ 은 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분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¹³³⁾ 에게 통보
- ④ ¹³⁴⁾ 은 ③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보호결정

- ¹³⁵⁾ 은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협의회의 심의 거쳐 보호여부 결정.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¹³⁶⁾ 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¹³⁷⁾ 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

3) 보호결정의 기준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 ¹³⁸⁾ .

- ㉠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 ㉡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 ㉢ 위장탈출혐의자
- ㉣ 국내 입국 후 ¹³⁹⁾ 이 경과하여 보호신청한 자
- ㉤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②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국내입국교섭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7) 무연고청소년 보호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보호대상자로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만 ¹⁴⁰⁾ 이하의 무연고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를 선정할 수 있다.

(8) 학력 및 자격인정

학력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 인정받을 수 있다.
자격인정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9) 특별임용

- ①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 벗어나기 전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가능
-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가능

(10)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신변안전 위하여 ¹⁴¹⁾ 이나 ¹⁴²⁾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¹⁴³⁾ 이나 ¹⁴⁴⁾ 은 이에 협조한다.
- ②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¹⁴⁵⁾ , ¹⁴⁶⁾ 및 ¹⁴⁷⁾ 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신변보호기간은 ¹⁴⁸⁾ 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 보호의 변경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1. ¹⁴⁹⁾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절 **외사경찰**

1 **외국인**

(1) 「국적법」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다음 요건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 취득가능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2) 일반귀화 요건 - ① 의 귀화허가

- ① ②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 있을 것
- ②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③ 대한민국의 「민법」상 ③ 일 것
- ④ 법령을 준수하는 등 ④ 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 것
- ⑤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⑥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⑦ 귀화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해치지 아니한다고 ⑤ 이 인정할 것

3)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의무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국적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날부터 ⑥ 내에 그 외국 국적 포기하여야 한다.

4)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만 ⑦ 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 된 자는 만 ⑧ 가 되기 전까지, 만 ⑨ 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⑩ 내에 하나의 국적 선택하여야 한다.

5)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 ①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
-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 포기
- ③ 중앙행정기관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 제정·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⑪ 하여야 한다.

(2) 외국인 등록의무

등록 대상자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¹²⁾ 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¹³⁾ 이내 외국인등록 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¹⁴⁾ 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체류자격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 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¹⁵⁾ 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 하여야 한다.
등록 제외 대상	① 주한 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포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 가족 ②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③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록증 발급	① 외국인등록 마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외국인이 ¹⁶⁾ 인 때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¹⁷⁾ 가 된 때에는 ¹⁸⁾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 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 부여) ①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 출생한 날부터 ¹⁹⁾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²⁰⁾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²¹⁾ 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내·외국인의 입·출국

1) 여권

발급권자	① ²²⁾ 이 발급 ② ²³⁾ 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유효기간	<table> <tr> <td>일반여권</td><td>²⁴⁾ 년</td></tr> <tr> <td>관용여권</td><td>²⁵⁾ 년</td></tr> <tr> <td>외교관여권</td><td>²⁶⁾ 년</td></tr> </table>	일반여권	²⁴⁾ 년	관용여권	²⁵⁾ 년	외교관여권	²⁶⁾ 년
일반여권	²⁴⁾ 년						
관용여권	²⁵⁾ 년						
외교관여권	²⁶⁾ 년						
발급거부	외교부장관은 다음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 발급·재발급 거부가능 1. 장기 ²⁷⁾ 이상 형에 해당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²⁸⁾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여권의 효력상실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²⁹⁾ 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여권은 효력을 잃는다.
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인은 항상 여권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³⁰⁾ <u>미만은 예외</u> ②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제시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u>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의무 위반</u> - ³¹⁾

2) 입국시 생체정보의 제공

-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 받을 때 생체정보 제공하고 본인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³²⁾ 인 사람은 생체정보제공이 면제

3)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	법무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① 감염병환자·마약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③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④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⑤ 사리분별 능력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 ⑥ <u>강제퇴거명령 받고 출국한 후</u> ³³⁾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주의	① 입국금지자는 즉시퇴거 원칙 ② 입국금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³⁴⁾ 있음 / 없음 ③ 입국금지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비용 - ³⁵⁾ 부담

4) 사증(Visa)

발급권자	³⁶⁾ 이 발급, 그 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위임가능
무사증 입국	① 재입국허가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②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 체결한 국가 국민으로서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③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³⁷⁾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 받는 자 ④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사증의 종류	
외교(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받는 사람과 그 가족
38)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39)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40)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41)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42)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 (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 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4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45)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상륙의 종류

승무원 상륙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⁴⁶⁾ 범위에서 승무원 상륙 허가가능 1.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외국인승무원 2.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으로 옮겨 타려는 외국인 승무원
관광상륙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⁴⁷⁾ 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 허가가능
⁴⁸⁾ 상륙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 포함)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필요 인정되면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⁴⁹⁾ 의 범위에서 ⁵⁰⁾ 상륙 허가가능
⁵¹⁾ 상륙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은 조난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 포함)을 긴급히 구조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에 의하여 ⁵²⁾ 의 범위에서 ⁵³⁾ 상륙허가 가능

난민임시 상륙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 자유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⁵⁴⁾ 의 승인을 받아 ⁵⁵⁾ 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가능. 이 경우 ⁵⁶⁾ 은 ⁵⁷⁾ 과 협의하여야 한다.
------------	--

6) 외국인의 출국정지

⁵⁸⁾ 은 다음 외국인에 대하여 그 출국 정지할 수 있다.

- ① 범죄수사 위하여 출국이 부적당
- ② 형사재판 계속 중
- ③ 징역형 또는 금고형 집행 미종료
-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 벌금 또는 추징금 미납
-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 국세·관세·지방세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
- ⑥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친 사람
- ⑦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 해할 우려가 있어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7)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인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⁵⁹⁾ 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받아야 한다.

8) 외국인의 강제퇴거

강제퇴거 대상	① 유효한 여권 또는 사증 없이 입국한 자 ②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③ 입국금지 해당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④ 입출국심사규정, 선박등의 제공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⑤ 조건부입국허가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⑥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⑦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 위반, 정치활동위반,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자 ⑧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⑨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⑩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⑪ 출국심사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⑫ 외국인 등록의무 위반한 사람 ⑬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규정 위반한 자 ⑭ ⁶⁰⁾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 ⑮ 제76조의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⑯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⑰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위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되지 아니하나, 다음에 해당하면 강제퇴거가능 ㉠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 5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선박 등의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	--

(4) 내국인의 출국금지

1. ⁶¹⁾ 장관은 다음 국민에 대하여는 ⁶²⁾ 이내 기간 정하여 출국금지가능
 - ①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②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 ⑤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친 사람
 - ⑥ ①~⑤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법무부장관은 범죄수사 위하여 출국이 부적당한 사람에 대하여는 ⁶³⁾ 이내 기간 정하여 출국 금지가능.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① 소재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 있어 수사진행 어려운 사람 - ⁶⁴⁾ 이내
 - ②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⁶⁵⁾ 이내
3. 출국금지기간 연장
출국금지 요청한 기관장은 출국금지기간 초과하여 계속 출국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⁶⁶⁾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 연장하여 줄 것 요청
4. 이의신청
 - ① 출국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⁶⁷⁾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가능
 - ②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 받으면 그 날부터 ⁶⁸⁾ 이내에 이의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⁶⁹⁾ 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 연장가능
5. 긴급출국금지
 - ①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사유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 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다.
 - ㉠ 피의자가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 우려가 있는 때
 - ② 요청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 할 때에 출국금지 요청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된다.
 - ③ 수사기관은 긴급출국금지 요청한 때로부터 ⁷⁰⁾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
 - ④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한 때로부터 ⁷¹⁾ 이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출국금지 해제된 경우에 수사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출국금지 요청 금지

2 다문화사회 접근유형

72)	다문화주의 차별 금지하고 사회참여를 위해 기회평등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 인종집단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지만, 시민생활이나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사회의 문화·언어·사회습관에 따를 것을 요구
73)	소수집단 스스로 결정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 주류사회의 문화·언어·규범·가치·생활양식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입장
74)	양자의 절충형.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 평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 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수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수집단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법적 원조를 한다.

3 국제경찰공조

(1) 인터폴

1) 국제수배서

75)	수배자 체포 및 인도
76)	범죄관련인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77)	우범자 정보제공
78)	실종자 소재확인
79)	변사자 신원확인
장물수배서	도난당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나 문화재에 대하여 상품적 가치를 고려하여 발행
80)	범죄수법 정보제공
81)	폭발물, 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

2)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인터폴과의 협력사항

82) 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 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 취할 수 있다.

- ①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교환
- ② 국제범죄의 동일증명 및 전과조회
- ③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확인 및 그 조사

(2) 국제형사사법공조

1) 국제형사사법 공조의 기본원칙

83)	형사사법공조에 있어 외국이 사법공조를 행하여 주는 만큼 자국도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 내에서 당해 외국으로부터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원칙
84)	형사사법공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요청국과 피요청국에서 모두 처벌가능한 범죄이어야 한다는 원칙
85)	요청국이 공조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공조요청한 범죄 이외의 범죄에 관한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증인으로 출석시 피요청국 출발이전 행위로 인한 구금·소추 등 자유의 제한을 받지 않는 원칙

2)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형사사법공조조약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공조조약이 상충되는 경우 ⁸⁶⁾ 이 우선

3)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 ⁸⁷⁾ .

- ①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재산상 손실 ×)
- ② 인종·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공조범죄가 ⁸⁸⁾ 의 법률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 ⑤ 공조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4) 공조의 연기

외국의 공조요청이 대한민국에서 수사진행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조를 ⁸⁹⁾ .

(3) 범죄인 인도

1) 범죄인인도의 원칙

90)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 인도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법 적용
91)	① 인도 요구하는 국가의 형법과 요구받은 국가의 형법상 모두 범죄가 성립되는 사실의 경우에만 범인을 인도 ② ⁹²⁾ 과 ⁹³⁾ 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⁹⁴⁾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 인도가능
자국민 불인도 원칙	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채택 O, 영·미 법계 국가는 채택 X ② 범죄인인도법은 ⁹⁵⁾ 절대적 / 임의적 인도거절사유로 규정
96)	인도된 범죄인은 원칙적으로 인도요청 범죄로만 처벌해야지 다른 항목의 범죄로 처벌할 수 없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
97)	범인인도가 범인을 실제로 처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데 기초가 있으므로 인도가 실제로 유용해야 한다.
98)	너무 경미한 범죄인까지 인도대상으로 삼으면 낭비이기 때문에 일반범죄라도 최소한 중요성은 있어야 한다.
군사범 불인도 원칙	① 탈영, 항명 등의 군사범죄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 ②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에 명문규정 ⁹⁹⁾ (O / X)

2)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거절사유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법 제7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¹⁰⁰⁾ .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 ¹⁰¹⁾ 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적 인도거절사유 (법 제9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¹⁰²⁾ . ① 범죄인이 ¹⁰³⁾ 국민인 경우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③ 범죄인의 ¹⁰⁴⁾ 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④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⑤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범죄인인도의 절차 – 외국의 인도청구가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의 처리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자료를 ¹⁰⁵⁾ 에게 송부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 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인도청구서 등을 받은 때에는 이를 ¹⁰⁶⁾ 검찰청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소속검사로 하여금 ¹⁰⁷⁾ 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령 ② 법무부장관은 인도조약 또는 범죄인인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인도심사청구명령 하지 않고, 그 사실을 ¹⁰⁸⁾ 에게 통지
인도심사청구 – 서울고등검찰청	①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에 인도심사 청구 ②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때에는 구속된 날로부터 ¹⁰⁹⁾ 이내에 인도심사 청구
법원의 인도심사	① 심사기관 – ¹¹⁰⁾ 은 인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인도심사 개시 ② 심사기간 –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중인 때에는 구속된 날로부터 ¹¹¹⁾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

*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¹¹²⁾ 법원과 ¹¹³⁾ 검찰청의 전속관할

부록 경찰학 위원회 총정리

1 국가경찰위원회

설치근거법	1)
설치	2) 부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3) 위원 • 4) 및 5) 인 : 비상임, 6) 명의 위원 : 상임 • 7) 은 정무직 • 위원은 특정 성(性)이 8) 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원 중 9) 은 법관자격 필요 • 위원장 사고시 : 10) → 11) 순으로 대리
운영	• 사무는 12) 에서 수행 • 정기회의 - 13) 위원장이 소집 • 14) 이상 위원, 15) , 16) 이 임시회의의 소집요구가능 →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없으면 회의소집해야 함
의결	재과출과
임명	• 위원 : 17) 의 제청 18) 거쳐 19) 이 임명 • 위원장 : 위원장은 20)
결격사유	다음 사람은 위원될수 없음.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 정당의 당원이나 당적 이탈한 날부터 21)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2)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3) , 24) , 25) 또는 26)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7)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임기	28) , 연임 29) . 보궐위원 임기 - 30)
신분보장	위원은 중대한 신체·정신상 장애로 직무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외하고는 면직 X (면직시 31) 또는 32) 의 의결요구에 의해 국가경찰위원회 의결필요)
심의·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33) 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³⁴⁾ 및 ³⁵⁾ 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재의요구	³⁶⁾ 은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한 날부터 ³⁷⁾ 이내 재의요구서 위원회에 제출 → 요구 받은 날부터 ³⁸⁾ 이내 재의결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 「국가경찰위원회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 거쳐 ³⁹⁾ 이 정한다.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근거법	⁴⁰⁾
소속	⁴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⁴²⁾ 위원 • 위원장과 ⁴³⁾ 의 위원 : 상임, ⁴⁴⁾ 의 위원 : 비상임 • 위원은 특정 성(性)이 ⁴⁵⁾ 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 위원 중 ⁴⁶⁾ 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
운영	• 정기회의 : ⁴⁷⁾ 으로 개최 • 임시회의 : ⁴⁸⁾ 이 필요 인정하는 경우, 위원 ⁴⁹⁾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⁵⁰⁾ 가 필요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 개최가능
의결	⁵¹⁾
임명	• 위원 : 다음 사람을 ⁵²⁾ 가 임명 ①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⁵³⁾ ②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⁵⁴⁾ ③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⁵⁵⁾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⁵⁶⁾ ⑤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⁵⁷⁾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⁵⁸⁾ 가 임명 • 상임위원 : ⁵⁹⁾ 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⁶⁰⁾ 의 제청 → ⁶¹⁾ 가 임명 •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위원장 사고시 : ⁶²⁾ → ⁶³⁾ 순으로 대행 • 그 밖에 위원의 임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⁶⁴⁾ 로 정한다.

자격	-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직에 ⁶⁵⁾ 이상 있었던 사람 - 변호사 자격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⁶⁶⁾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⁶⁷⁾ 또는 ⁶⁸⁾ 분야의 ⁶⁹⁾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⁷⁰⁾ 이상 있었던 사람 -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결격사유	다음 사람은 위원될 수 없음.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 정당 당원이나 당적 이탈한 날부터 ⁷¹⁾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⁷²⁾ 지나지 아니한 사람 ⁷³⁾ , ⁷⁴⁾ , ⁷⁵⁾ 또는 ⁷⁶⁾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⁷⁷⁾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국공립대학 조교수 이상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⁷⁸⁾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결격사유 있는 사람
임기	⁷⁹⁾ , 연임 ⁸⁰⁾ 가능 / 불가능 - 보궐위원 임기 : 전임자 남은 기간. 전임자 남은 임기가 ⁸¹⁾ 미만 경우는 ⁸²⁾ 만 연임가능
신분보장	위원은 중대한 신체·정신상 장애로 직무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외하고는 면직 X
재의요구	-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 요구가능 - 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⁸³⁾ 은 미리 ⁸⁴⁾ 의 의견을 들어 ⁸⁵⁾ 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 요구하게 할 수 있고, ⁸⁶⁾ 은 ⁸⁷⁾ 와 ⁸⁸⁾ 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 요구하게 할 수 있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재의요구 받은 날부터 ⁸⁹⁾ 이내에 회의소집하여 재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⁹⁰⁾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하면 의결사항은 확정

3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법	⁹¹⁾
설치	경찰공무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구성	① 위원장 포함 ⁹²⁾ 의 위원 ② 위원장은 ⁹³⁾ , 위원은 경찰청 소속 ⁹⁴⁾ 이상 중에서 ⁹⁵⁾ 이 임명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 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 경찰공무원이 직무대행

회의	96) 으로 의결
간사	① 인사위원회에 2명 이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심의사항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97) 에게 보고

4 정규임용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98) 의 위원
위원장	위원 중 가장 계급이 높은 공무원
의결	위원회는 99) 으로 의결

5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중앙·보통승진심사위원회 모두 위원장 포함 100) 의 위원
의결	①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는 101) 으로 의결 ② 회의는 102) 로 한다.

6 징계위원회

(1) 징계위원회 관할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	103) 이상에 대한 징계등 의결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104) 에 대한 징계등 의결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① 원칙 : 징계위원회 설치된 기관 소속 105) 경찰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 ② 예외 ㉠ 경찰서, 경찰기동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 : 소속 106) 이하의 경찰공무원 ㉡ 의무경찰대 등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 경찰을 장으로 하는 경찰 기관: 소속 107) 이하 경찰공무원

(2) 설치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¹⁰⁸⁾ 에 둔다.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¹⁰⁹⁾ 의 경찰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둔다.

(3) 구성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¹¹⁰⁾ 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4)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공무원 위원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¹¹¹⁾ 이상 소속 경찰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경찰기관장이 임명
민간위원	①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은 (3)에 규정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성별 고려해서다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 이 경우 특정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중앙징계위원회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¹¹²⁾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 담당 ¹¹³⁾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¹¹⁴⁾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 있는 사람 2. 보통징계위원회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¹¹⁵⁾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 담당 ¹¹⁶⁾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¹¹⁷⁾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 경과한 사람]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 있는 사람 ② 민간위원 임기는 ¹¹⁸⁾ , 한차례만 연임가능

(5) 절차

- 징계위원회가 대상자 출석요구할 때는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¹¹⁹⁾ 전까지 그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대상자가 출석통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가능. 다만, 대상자 소재가 불분명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¹²⁰⁾ 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나 그 밖의 정상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 ¹²¹⁾ .
-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¹²²⁾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의결요구자의 승인을 얻어 ¹²³⁾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6) 회의

-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¹²⁴⁾ 명 이상 ¹²⁵⁾ 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 고려하여 구성. 민간위원 수는 위원장 포함 위원 수의 ¹²⁶⁾ 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위원장은 표결권이 ¹²⁷⁾ .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 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 된 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
- 징계위원회 의결은 위원장 포함한 위원 ¹²⁸⁾ 으로 의결
-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7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설치	① 경찰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위하여 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둔다. ②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심사거친 재심청구와 ¹²⁹⁾ 이상 경찰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¹³⁰⁾ 명 이상 ¹³¹⁾ 명 이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 ¹³²⁾ 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회의	①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¹³³⁾ 명 이상 ¹³⁴⁾ 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회의 : ①에 따른 위원 ¹³⁵⁾ 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
결정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 접수한 때에는 ¹³⁶⁾ 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 부득이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 의결로 ¹³⁷⁾ 일 연장가능

8 인사혁신처에 두는 소청심사위원회

설치근거법	¹³⁸⁾
설치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 둔다.
구성	① 위원장 1명 포함 ¹³⁹⁾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¹⁴⁰⁾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② ¹⁴¹⁾ 은 정무직
임명절차	위원장과 위원은 ¹⁴²⁾ 의 제청으로 ¹⁴³⁾ 거쳐 ¹⁴⁴⁾ 이 임명
자격	위원(위원장 포함)은 다음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① ¹⁴⁵⁾ , ¹⁴⁶⁾ 또는 ¹⁴⁷⁾ 의 직에 ¹⁴⁸⁾ 이상 근무한 자 ② 대학에서 ¹⁴⁹⁾ , ¹⁵⁰⁾ 또는 ¹⁵¹⁾ 을 담당한 ¹⁵²⁾ 이상 직에 ¹⁵³⁾ 이상 근무한 자 ③ ¹⁵⁴⁾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¹⁵⁵⁾ 이상 근무한 자 *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상임위원 ¹⁵⁶⁾ 비상임위원 ¹⁵⁷⁾
임기 등	① 상임위원 임기 - ¹⁵⁸⁾ , ¹⁵⁹⁾ 연임가능 ② 상임위원은 겸직 ¹⁶⁰⁾ ③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분보장	위원은 ¹⁶¹⁾ 이상 형벌 또는 장기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 할 수 없게 된 때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함

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①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¹⁶²⁾ 경찰청 / 시·도경찰청 / 경찰서 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① 위원장 1명 포함 ¹⁶³⁾ 의 위원으로 구성 ② 위원은 소속 경찰과 다음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 이 경우 위원의 ¹⁶⁴⁾ 이상은 경찰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¹⁶⁵⁾ 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법학 또는 행정학 가르치는 ¹⁶⁶⁾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¹⁶⁷⁾
위원장	위원장은 ¹⁶⁸⁾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는 때는 ¹⁶⁹⁾ 이 직무대행
회의	¹⁷⁰⁾ 으로 의결
보고	보상금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¹⁷¹⁾ 에 심사자료와 결과보고

10 보상금심사위원회

설치	¹⁷²⁾ ¹⁷³⁾ 및 ¹⁷⁴⁾ 은 보상금 지급심사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¹⁷⁵⁾ .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¹⁷⁶⁾ 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	위원은 ¹⁷⁷⁾ 중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
위원장	경찰청에 두는 보상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¹⁷⁸⁾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¹⁷⁹⁾ 이 임명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¹⁸⁰⁾ 으로 의결

11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¹⁸¹⁾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 둔다.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¹⁸²⁾ 의 위원으로 구성 ② 위원장 포함한 ¹⁸³⁾ 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
임기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¹⁸⁴⁾ , 연임 ¹⁸⁵⁾

12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구성	①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② 심의회 위원장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¹⁸⁶⁾ 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13 언론중재위원회

구성	① ¹⁸⁷⁾ 이상 ¹⁸⁸⁾ 이내 중재위원으로 구성, 중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② 위원장 1명과 ¹⁸⁹⁾ 명 이내 부위원장 및 ¹⁹⁰⁾ 명 이내 감사,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
임기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 임기는 각각 ¹⁹¹⁾ 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가능
회의	회의는 ¹⁹²⁾ 으로 의결

14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설치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높여 인권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¹⁹³⁾ 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¹⁹⁴⁾ . 특정 성별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¹⁹⁵⁾ 초과금지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¹⁹⁶⁾ .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 •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담당관 • 위촉위원 자격(각호마다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¹⁹⁷⁾ 년 이상 경력 있는 사람 ② 학교에서 교원 또는 교직원으로 ¹⁹⁸⁾ 년 이상 근무 경력 있는 사람 ③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 분야에 ¹⁹⁹⁾ 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거나 그러한 단체로부터 인권위원으로 위촉되기에 적합하다고 추천 받은 사람 ④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 목소리 반영할 수 있는 사람
결격 사유	•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²⁰⁰⁾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²⁰¹⁾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기	• 위원장과 위촉 위원 임기: 위촉된 날로부터 ²⁰²⁾ 년, 위원장은 연임 ²⁰³⁾ 가능 / 불가 . 위촉위원은 ²⁰⁴⁾ 만 연임가능 • 위촉 위원에 결원 생긴 경우 새로 위촉가능,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²⁰⁵⁾ 부터 기산
회의	• 정기회의 – 경찰청 : ²⁰⁶⁾ 회, 시·도경찰청 : ²⁰⁷⁾ 회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²⁰⁸⁾ 또는 재적위원 ²⁰⁹⁾ 이상이 소집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 의결 – ²¹⁰⁾